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국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전공

오 누리

2016년 8월



중국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민 기

오 누 리

이 논문을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오누리의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印

위 원_____印

위 원_____印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6년 8월



**A Study on the Measures for Improving Direct
Investment From Chinese firms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h, Nu Ri

(Supervised by professor Min, K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2016.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Aug. 2016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제 2절 연구 범위와 방법	3
II.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5
제 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및 현황	5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5
2. 해외 직접투자 현황	6
제 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11
1. 시장규모와 경제발전수준	11
2. 노동비용	11
3. 교육수준 및 기술발전수준	12
4. 인프라	12
5. 정부정책	13
제 3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13
1. 독점적 우위이론	14
2. 과점적 경쟁이론	15
3. 제품수명주기이론	16
4. 행동과학적 접근 이론- 기업행태이론	17
5. 내부화이론	18
6. 거래비용 이론	18
7. Dunning의 절충이론	19
제 4절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 및 효과	22
1.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	22
2.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	26
제 5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선행연구	29

Ⅲ. 제주도의 중국기업 직접투자의 현황 및 개선방안	34
제 1절 중국 해외직접투자	34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동기 및 현황	34
2. 중국의 對한국 해외투자 현황	46
제 2절 제주도의 중국기업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52
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정책	52
2. 제주도의 중국기업 직접투자 현황 및 문제점	90
3. 제주도의 중국기업 램정 사례 및 심층 면담	101
4. 제주도의 중국기업 직접투자의 개선방안	118
 Ⅳ. 결론	 133
 <참고문헌>	 137
중문초록	143

표 목 차

<표 2-1> 주요국별 동향	7
<표 2-2> 지역별 동향	7
<표 2-3> 업종별 동향	8
<표 2-4> 투자목적별 동향	9
<표 2-5> 기업규모별 동향	9
<표 2-6> 형태별 동향	10
<표 2-7> 절충이론의 우위요소	20
<표 2-8> 외국인직접투자동기	31
<표 2-9> FDI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	32
<표 3-1>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과정	37
<표 3-2> 중국의 비금융분야 해외투자 기업 투자액 및 비중(2013)	38
<표 3-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액(2012)	39
<표 3-4> 중국의 국가별 대외직접투자액(2012)	41
<표 3-5> 중국 정부의 기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	43
<표 3-6> 중국의 해외투자 촉진정책	44
<표 3-7> 투자목적별 중국의 해외투자 주요 사례	45
<표 3-8>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액(1989~2013)	47
<표 3-9> 중국의 對한국 산업별 투자액 추이(2000~2013)	49
<표 3-10> 중국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시 주의사항	51
<표 3-11>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유형 및 근거	53
<표 3-12>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	57
<표 3-13> 자유무역지역의 근거 및 혜택	59
<표 3-14>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61
<표 3-15>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62
<표 3-16>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현황	64
<표 3-17> 기타 법령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현황	65

<표 3-18> 업종별 투자기간과 규모에 따른 분류	66
<표 3-19>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68
<표 3-20>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규모별 투자업종	69
<표 3-2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종별 지정기준	70
<표 3-22>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72
<표 3-23>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지원	73
<표 3-24> 외국인투자지역의 재정지원	73
<표 3-25>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의 연혁	75
<표 3-26>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78
<표 3-27>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 대상 업종	79
<표 3-28>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인센티브	81
<표 3-29> 유사제도 간 감면요건 비교	84
<표 3-30> 유사제도 간 세제혜택 비교	85
<표 3-31> 투자지원 세제에 관한 내용	86
<표 3-32>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88
<표 3-33> 투자진흥지구 제도 연도별 변천 및 지정 현황	95
<표 3-34> 제주투자진흥지구 산업구조(2014년 5월말)	96
<표 3-35> 제주지역 내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그린필드형 사업)	97
<표 3-36>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 사업 현황(그린필드형 사업)	98
<표 3-37> 중국 투자기업 업종별 현황	99
<표 3-38> 제주지역 내 중국의 토지점유율(2015년 10월 말 기준)	100
<표 3-39> 제주지역 건설업, 전력 가스 증기업 산출액 규모 변화	101
<표 3-40> 제주지역 건설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17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4
<그림 3-1> 중국의 해외투자액 추이(2002~2013)	35
<그림 3-2>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54
<그림 3-3> 연도별 FDI 신고액	89
<그림 3-4> 중국기업의 제주 직접투자 선택 과정	90
<그림 3-5> 연도별 입도 중국인 수와 입도 중국인 비율	91
<그림 3-6> 크루즈 관광객 수 및 기항 횟수	92
<그림 3-7> 2015년 4/4분기 중국인의 해외여행 국가 10대 목적지	92
<그림 3-8> 랴오닝성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장소 순위	93
<그림 3-9> 랴오닝성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지 선택 조건	93
<그림 3-10> 제주투자진흥지구 산업구조	96
<그림 3-11> 입도 중국인 수 대비 화교기업 누적투자금액	99
<그림 3-12>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115

【국문요약】

중국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 유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을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동기와 효과를 분석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창출과 지식 이전 등 현지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1998년 IMF 이후, 해외투자에 개방적인 정책을 전개하였고, 이와 함께 對한국 외국인 직접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해외투자 현황과 중국의 對 한국 투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전 세계 경제가 경기침체와 장기 불황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도 중국은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전 세계 해외투자 2위의 투자국이 되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후 자원개발, 기술습득, 브랜드 강화, 사업 다각화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對韓투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국의 총 해외투자 대비 對韓투자 비중은 크지 않다. 게다가,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는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투자 유치의 성과 및 사후 관리 체제의 미비, 주민의 반감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DI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사후관리 체제의 강화, 신성장 동력사업에의 FDI 유치, 투자 인센티브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주민, 중국 기업 3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개선하여, 중국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를 밑거름으로 도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I. 서론

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글로벌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국가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기업의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해 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급속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 중에서도 현지국의 자본과 기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가의 경제위기 상황을 타결하기 위하여 해외자본의 유치는 국가 및 지역발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는 작게는 지역경제와 산업 전반의 발전에서 크게는 중앙정부 수준까지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도기술산업 및 녹색산업이라고 불리는 신 성장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한 해에 전 세계 약 100여개 국가가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수정하였다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그만큼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¹⁾

우리나라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 지역주민들까지도 외국인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국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옴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며,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안정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 2009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외국의 경우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직접투자를 주요한 지역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도 투자 규모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4년 이후 1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기업 수도 1만 개를 넘어 국내 총생산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수적으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간 크게 증가하였고 그 역할 면에서도 우리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다. 최근 들어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답보 국면인 반면 투자횟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 유입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외국인투자에 불리한 경영 및 생활환경이 투자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고 양적 성과에 집착할 뿐 체계적인 전략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한 시점부터 중국 자본의 유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대규모 관광위락시설 등의 투자와 함께 주로 임대업과 토지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부동산투자가 중심이며, 이 때문에 제주도 땅이 중국인들에게 잠식된다는 도민들의 정서적 반감과 함께 대규모 관광위락시설의 개발에 따른 지하수오염 및 꽃자왈 파괴 등 환경훼손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 결정요인을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외국인직접투자 형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유치 정책 방안을 모색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제 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3저의 이른바 뉴노멀²⁾ 시대가 도래했다. 뉴노멀 시대로 들어서면서 외국의 해외투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현지국(Host Country)에 양질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복지에 기여하는 전략적인 투자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장의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 및 현황을 기존의 문헌 및 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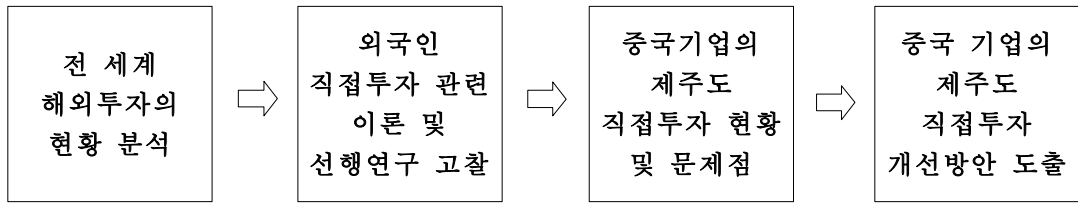
연구방법으로는 사례연구와 자료분석 및 외국인투자기업 담당자와의 면담을 활용하였다. 기존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문헌과 해외투자 통계자료를 토대로 이론을 고찰하였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 정책제도 및 법안, 학술지·학위논문, 관련 인터넷 사이트 자료, 신문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해외투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헌에서 관련 이론을 고찰한 후,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해외투자현황을 살펴 본 후, 他지역과는 다른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념과 일반 연구 및 사례,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를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해외투자 제도와 제주도의 중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 요약하고, 본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흐름을 도식화 하면 <그림 1-1>과 같다.

2)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자주 등장하는 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새롭게 형성된 경제 질서로 통용되는데, 일반적으로 2007~2008년 진행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등장한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의미한다. 「New Normal(business)」, 『Wikipedia』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Ⅱ. 외국인 직접투자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 1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및 현황

1.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란 외국소재 생산시설이나 판매기관 등에 대해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신규로 회사를 설립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것³⁾이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시켜 해외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 활동의 한 형태라고 한다.

외국인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와 외국인간접투자(FII: Foreign Indirect Investment, FPI: Foreign Portfolio Investment)로 구분된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경영 통제를 목적으로 국내의 실물자산 소유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득하여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투자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외국인간접투자는 경영지배나 통제목적 없이 단순한 배당수익이나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채권 투자 등의 소위 포트폴리오 투자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의 4)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로서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주식투자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채권투자 등의 외국인간접투자와는 달리 외국인이 내국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기업경영에 참여하여 장기적인 영업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이다.

IMF의 정의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밖에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관여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하여 행하는 투자이며, 투자가의 목적은 기업경영에의 유효한 발

3) 경제학대사전, 2005

언권을 확보 하는 데에 있다.”고 보고 있으며, Edward M. Graham과 Paul R. Krugman도 외국인 직접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와 구별되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실질적으로 소유 기업을 지배하느냐 여부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Machael Melvin도 포트폴리오 투자는 위험(risk)과 수익(return)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는 자유 시장 전제(free market conditions)의 불확실성, 시장을 확대하여 기업규모를 최대화하려는 시도, 우수한 경영기법이나 지식의 획득 등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분류는 투자자의 동기 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결국 직접 투자를 간접투자(포트폴리오 투자)와 구별 짓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계속적으로 관여할 권리를 획득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유효한 발언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경영참가 혹은 지배를 목적으로 하느냐 않느냐”이다. 이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의 정의를 주관적 관점이 아니고 실제 얼마만큼의 외국인이 지분을 소유하느냐는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필요하게 된다. IMF·UNCTAD 등 국제기구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는 대체로 한 명의 외국인투자자가 1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외국인 직접투자자로 인정되고 있다.

외국인 직·간접투자 중에서 국내 경제 입장에서 안정성이 높은 것은 직접투자이다. 간접투자의 경우는 자금을 손쉽게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직접투자는 대부분 장기투자 형식이다. 또한, 국내에 크게 고용효과와 경제 안정효과를 주기 때문에 피투자국 입장에서는 직접투자가 훨씬 유리하다. 이 때문에 세계 여러나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해외직접투자 현황

2015년 한 해 해외직접투자는 신고금액 기준 402.3억 달러로 전년 동기(350.0억 달러) 대비 15.0%증가하였고,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271.8억 달러로 전년(270.0억 달러)대비 0.7% 증가하였다. 해외직접투자는 2011년 457.4억 달러 이후, 2012년 396.5억 달러, 2013년 356.4억 달러, 2014년 350.0억 달러로 2011년 이후 2014년까지 주춤했던 투자가 2015년 402.3억 달러로 회복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04.2억 달러로 전체 해외투자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전년 대비 14.4% 증가한 43억 달러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베트남 28.8억 달러, EU 23.6억 달러, 호주 6.6억 달러가 있고 있다.

<표 2-1> 주요국별 동향

< 단위 : 억 달러, % >

구분	'11	'12	'13	'14	'15	증감률 (전년대비)
세계	457.4	396.5	356.4	350.0	402.3	15.0
미국	165.8	69.2	58.6	92.2	104.2	13.0
중국	48.0	66.5	47.0	37.5	43.0	14.4
호주	41.4	44.1	17.2	8.4	6.6	△21.7
베트남	15.1	9.4	14.6	21.0	28.8	36.5
EU	38.0	53.0	51.6	45.0	23.6	△47.6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지역별로는 <표 2-2>에서 보는 것처럼, 아시아가 전체투자의 41.3%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가 27.5%, 중남미가 16.2%이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등 중화권국가가 2014년 투자금액 109.8억 달러로 4, 5, 6위 투자 대상국가에서 2015년 51% 증가한 166.2억 달러로 1, 2, 3위 투자 대상국가가 되었다.

<표 2-2> 지역별 동향

< 단위 : 억 달러, 비중(%) >

	'11	'12	'13	'14	'15	증감률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금액(비중)	
세계	457.4(100)	396.5(100)	356.3(100)	350.0(100)	402.3(100)	15.0
북미	184.7(40)	78.0(20)	67.4(19)	107.4(31)	110.8(28)	3.2
아시아	141.2(31)	147.1(37)	119.3(33)	109.8(31)	166.2(41)	51.3
중국	48.0(11)	66.5(17)	47.0(13)	37.6(11)	43.0(11)	14.0
대양주	44.1(10)	47.5(12)	23.6(7)	14.1(4)	10.2(3)	△27.1
유럽	48.0(11)	61.0(15)	70.2(20)	58.4(17)	33.5(8)	△42.7
중남미	32.0(7)	50.5(13)	68.6(19)	48.3(14)	65.1(16)	34.6
기타	7.3(2)	12.4(3)	7.3(2)	12.0(3)	16.5(4)	37.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표 2-3>을 보면, 투자 업종별로는 투자기관에 투자하는 규모가 전년 대비 93% 증가하여 금융·보험업에 전년 대비 65.5% 증가한 113.7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이로써, 금융·보험업은 2014년 85.9억 달러로 1위였던 제조업 투자를 제치고 최대 투자 업종이 되었다. 2015년 제조업은 미국, 케이만군도, 홍콩에 각각 34.5억 달러, 35.3억 달러, 23.6억 달러, 총 92.4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이에 비해 부동산업은 전년 대비 35.3% 감소한 48.3억 달러, 서비스업은 전년 9.7억 달러 대비 26.5% 감소한 7.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2-3> 업종별 동향

<단위: 억 달러(비중), %>

구분	'11	'12	'13	'14	'15	증감률
제조업	111.4(24)	110.9(28)	100.4(28)	85.9(25)	92.4(23)	1.4
광업	207.1(45)	112.1(28)	79.5(22)	41.4(12)	49.4(12)	19.3
도소매업	22.8(5)	18.4(5)	21.3(6)	17.5(5)	23.2(6)	32.2
금융보험업	38.3(8)	55.8(14)	40.5(11)	68.7(20)	113.7(28)	65.5
부동산업	20.1(4)	24.2(6)	68.5(19)	74.7(21)	48.3(12)	△35.3
건설업	8.1(2)	5.5(1)	7.9(2)	10.4(3)	18.2(5)	76.4
서비스업*	21.6(5)	27.9(7)	13.9(4)	9.7(3)	7.2(2)	△26.5

* 서비스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법률·회계·연구조사·광고·건축설계·디자인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투자 목적별로는 <표 2-4>와 같이 저임활용이 11.6억 달러, 수출촉진이 17.5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5.5%, 3.3% 감소했으며, 제3국 진출, 원자재 확보를 위한 목적은 전년 대비 각각 5.4%, 50.0% 감소하였다. 반면, 현지시장진출이 185.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하였고, 자원개발이 6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1.5% 증가하였다. 또한, 선진기술 도입, 보호무역 타개 등의 목적이 전년 대비 각각 78.2%, 62.4% 증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최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목적은 현지 시장 및 제 3국 진출 등 시장 진출로 보인다.

<표 2-4> 투자목적별 동향

< 단위 : 억 달러, 비중(%) >

구 분	'11	'12	'13	'14	'15	증감율 (전년대비)
현지시장진출	135.9(30)	163.6(41)	139.0(39)	143.6(41)	185.2(46)	28.9
수출촉진	44.7(10)	37.1(9)	32.7(9)	20.8(6)	17.5(4)	△15.5
자원개발	209.5(46)	114.5(29)	91.8(26)	47.2(13)	62.1(15)	31.5
저임활용	19.1(4)	12.9(3)	8.6(2)	12.0(3)	11.6(3)	△3.3
제3국진출	30.9(7)	58.4(15)	77.2(22)	118.2(34)	111.6(28)	△5.4
선진기술도입	13.8(3)	9.0(2)	6.5(2)	7.8(2)	13.7(3)	78.2
보호무역타개	1.0(0)	0.5(0)	0.2(0)	0.3(0)	0.4(0)	62.4
원자재 확보	0.3(0)	0.2(0)	0.1(0)	0.03(0)	0.02(0)	△50.0
기타	2.0(0)	0.3(0)	0.3(0)	0.3(0)	0.2(0)	△25.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표 2-5>를 보면, 대기업투자는 전년 대비 8.1% 증가하여 317.7억 달러가 투자되었고, 중소기업투자는 89.2% 증가하여, 63.8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개인기업이나 개인에 투자하는 액수는 25.4% 감소하여 5.5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아직 금액으로는 대기업투자 액수가 크지만, 중소기업의 증감율이 약 90%로 현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5> 기업규모별 동향

< 단위 : 억 달러, 비중(%) >

구 분	'11	'12	'13	'14	'15	증감율 (전년대비)
대 기 업	404.5(88)	344.7(87)	293.1(82)	294.0(84)	317.7(79)	8.1
중 소 기 업	32.5(7)	27.5(7)	30.8(9)	33.7(10)	63.8(16)	89.2
개인기업·개인	5.2(1)	5.6(1)	4.6(1)	7.3(2)	5.5(1)	△25.4
기타(비영리단체 등)	15.2(3)	18.7(5)	27.9(8)	14.9(4)	15.3(4)	2.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표 2-6>에서 보는 것처럼, 투자 형태별로는 법인 신설, 지분인수(M&A) 모두 증가하였으나, 법인 신설이 전년 대비 19.6% 증가하여 284.1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지분인수 역시 전년 대비 5.1% 증가하여 118.2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표 2-6> 형태별 동향

< 단위 : 억 달러, 비중(%) >

구 분	'11	'12	'13	'14	'15	증감율 (전년대비)
법인 신설	362.5(79)	307.1(77)	260.9(73)	237.6(68)	284.1(71)	19.6
지분인수(M&A)	94.8(21)	89.4(23)	95.5(27)	112.4(32)	118.2(29)	5.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전 세계 각국의 투자 정책은 대부분 투자 자유화, 투자 진흥 및 투자 촉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투자 유치국 정부들은 외부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위한 각종 제도를 변경하고 있다. 유엔 무역 및 개발위원회(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의 조사에 따르면 1991~2000년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 관련된 제도 변경은 1,185개였는데, 이 중 약 95%에 해당하는 1,121개 법령이 투자유치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변경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150개 법령의 변화 중 147개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우호적인 조건이었고, 단지 3개만이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UNCTAD, 2001)

2014년 역시 80% 이상의 투자 정책이 진입조건 개선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입안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인프라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분야별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요 활성화, 이에 부응하는 통화 정책, 지속적인 투자 자유화와 투자 진흥책, 외국인직접투자를 추진 중인 다국적 기업의 증가, 해외 인수합병 등으로 앞으로도 해외직접투자는 성장세로 전망된다.

제 2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1. 시장규모와 경제발전수준

시장규모와 시장잠재력은 외국기업의 투자여부를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만약 외국기업이 제조업 투자를 한다면 소비자와 요소시장에 접근 및 운송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더 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규모가 크면 투자기회도 더 많고,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의 경제로 한계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다. 큰 시장규모는 경제 진출 가능성도 높여주기 때문에 시장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직접투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한병섭·권종욱, 2005)

입지선택 관련연구를 살펴보면 시장규모와 시장잠재력은 투자에 앞서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결정요인이다. 많은 연구에서 1인당 GDP 또는 GNP를 시장규모의 구별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GDP수준은 대중 FDI 결정에 있어 긍정적 효과를 주기 때문에 GDP와 1인당 GDP가 모두 낮으면 FDI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Broadman, H. and X. Sun, 1997)

2. 노동비용

일반적으로 노동비용은 임금을 척도로 사용하여 많은 연구가 FDI 입지선택과 노동비용 간 부(-)의 관계를 제시하였다. 노동력과 임금은 외자기업들의 입지선택 과정에 있어 또 다른 중요 변수이다. 외자 기업은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지역을 선호한다. 특히, 산업이 노동집약적인 경우에는 정(+)의 관계가 나올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비용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으며 자본과 기술집약적인 외국투자기업들은 노동비용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전문기술능력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낮은 임금을 노동자의 기술능력이 높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비숙련노동자의 낮은 생산효율로 인한 손실은 노동비용보다 더 크다. 따라서 더 숙련된 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임금수준이 높은 지역이 오히려 많은 FDI를 흡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동비용이 FDI 유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정확히 일치되는 연구결과가 없다. 생산성과 조정된 임금을 노동비용 변수로 한 연구에서는 예상대로 FDI 유입과 임금수준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지만(Chen, 1997) 명목임금을 변수로 사용한 연구에서는 FDI 유입과 임금수준 간에 유의하지 않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Broadman and Sun, 1997) 기술적으로 노동비용이 크면 회사 경영비용도 커지고 이윤이 감소하기 때문에 FDI 유입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노동비용과 FDI 유입 간에 부(-)의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3. 교육수준 및 기술발전수준

외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식수준이 높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투자 상대국 및 지역에서 인적자본이 풍부한 정도는 생산효율을 추구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외국기업들의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높은 수준을 갖춘 풍부한 인적자본은 높은 과학기술을 갖춘 노동자 및 고급관리자의 활용을 통해서 외국기업의 생산효율에 공헌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대상국 및 지역의 인적자본 상황은 생산효율을 추구하는 FDI 유입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지만수, 2002) 기술은 현지시장에 맞도록 적용시키든, 아니면 현지에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든 양자 모두 현지시장의 기술발전 수준이 중요한 투자결정요인으로 적용된다.

4. 인프라

인프라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면 교통운송과 정보수집 등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생산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는 FDI유입에 중요한 결정요인이다. 일반적으로 인프라는 도로, 항만, 철도, 항공 그리고 교통, 우편, 통신시설, 수력과 전기 제공, 산업서비스, 녹화, 환경보호, 위생사업 등 기술성의 사업과 사회적 서비스의 시설을 포함한다.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 인프라를 갖춘 지

역은 FDI유입 가능성이 더 크다. Gong(1995)은 발달한 사회 인프라가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FDI유입에 대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고, 중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Head and Ries, 1996)

5. 정부정책

FDI 유입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으로 정부정책이 있다. 국가와 지역의 정부정책, 법률과 법규 등이다. 혜택이 많은 정부정책은 FDI 유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높은 무역장벽이 있는 지역은 FDI유입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국기업은 우호적인 정부정책을 실행하는 도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호우정치, 2015)

제 3절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

투자자들이 자신의 국가를 떠나 타국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있다. 이 같은 이론들은 ‘기업이 직접투자 방식을 통해 진출하는 이유’, ‘수출이 아닌 현지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생산을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직접투자에 관한 여러 이론 중, MacDougall(1960)에 의하면 자본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두 지역 사이에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이동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직접투자는 자산의 이동만이 아닌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의 포괄적인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생산력으로 직접투자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민기, 2002) 본격적인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는 Hymer(1960)와 Caves(1974)에 의한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점차적으로 R. Vernon(1966)의 제품수명주기이론, P. J. Buckley(1976)와 M. Casson(1976)의 내부화 이론 등을 통해 직접 투자이론이 제시되었다. 또한 J. H. Dunning(1980)은 제시된 여러 직접투자이론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절충이론을 제시하였다.(최백렬, 2004)

국제거래를 분석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적 틀은 중력모형(gravity model)이다. 이 이론의 주된 내용은 2개국 간의 무역의 양을 양국의 인구, 1인당 국민소득, 거리 및 유대관계의 함수로 보는 것이다. 양국의 규모가 크거나, 잠재적 수요가 크거나, 공급능력이 클수록 무역규모는 늘어난다. 반면, 양국 간의 거리는 높은 운송비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는 비용이 늘어나 무역규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유대관계는 무역마찰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Multi and Grubert, 2004)

중력이론을 FDI에 유추하여 생각해보면 현지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모두 현지에서 판매된다는 가정 하에 다국적 기업이 특정 현지국가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함수는 시장규모와, 임금수준 및 조세 등의 요인인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Carr et al, 2001).

제품의 현지 부가가치가 크거나 본국과 현지국간의 거리가 멀수록 최종 재화를 수입하는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현지 생산을 장려한다. 마찬가지로 무역장벽은 현지생산을 통하여 관세 등을 우회하는 동기를 제공한다. (Janicki and Wunnava, 2004).

1. 독점적 우위이론(Monopolistic Advantage Theory)

외국기업이 해외시장에 직접 진출하여 경영활동을 수행할 때 현지기업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점(disadvantages)이 있음에도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은 그 불리한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우위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지기업이 갖지 못하는 우위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는 것이 독점적 우위이론의 내용이다.

Kindleberger가 지적하였듯이 완전경쟁상태에서는 해외직접투자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시장이 자유경쟁을 하고, 생산이나 마케팅에 외부경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획득에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고, 무역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국제거래의 형태는 무역만이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직접투자는 시장이 불완전할 경우에만 존재하는데 외국기업은 현지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 능력을 현지기업에 파는 데 필요

한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기업은 그 능력을 활용해서 기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직접투자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외국기업이 갖고 있는 독점적 우위란 기업내부에 축적되어 있는 우수한 지식으로 기술, 마케팅 노하우, 경영 능력 등이다. 이러한 지식은 과거의 투자를 통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추가적으로 그 지식을 사용하는데 드는 한계비용은 “0”에 가깝지만, 현지기업이 그러한 지식을 획득하는 데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게 되므로 독점적 우위를 보유한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제품을 차별화함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받거나 더 많은 매출액을 올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독점적 우위이론은 해외직접투자를 최초로 이론화하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독립적인 이론으로 연구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가 간 비교라는 거시적인 전통적 경제이론과는 달리 투자자로서의 기업의 주체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미시적 · 기업 경영적 시각에 기초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 고유의 문제를 설명함에 있어 보다 유용한 시각과 내용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독점적 우위이론은 독점적 우위의 존재가 현지경쟁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점적 우위를 왜 수출 또는 라이선싱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시키지 않고 해외직접투자의 방법을 통해서 이전시키느냐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위의 존재는 설명하고 있으나 우위요인이 어떻게 발생되느냐에 대한 설명은 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해외직접투자가 서로 상이한 관세·조세·통화·조세지역에 대한 진출이라는 해외성에 대한 고려가 결여되어 있다.

2. 과점적 경쟁이론(Oligopolistic Competition Theory)

F. Knickerbocker는 과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경쟁기업의 행동에 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과점적 경쟁이론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신제품을 도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또는 새로운 원료원을 확보함으로써 경쟁우위를 확보하려고 하면, 경쟁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유사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목표시장에 진출시킴으로써 경쟁사와 같이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기업의

시장독점을 극복한다. 이러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 최초로 진입한 선도기업에게 경쟁우위를 허용하게 되어 여타 기업들은 시장에서 기존의 위치와 시장점유율을 상실하여 축출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하면 경쟁기업도 같은 국가 또는 지역에 자회사를 설치하는 방어적 투자를 하게 된다.

과점적 경쟁이론은 선진국 간의 상호 투자와 동일 업종 내의 많은 미국기업들이 단기간에 같은 투자대상국에 직접투자를 하는 현상은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선도기업의 최초투자의 발생시기와 원인은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과점적 경쟁이론은 해외직접투자의 성격이 방어적이기 때문에 결국 해외직접투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하는데 실제로 해외직접투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보완적 성격의 이론이며 해외직접투자의 일반이론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제품수명주기이론(Product Life Cycle Theory)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선·후진국 간의 기술격차와 제품수명주기에 따른 기업의 시장전략변화에 착안하여 제품이 개발된 뒤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과정을 거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도입기에는 경쟁기업(모방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쟁기업의 정부가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세보호 등의 유인책을 쓸 때 선도기업의 입장에서 기존의 해외수출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는 방어적 목적에서 경쟁국인 해외 현지에 생산시설을 세우게 되고, 성숙기에는 가격경쟁을 하면서 모방국이 혁신국에 역수출을 함에 따라 본국시장에서의 시장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생산비국가로 생산시설을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은 직접투자를 통해서 현지 생산을 하고 처음에는 현지 시장을 표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생산비용이 기술모방국에 유리하게 바뀔에 따라서 본국으로 역수출하게 된다.

제품수명주기이론은 무역과 직접투자를 해외시장의 이용과 같은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과 시간이라는 변수를 도입한 동태적인 이론이라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으나, 이 이론 자체는 직접투자가 꼭 발생한다는 필연적인 조건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4. 행동과학적 접근 이론-기업행태 이론(The Behavioral Theory Of The Firm)

기존의 이론들은 국제기업들의 경제적·합리적·조직적 목표와 동기를 근거로 해외직접투자가 실행된다고 보았으나, 기업행태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최초의 투자가 계획되고 집행되는 이유는 기업의 경영방침에 따른 해외시장에 대한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연구와 조사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우 주관적인 어떠한 강력한 외부적 자극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았다. Yair Aharoni는 기업의 행동을 기업내부 의사결정과 외부적인 자극에 의한 행동으로 구분한다. 기업내부 의사결정은 최고경영자의 개인적인 목표나 야심 등이 주로 반영되는 절차이며, 외부적인 자극은 외국정부나 기업의 고객 등 기업내부와 관련 없는 원천으로부터의 제안, 시장 상실의 위험, 밴드웨건효과⁴⁾, 해외로부터의 강력한 경쟁 등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과정에 투입된 인원은 자신의 성취욕과 자아실현을 위해 해외직접투자의 실행이라는 주관적인 판단 하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이다.

기업행태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결정되는 것이 조직내부의 의사결정과정과 기업외부적인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독특한 기업행태적 현상에 중점을 두어 인간적 요인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행함을 강조한다.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 시기 및 조건을 기업경영자의 반응이나 목표 등과 같은 행태적 측면에서 제시한다.

이 이론은 해외직접투자 자체에 대한 이론이라기보다는 해외직접투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론으로써 투자가 일어나는 동기나 과정을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파악했다는 한계가 있다.

4) Band Wagon Effect, 서부개척시대 금광채굴이 유행할 때 특정지역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문이 돌면 그 지역으로 연달아 몰려가던 형상을 해외직접투자에 인용한 것으로 경쟁자의 행동을 다른 경쟁자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말함

5.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내부화이론은 국제기업이 외부시장(무수히 많은 독립적 관계에 있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시장)을 이용한 거래에서 거래비용을 절약하고 거래의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시장을 창조하는데 이러한 내부시장(모기업 산하 모기업과 자기업 간, 또는 자회사 간의 조직 내부 거래)의 창조가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개별 기업 간의 수출과 수입 등 외부 시장을 통한 독립적인 거래는 외부거래자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과 시간과 비용, 거래성립의 불확실성, 불완전성의 증가로 경영성과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기업은 외부시장의 불안정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부거래의 계약자나 해당거래 기업을 인수하거나 진출하여 자회사를 세워 거래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거래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이다.

내부화이론은 내부화의 이유를 외부시장의 거래비용의 증가로 인해 거래당사자들의 이윤이 저하되는 외부시장의 불완전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즉, 시장을 통할 경우 거래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비용의 감소효과를 누리기 위해 외부거래를 내부화하게 되고 이것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라고 정의한다.

6. 거래비용 이론

시장거래에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거래비용이 존재하며 기업조직 등의 경제적 제도들은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발전되었다고 보는 이론이다. 즉, 기업의 조직이나 형태는 결국 기업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업과 시장 사이의 효율적인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기업조직이 시장으로부터 형성되는 이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거래 발생에 있어 기업조직 경계 안의 내부적 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기업은 조직

생산 활동의 범위 내에서 어느 부분을 내부에서 생산할 것이며, 어느 부분은 외부 거래를 통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와 같은 이른바 ‘생산과 구매(Make-or-Buy)’에 관한 의사결정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조직의 경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올리버 윌리엄슨(O. E. Williamson) 교수에 따르면, 거래비용이란 ‘경제제도를 운영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사전적 거래비용(거래조건에 대한 협상·합의작성 비용)과 사후적 거래비용(분쟁관련비용, 계약이행보증비용 등)이 있다. 또한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Ronald Coase)는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장에서의 시장기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기업조직이 더 경제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조직이 발생한다고 본다.

A국에서 생산하는 원자재를 B국이 수입하여 가공·판매할 경우 드는 수입 비용, 운송·물류 비용 등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B국이 직접 A국에서 생산·가공·판매하는 것이 해외직접투자이다.

7. Dunning의 절충이론

John H. Dunning(1980)은 이전의 이론들은 직접투자의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독점적 우위이론과 내부화이론을 통합한 절충이론(Eclectic Theory)을 제시하였다. 절충이론은 독점적 우위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독점적 우위를 수출이나 매각이 아닌 직접투자 방법으로 하는 이유와 내부화 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생산입지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Dunning은 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일정하지 않고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Dunning(1980)의 절충이론에 의하면 기업들이 FDI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우위요소를 가져야 한다. 그 세 가지 우위요소는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경쟁해 나갈 수 있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Ownership Specific Advantage), 외부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내부화의 우위요소(Internalization Advantage), 현지국가에 진출할 경우 현지국가의 특별 정책이나

운송비의 절감, 풍부한 자연자원 등과 같은 입지우위요소(Location-Specific Advantage)이다. Dunning은 <표 2-7>에서와 같이 세 가지 우위 요소를 나누어서 보여주었다.

<표 2-7> 절충이론의 우위요소

<p>기업특유의 우위요소 (Ownership Specific Advant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규모, 제품, 생산, 특허, 독점력, 지명도의 이용능력 · 특허기술 및 상표 · 생산관리, 조직, 마케팅시스템, 연구개발능력, 인적자원의 축적과 경험 · 노동, 원료, 금융정보 등의 투자자원에 대한 접근 및 획득능력 · 생산, 구매, 마케팅, 자금조달의 공동공급의 유리 · 위험분산능력 · 정보, 투입요소, 시장 등에 대한 보다 유리한 접근 · 시장의 국제적 차이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p>내부화의 우위요소 (Internalization Advant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자 선정, 협상 조정 등의 시장거래비용의 회피 · 독점적 권리확보에 따르는 소유권리비용의 회피 · 거래제품의 가치 및 성질 등에 대한 거래불확실성의 극복 · 내부거래를 통한 제품의 품질보장 · 쿼터, 관세, 가격통제, 조세차별 등의 정부간섭회피
<p>입지우위 (Location-specific Advantag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물의 가격, 품질 생산성 · 운송, 통신비용 · 수입규제, 세금유리, 투자유인, 투자환경, 정치적 안전성 · 경제 하부구조, 사회간접자본 발달 정도 · 언어, 문화, 국민성의 이질감

자료: J. H. Dunning, "Toward an Eclectic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Spring/summer, 1980), pp.10-12)

절충이론에 의하면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를 외부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내부화하는 것이 유리할 때에 기업은 라이선싱 방식을 버리고 수출이나 해외직접투자를 선택할 것이다. 기업특유 우위요소는 그 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형 자산으로 그 기업이 기업특유의 우위요소를 수출이나 라이선싱과 같이 외부시장을 통하여 이용하는 것보다 이를 자체 내의 조직체계를 이용하여 직접 이용함으로써 얻는 이익, 즉 내부화를 통한 이익이 더 커야 한다. 내부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내부거래시장 창조, 가격차별화 구조 구축, 쌍방적 협상의 회피, 구매자 불확실성의 회피와 이전가격을 통한 정부영향의 최소화 등이 있다.

입지우위요소는 다국적기업을 특정국가로 끌어들이는 그 국가의 매력이다. 국제

적으로는 성장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큰 시장, 저렴한 인건비, 양질의 노동력, 협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다. 또한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내부화 우위요소가 현지국가의 생산요소와 결합하여 이용될 때 그 이익이 커야 한다. Dunning의 절충이론은 현재까지 개발된 해외직접투자이론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미시적이며 기업적 관점에서 생산입지이론을 결합하였기 때문에 유용성 면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

Dunning의 절충이론에 입각하여 제주에 투자한 중국기업의 우위요소를 살펴보면, 중국기업은 제주도에 온 중국인 관광객에게 지명도 등 독점력이 있으며 자국민에 대한 정보와 시장을 잘 아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거래자 선정 및 협상 조정 등의 시장거래비용을 회피하고 조세차별 등의 정부간섭을 회피하는 내부화의 우위요소, 거리가 가깝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관광객(중국 관광산업의 소비자)을 유인하는 투자환경과 세금에 유리하며, 자국민에게 언어 및 문화의 이질감이 없는 입지우위를 우위요소로 가지고 있다.

이 때, 현지국의 투자진흥지구 등 현지 정책이 세금과 지대 등 거래비용을 낮춰 주어 중국이 내부화 우위 및 입지 우위를 점하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제주도에 투자하게 된다.

제 4절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 및 효과

1. 외국인 직접투자 동기

외국인 직접투자의 동기는 자원지향형(Natural Resource-oriented), 시장지향형(Market-oriented), 생산효율지향형(Production Efficiency-oriented), 위험회피형, 노동지향형(Labor-oriented), 수출지향형(Export-oriented), 지식지향형(Knowledge-oriented) 투자로 나누어 볼 수 있다.(최백렬, 2004)

1) 자원 지향형 투자 동기

자원지향형 투자는 해외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기업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행하는 데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저렴한 해외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한다. 자원지향형 투자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천연자원 지향형 투자이다. 예를 들면 천연자원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하자원 및 임·수산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지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이다. 채취한 원료는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투자국 또는 제3국에 재수출하며 원유, 광업, 농업, 임업 등의 자원개발 투자와도 연관이 있다. 자원개발을 행하기 위해 투자하는 이유는 투자기업자체의 생산활동지원 본국에서 타 기업체에게 수출지원, 제3국에 판매 등이다. 둘째는 인적자원, 즉 해외 영가 노동력의 이용이다. 자원지향형 투자에 있어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투자전략은 기업의 능력, 규모, 기술, 투자입지의 특성, 투자 진출업종에 따라 각기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 동종 자원이 선진국과 후진국에 똑같이 매장되었다면 어느 지역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유동, 2011)

2) 시장 지향형 투자 동기

시장지향형 투자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해외에 이전시켜 현지생산 판매를 동시에 현지시장점유율을 향상시킨 형태의 투자를 말한다. 시장지향형 투자 종류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신시장 개척이다.

다국적 기업은 새로운 지역에서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서 현지의 수출시장을 파악한다. 두 번째로, 기업이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것보다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생산과 판매 행위를 하는 기업에게 더 유리할 때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한계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기업은 수입국 혹은 제3국에서 직접투자하며 수입국 현지에서 직접 생산 혹은 제3국에서 생산한 다음에 수입국으로 수출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수입국의 무역한계나 다른 수입 장벽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지향형 투자의 입지는 다양한 기업 내외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기업 내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째,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도상국 현지시장의 공급자, 수요대상, 판매경로 등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기업이 생산하는 경쟁제품이 개발도상국 현지에서 경쟁우위가 있어야 한다. 셋째, 개발도상국 현지에 투자할 만큼의 자본 수집이나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외적 요인도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현지 개발도상국의 시장규모가 투자대상이 될 만큼 충분한 시장 및 자원규모를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현지 개발도상국 시장의 수요성 및 수용력이 높아야 한다. 셋째, 투자할 현지 개발도상국의 경제, 정치, 문화, 법률적 환경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3) 생산효율 지향형 투자 동기

생산효율지향형 투자는 현지의 생산 요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출하는 것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생산효율지향형 투자는 다국적 기업이 현지의 풍부한 생산요소를 찾아서 생산 활동을 전개하는 것, 즉 현지의 생산요소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진출한 것으로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이루어진다. 미국, 일본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 대만 등의 동북아 지역과 동남아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산설비 투자를 할 때 이러한 유형의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에는 한국기업체들이 해외의 저렴한 임금을 이용하고자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직접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4) 위험 회피형 투자 동기

위험회피형 투자는 투자지역에서의 정치 불안 위험, 국유화 위험, 정책변동 위험 등 정치위험과 환율 위험, 이율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등 경제적 위험이 없는 국가나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해외에 직접 투자할 때 앞서 언급한 정치위험이 높은 지역에 진출을 회피한다. 경제적 위험에 대해 기업은 보통 다양화 투자 방식을 이용하여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줄인다.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 각국에서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본을 분산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있다.

5) 노동지향형 투자동기

생산요소 중 노동력은 자원이나 상품에 비해 국제적 이동에 많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국내의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비싼 경우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국가에 직접 투자하는 것을 노동지향형이라고 한다. 신발·의류 등의 제조업과 전자제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저임금 노동시장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의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중국도 인구가 많고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유입되어 왔다.⁵⁾ 특히, 이러한 노동지향형 직접투자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노동이 풍부한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비교우위를 강화하여 국제 분업을 재편성하게 된다.

6) 수출지향형 투자동기

수출지향형 투자는 현지 시장에 침투하여 장악하려는 시장지향형 투자와는 반대로 생산한 제품을 투자기업의 본 지역 또는 제 3지역의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직접투자하는 경우이다. 현지시장의 규모가 충분히 크지 않아 공략하기에 적합하지 않지만, 현지지역의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자원, 대규모 공업 단지, 직접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 수출 제품을 저원가로 생산할 수 있을 때 직접투자가 발생한다.

5) 처음에 중국에 대한 FDI는 저임금을 겨냥한 투자가 많았으나 임금 상승과 중국정부의 정책전환으로 2000년 이후에는 노동 지향형 투자가 감소하였다.

투자본국에서의 비교열위 산업을 해외로 이전하여 해외 현지의 비교우위 요인과 결합하여 비교우위를 획득하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투자본국 및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형태가 바로 수출지향형 투자이다. 투자 현지국으로는 국내시장이 대체로 협소한 반면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비교적 풍부한 공업단지,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 제공 등 수출용 제품의 해외 저가 생산 기지로서 적합한 국가가 해당된다.

7) 지식지향형 투자동기

지식지향형 투자는 외국의 선진기술이나 경영관리 기법 등을 습득하기 위한 동기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유럽의 기업들이 기술수준이 높은 미국 기업 등을 합병 인수하여 우수한 기술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2. 외국인 직접투자 효과

외국 기업이 직접투자를 통하여 현지국에 진출할 경우, 외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현지국에 이전시키게 된다. 따라서, 외국기업의 진출을 받아들이는 현지국의 입장에서는 외국 기업의 진출로 인해 현지국의 부족한 산업 자본이 외국 자본으로 충족되고, 제품 공급도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외국 기업이 현지국에 진출할 때, 현지국에 공장이나 법인을 설립하여 생산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현지 인력을 채용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창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진출로 그와 연관된 산업군을 형성하는 국내 현지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연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정부의 보호 아래 성장한 현지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현지국 진출로 인하여 경쟁에 노출되고, 이로 인하여 경영혁신·기술개발·자체적인 자본 축적 등의 동기가 유발되어 현지국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해외직접투자기업의 활동은 현지국 정부와의 마찰 등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해외투자기업은 한 지역에서의 이익이 아닌 기업의 전체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국의 경제만을 중시하는 현지국의 입장과는 다른 입장을 띠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현지국의 산업기반이 취약할 경우 현지국의 경제가 외국 기업들에 의해 종속화되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투자 유치는 국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도입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해외 첨단기술과 선진 경영기법을 들여오으로써 산업고도화를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내·외로부터의 투자는 투자유치지역의 자본 증가 뿐만 아니라 선진기술 획득, 생산 및 고용효과, 생산성 과급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김은경, 2007) 또한,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생산성을 높이며, 세수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안정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간주된다.(정원식·김석용, 2011)

외국인직접투자는 소유와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외국 자본의 유입은 물론 현지 국민경제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를 경제 성장, 고용, 수출, 소득불균형 등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백렬, 2004)

1)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외국기업에 의한 외국인직접투자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면 국내투자가 확대되고, 또한 외국기업의 우수한 경영관리기법과 마케팅노하우(marketing know-how), 생산기술도 도입됨으로써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⁶⁾가 나타나게 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어 현지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게 된다. 그리고 현지 유희자원과의 결합을 통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또한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계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써 정부의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2) 고용에 미치는 효과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방식, 현지화 정도, 그리고 현지 경쟁적 기업의 존재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생산방식이 보다 노동집약적일수록 고용창출효과는 크다.

3) 기타 효과

현지의 국내 산업이 유치(infant industry) 상태에 있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 등 기업특유 우위요소가 국내기업들에게 파급됨으로써 국내

6) 케이즈 단순모형에서 독립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단지 독립지출의 증가분만큼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및 배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를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라고 한다. 이때 승수-균형국민소득 증가분/최초의 총수요 증가분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말하는 승수효과는 외국인 투자기업 자체의 투자나 생산에 비해 국내 산업 전체로 파급되어 나타나는 생산 증대효과를 의미한다.

기업 성과제고의 동적 효과가 있어(이성봉, 2012),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하여 초기의 경험을 습득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산업이 비효율적인 고비용의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제 5절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를 보면 각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경남의 FDI 결정요인 연구로서 김영표(2007)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 전체 49%가 시장의 규모와 인근시장 접근성을 꼽았으며, 공장부지 가격과 임금 등 생산요소 비용은 24.6%, 공항, 항만, 고속도로 등 물류 인프라 등 산업기반 시설 16.9%, 행정서비스와 재정 인센티브는 1.5%에 불과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치국의 시장규모 지표인 GNP나 GDP가 해외직접투자와 주요한 상관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으나(Schneider & Frey, 1985; Dunning, 1980; Loree & Guisinger, 1995), 다른 연구에서는 중요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Swedenborg; 1979; Nigh, 1985). 또한 독점적 우위도 일부 연구에서는 해외직접투자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Yu, 1990; Hennart & Park, 1994; Denekamp, 1995), Ajami & BarNiv(1985)의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독점적 우위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전용욱·윤동진, 1991; 방호열, 1993). 무역장벽의 경우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Agodo, 1978; Owen, 1982; Saunder, 1982). 한편 Goldtein(1985; 이상울·이종호, 2004; 홍성진, 2006) 등이 외국인직접투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KOTRA·산업통상자원부(2011)는 자프코(주)가 한국에 진출하게 된 동기로 한국의 잠재성을 보고 투자하였다고 하였고, 권활오(2005)는 싱가포르의 투자보조금 인센티브로 혁신개발지원 및 신기술 도입 프로젝트의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투자유인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홍열(2005)은 해당지역의 투자여건 조성과 산업클러스터의 발전은 기존기업들이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Barrell과 Pain(1999)은 투자대상국의 시장규모, 잠재적 수요, 정치적 위험도, 기술발전 수준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Drabek과 Payne(2001)는 현지국 정보의 조세율, 투자장려책, 규제정책 등의 요인의 중요성을 분석하였으며, 김억현(1999)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으로 투자동기,

기업의 다각화정도,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유형화하고 양질의 노동력 등 투자환경이 투자동기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Friedman, Gerlowski, Sliberman(1992)의 연구결과는 입지결정에 노동시장의 조건이 중요한 변수를 보이면서 다국적 기업이 실업률로 측정되는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입지를 선호한다는 것을 보였다. Zhao and Zhu(2000)는 시단위의 투자 입지 선택에 대한 연구에서 입지 결정요인에 대하여 투자국별로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본 연구에서 타 국가들의 對 中國 FDI기업 대비 일본기업들은 낮은 임대료, 풍부한 인적자본 높은 수출 집약을 보이는 지역을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ng and Zhao(1995)는 1983년부터 1992년까지의 10년 동안 중국 28개 성을 대상으로 FDI 유입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인 GNP와 경제특구 등의 요인은 正(正)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임금수준, 교육수준 등의 요인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인프라가 FDI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기업이 자회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처에 투자결정시 고려하는 시장, 노동, 부동산, 금융, 행정서비스, 조세, 교통, 생활환경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존재한다.

박용규·송영필·강신겸(1999)은 인센티브 지급 심의 및 결정 절차를 협상 접점부서 중심으로 하향조정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Dicken(1994)의 연구를 인용하여, 선진국 투자 시에는 고급인력, 기술·R&D, 고성장잠재력 순으로, 개도국 투자 시에는 저임금, 자원, 부동산·금융이익 순으로 해외투자입지 결정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 기업의 해외투자 입지결정요인에 관한 다른 연구들을 살펴보면, Bachtler(1996)는 시장접근성, 노동력 확보, 인프라, 재정지원, 고급인력 확보순으로, Singh(1995)는 정치적 위험성, 사업여건, 거시경제 상황 순으로 중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김진용·전광명(2001)은 현지시장규모, 안정된 노사관계 등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Agodo(1978)는 해외투자 현지국의 정치적 위험은 투자의사결정에

부정적이라고 하였으며, Woodward와 Rolfe(1993)는 기업이 현지국에 투자할 때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고 현지생산 제품의 수출지향이 정치적 위험을 경감한다고 주장하였다. 임성훈(1999)은 시장지향, 생산효율지향,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 천연자원지향 등이 다국적기업의 해외 투자동기로 그 중에서 전략적 자산 및 능력습득지향은 선진국의 첨단기술이나 핵심역량을 획득하기 위하여 해외 진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를 강조한 반면에, Coyne(1944)는 금융 인센티브보다는 조세 및 시장편의 인센티브를 더 중요하게 보았으며, Itami(1987)도 기술, 경쟁, 자원, 조직 고객요소를 외국인투자정책 적합성으로 제시했다.

<표 2-8>의 선진국과 개도국의 외국인투자동기를 각각 살펴보면, 개도국은 현지시장, 인센티브, 합작 및 제휴 순으로, 선진국은 현지 시장, 기술이전, 제3국 시장진출 순으로 중요하다고 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동기를 종합해보면 현지시장이 4.51, 현지국의 인센티브가 3.12, 합작 및 제휴가 2.96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난다.

<표 2-8> 외국인직접투자 동기 출처: 이인범(2009)

순위	선진국		개도국		전체	
	진출 동기	중요도	진출 동기	중요도	진출 동기	중요도
1	현지시장	3.67	현지시장	4.32	현지시장	4.51
2	기술이전	2.98	인센티브 (host)	3.32	인센티브 (host)	3.12
3	제3국 시장진출	2.94	합작 및 제휴	3.07	합작 및 제휴	2.96
4	자원확보	2.66	수입규제회피	3.00	제3국 시장진출	2.92
5	합작 및 제휴	2.84	제3국 시장진출	2.91	기술이전	2.90
6	인센티브 (host)	2.60	기술이전	2.87	수입규제회피	2.79
7	인센티브 (home)	2.34	저렴한 노동력	2.59	자원확보	2.64
8	수입규제회피	2.23	인센티브 (home)	2.57	인센티브 (home)	2.47
9	저렴한 노동력	1.89	자원확보	2.56	저렴한 노동력	2.24

자료: 전경련(1998), 아태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환경비교, p. 7

주) 중요도의 범위는 1~5이며, 수치가 클수록 중요도는 높음

<표 2-9>는 FDI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그린필드형과 M&A형, OECD국가와 비OECD국가를 비교하여 표로 나타내었다.

그린필드형은 1인당 실질 GDP 총인구수, 무역개방도, 투자협정 등이 정(+)의 관계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 등이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M&A형의 경우에는 1인당 실질 GDP, 실질환율, 금융시장 발전, 투자 협정 등이 정(+)의 관계를, GDP증가율, 국가위험도 등이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경우 1인당 실질 GDP, 투자협정은 정(+)의 관계를, 총 인구수, 인플레이션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OECD국가의 경우 1인당 실질 GDP와 투자협정은 정(+)의 관계, 인플레이션과 국가위험도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적으로 1인당 실질 GDP와 총 인구수, 무역개방도, 투자협정 등은 정(+)의 관계를 인플레이션, 국가위험도는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표 2-9> FDI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

분류	주요결정요인		
	전체 FDI	그린필드형	M&A형
전체 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 GDP(+) · 총 인구수(+) · 인플레이션(-) · 무역개방도(+) · 국가위험도(-) · 투자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 GDP(+) · 총 인구수(+) · 인플레이션(-) · 무역개방도(+) · 국가위험도(-) · 투자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 GDP(+) · GDP 증가율(-) · 실질환율(+) · 금융시장발전(+) · 국가위험도(-) · 투자협정(+)
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 GDP(+) · 총 인구수(-) · 인플레이션(-) · 투자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 G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션(-) · 실질환율(-) · 금융시장발전(+)
비OEC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 GDP(+) · 인플레이션(-) · 국가위험도(-) · 투자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증가율(+) · 인플레이션(-) · 국가위험도(-) · 투자협정(+) · 투자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실질GDP(+) · GDP 증가율(-) · 총 인구수(+) · 실질환율(+) · 금융시장발전(+) · 국가위험도(-) · 투자협정(-)

자료: 이종하·이준원(2015).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 논집」 제 17권 제4호.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조영복(2010)은 시장기능, 국제원조, 국가능력, 시민사회에서 받은 등급 등 경제적 요소도 투자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한다.

다국적기업 해외 직접투자의 동기 대부분은 기업의 이익과 발전이다.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 해외 직접투자 유인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의 누계액과 법정세율차이, 본국의 관세율, 조세조약체결유무 등 세무요인 및 본국의 GDP, 양국 간 거리, 임금수준의 차이, 기술 수준의 차이, 문화적 차이 등 비세무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법정세율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투자자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의 투자자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조세조약이 제공하는 다양한 조세혜택이 투자의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을 참고할 때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하여 꾸준한 조세조약의 체결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비세무변수 중에서는 투자자 본국의 GDP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일수록 해외직접투자에 관심을 갖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또 본국과 현지국의 임금격차가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다국적기업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투자처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한편 본국과 현지국의 거리가 멀수록 외국인직접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이나 커뮤니케이션 등의 비용이 증가하여 불리한 경영환경이 조성되는데 따른 결과라고 생각된다.

Ⅲ. 제주도의 중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사례분석

제 1절 중국 해외직접투자

1. 중국 해외직접투자의 주요동기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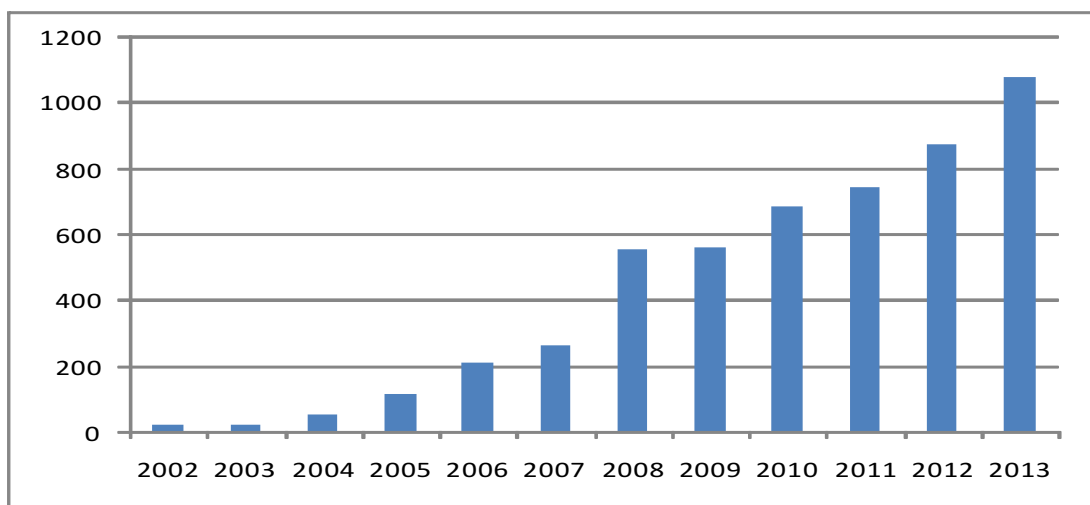
현재 중국은 세계 1위 외환 보유국이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에너지, 하이테크 산업, 선진 유통망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해외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의 활용 가능한 외환보유액 중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위탁운영 자금과 해외투자 가능 가계자산은 2012년 기준으로 약 5,6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중국 GDP의 약 7%, 외환보유액의 약 17%에 달하는 수준이다. 중국의 해외투자 기관으로는 위탁운영 자금의 경우 중국투자공사(CIC)와 중국외환관리국 화안공사(SAFE Investment Company Ltd.), 가계자산은 중국사회보장기금(NSSF)과 국내적격기관투자자금(QDII) 등이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유치 정책(인진라이, 引進來)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해외직접투자(OFDI: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가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이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해외투자대상 산업은 주로 자원 확보를 위한 광산업, 금융 등 서비스업에 집중되었다. 광산업 직접투자는 2003~2012년간 연평균 33.1%씩 증가하여 135.4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이는 전체 해외직접투자 금액의 15.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대서비스, 도소매판매업, 금융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도 크게 증가하여 2012년 기준 각각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30.5%, 14.9%, 11.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경제성장의 한계를 극복함과 동시에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도모하고자 통상전략을 다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해외직접투자 투자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2002년 27억 달러에서 2004년 55억, 2005년 122.6억 달러, 2006년 211.6억 달러, 2008년에는 565.3억 달러, 2011년 746.5억 달러, 2013년에는 1078.4억 달러로 한 번도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2007년 265.1억 달러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증가폭도 크다.

<그림 3-1> 중국의 해외투자액 추이(2002~2013)

(단위: 억 달러)



중국의 해외투자 동기는 일반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외국의 기술습득, 자국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사업다각화 등 4개 분야이다. 그 중에서도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수준 향상으로 대폭 확대된 에너지 소비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자국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선진기술 보유기업을 매수하려는 목적이다.

즉, 단기적인 이윤보다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세계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인데, 대부분 자원 확보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 목표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과의 문화관습이 유사한 홍콩 등 화상문화권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중남미 지역으로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산업구조 고도화, 글로벌화, 해외시장 확대 등으로 해외투자의 목적도 다변화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넘치는 투자재원 소화, 국내 고용문제 해소, 미국에 버금가는 세계 강대국 지위 확보를 위한 장기적 차원의 준비 등 또 다른 속사정들도 있다.

첫째,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증가에 따른 무역장벽 회피 필요성이 높아졌다. 둘째, 외자기업들의 중국 내 FDI 투자 확대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로 인한 내수 시장 공급과잉 및 경쟁심화이다. 셋째, 일부 기업 및 기업가들의 해외시장 진출 노력이다. 넷째, 2조 달러를 상회하는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성장세가 꺾이는 중국 국영기업의 활동무대를 글로벌 무대로 옮겨준다는 다각적인 목표에 서이다. 중국의 국영기업은 자금력 우위를 무기삼아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글로벌 기업 및 개도국의 현지기업을 압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중국이 투자국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이 아닌 경쟁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중남미 지역국들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의 취약한 이념의 틈새를 넘어 진출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및 쿠바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원까지 확대하고 있다. 다섯째, 해외시장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2010년 상반기 중국의 대 브라질 투자규모는 2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5년 남미 순방시 리커창 총리가 브라질의 각종 인프라 투자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섯째, 중국의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중국 내에서의 사업이 더 이상 글로벌 경쟁력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국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20%에서 30% 가량 인상되어 현지진출 기업들의 고용사정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는 중국이 가장 빠르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부문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중국기업들로 하여금 해외진출로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진출 확대 과정은 투자맹아기, 국유기업위주 투자기, 민영기업 참여 확대기, 조정기 및 장려기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신호윤, 2007) 개혁개방 이후 저우추취 정책의 시행에 따라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금액 및 건수 면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조정기에 들어서면서 다소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과정을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표 3-1>처럼, 시작단계, 실험단계, 확대단계, 가속화단계 및 조직화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시작단계

(1979~1984년)는 일부 국유 무역기업과 자원개발업체에 한정되어 해외에 투자하였고, 액수가 적고 간단한 업무기능에 국한되었다. 실험단계(1985~1991년)는 국유 무역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였다. 확대단계(1992~2000년)는 하이얼 등 우량 대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 등을 건립하는 등 대형 기업들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서는 단계였다. 가속화단계(2001~2005년)는 대형 우량 IT업체가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선진국에 R&D센터 등을 설립해 점포망이 확장되고, 중국정부도 기업을 적극 장려하기 시작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가속화되는 단계이다. 2006년 이후(조직화단계)는 해외경제협력단지 등의 설립이 확대되며, 전 세계로 중국 자본이 뿔어나가고 있다.

<표 3-1>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과정

기간	단계	각 단계별 주요 내용
1979~1984년	시작단계	- 일부 국유 무역기업과 자원개발업체가 해외에 투자, 대표사무소나 사무처 등을 설립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입 대행, 자원 개발 - 투자액 적고 업무 기능도 비교적 간단
1985~1991년	실험단계	- 국유 무역기업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판매 법인과 지점을 설립하여 판매망을 확보하고, 초보적인 판매 네트워크 형성
1992~2000년	확대단계	- 하이얼 등 우량 대기업이 해외에 생산기지와 수리 센터를 건립하고, 일부 대형 집체기업이 해외직접투자에 나섬 - 일정 규모의 생산기지 투자 네트워크 형성 시작
2001~2005년	가속화단계	- 대형 우량 IT업체가 선진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일본 등지에 R&D 센터와 연구소 설립 - 국유상업은행과 투자신탁회사가 해외 주식시장 상장 시도하고 점포망 확장 시작 - 정부도 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적극 지원 장려하기 시작
2006년 이후	조직화단계	- “해외경제협력단지” 설립 확대

자료: 김익수, “사들이는 중국, 팔리는 한국 : 중국기업의 글로벌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에세이 019, 2005. p.27의 표 보완; KITA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2008. 2, p.2. 재인용

2000년 저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 촉진, 중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전략의 실시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보다 확대되었고,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한 중국의 해외투자가 우량 민영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기업 M&A까지 다각화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투자는 중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의 해외 그린필드형 투자는 거의 없는 반면, 자원개발, 기술습득, 브랜드강화 및 사업다각화 등 중국의 비교열위 부문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 M&A형 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⁷⁾

기관별로는 <표 3-3> 중국의 비금융분야 해외투자 기업 투자액 및 비중(2013)에서 보는 것처럼, 2013년 국가기관 및 국유기업에 의한 투자비중이 43.9%를 차지하며, 유한책임회사가 42.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국가기관 및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2013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비금융 누적해외직접투자액 5,434억 달러 가운데 국유기업 비중이 55.2%, 비국유기업 44.8%로 비국유기업의 비중이 전년대비 4.6% 포인트 증가하였다. 국가외환관리국과 중국투자공사, 3대 국영석유회사 등 5개 기관 및 기업에 의한 해외투자는 2005~2007년 239억 달러에서 2008~2012년 6월 1,22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투자비중도 39%에서 45%로 상승하였다.⁸⁾

투자주체면에서 보면,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와 자원확보를 위해서는 국유기업 중심의 해외기업 인수가 지속되겠지만, 서비스업종과 생명공학 등 미래유망산업에 대한 투자와 신흥시장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M&A가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점차 우량 민영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⁹⁾

<표 3-2> 중국의 비금융분야 해외투자 기업 투자액 및 비중(2013)

(단위: 억 달러, %)

투자기업	투자액	비중
국유기업	407.1	43.9
유한책임회사	391.4	42.2
주식유한회사	57.5	6.2
주식합작기업	20.4	2.2
사영기업	18.5	2
외상투자기업	12.1	1.3
기타	20.4	2.2
전체	927.4	100

자료: 2013년도 중국대외직접투자액통계보

7)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자본 유치의 전제조건, 통상정보연구 제14권 1호(2012년 3월 27일)

8) 한국은행(2013:8) 5대 국가기관 및 국유기업에 의한 해외투자 규모 및 증가 추이

9)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2011:4)

<표 3-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액(2012)을 보면,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채광업을 중심으로 도매·판매업, 금융업, 제조업 순으로 업종별 투자가 분포되어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분야가 제조업·광산채굴업·서비스업에서 부동산·건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표 3-3>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업종별 투자액(2012)

(단위: 만 달러)

순위	업종	투자액
1	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	2,674,080
2	채광업	1,354,380
3	도매, 판매업	1,304,854
4	금융업	1,007,084
5	제조업	866,741
6	건축업	324,536
7	교통운수, 창고, 우정사업	298,814
8	부동산업	201,813
9	전력, 가스 및 수력 생산과 공급	193,534
10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지질조사업	147,850
11	농,림,목,어업	146,138
12	정보통신, 컴퓨터서비스, 소프트웨어업	124,014
13	주민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	89,040
14	문화, 체육, 오락	19,634
15	숙박, 요식업	13,663
16	교육	10,283
17	수리공사, 환경과 공공시설관리업	3,357
18	위생, 사회복지, 사회서비스	538

자료: 중국국가통계국(<http://www.stats.gov.cn>)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중국건축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이 미국·유럽은 정체된 반면 아시아·아프리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경외투자관리방법(境外投資管理方法)” 공포를 통해 심사비준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고 비준절차도 간소화했다. 또한, 국가외환관리국은 “경내기업의 해외대출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關於境內企業境外放款外匯管理有關問題的通知)”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직면하는 자금부족 문제를 완화시켜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2012년 중국개인의 투자가능 자산 규모는 80조 위안으로 2008년에 비해 2배 증가했으며, 1천만 위안(한화 19억

원) 이상 자산가도 70만 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¹⁰⁾ 개인 여유자금 증가, 위안화 강세, 자녀의 해외유학 등이 결부되면서 현지 부동산 구입사례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¹¹⁾

중국 공적자금(公的資金), 보험사 등 기관투자 및 국영건설사들의 부동산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공적기금 운용 방향이 금융보험·전산업·공업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고, 정보기술·부동산 투자는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공적기금은 지금까지 부동산투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한국·일본 국민연금의 부동산투자 운용비율(2.5~3.0%)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환 모색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해외 공공건설 분야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 건축시공업체가 세계 각지에서 활발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빌딩, 발트해의 보배 프로젝트, 에티오피아의 아프리카연맹회의센터, 카리브해의 Bahamar 복합 리조트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나라별로는 2013년 기준 중국의 1.53만 개 투자자가 해외 184개국, 2.54만 개의 직접투자 기업을 설립하였다. 유럽과 미국에 대한 투자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라틴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시아에 대한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2013년 기준 대외투자 누적액 6,604.8억 달러로 세계 순위 11위이다.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대 대외투자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의 2013년 대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22.8% 증가한 1,078.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UNCTAD)가 8일 중국 샤먼에서 발표한 "세계투자보고2014(중문판)"에 따르면 2013년 중국 FDI(외국직접투자)유입량이 미화 1,240억 달러에 달하여 역사상 신기록을 세웠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였다.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1992년부터 중국은 연속 22년 외자

10) 2013년 중국개인재산보고서(中國私人財富報告) 중국초상은행(中國超商銀行)과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 공동조사

11) 중국 부동산기업 해외진출 열풍 2014.1.17.Sina.com

2014년 1월 7일 워디그룹(綠地集團)과 신화련그룹이 각각 해외 투자개발 부동산 항목을 발표했다. 최근 워디, 푸리, 판하이 그룹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잇달아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 1월 7일 워디 그룹은 영국 런던에서 2개의 주택항목을 협정 체결하여, 예상 총 투자액이 12억 GBP에 달했고, 그 중 카나리아 부두 금융구역에 고층 아파트는 영국의 가장 높은 고급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신화련 부동산 기업이 3억 RMB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주 매체니 B구역 9폭의 땅을 구매하여 남양리조트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흑석공동투자액 한화 350 억원(약 2억RMB)으로 금수산장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한국 제주도 용지면적 약 110㎡의 토지사용권을 획득하였다.

를 제일 많이 유치 받은 개도국에 속하며 근 20년 동안 중국에 들어온 외자는 총량의 7.6%로, 개도국에 유입된 자본의 21.5%를 차지한다.

<표 3-4> 중국의 국가별 대외직접투자액(2012)를 보면, 홍콩이 해외투자액 5,123,844만 달러로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404,785만 달러로 미국, 그 다음은 277,473만 달러인 영국이다. 이후로 버진아일랜드, 호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가 뒤를 잇고 있고, 8위가 한국이다.

<표 3-4> 중국의 국가별 대외직접투자액(2012)

(단위: 만 달러)

순위	국가	해외투자액	순위	국가	해외투자액
1	홍콩	5,123,844	14	베트남	39,943
2	미국	404,785	15	나이지리아	33,305
3	영국	277,473	16	알제리	24,588
4	버진아일랜드	223,928	17	일본	21,065
5	호주	217,298	18	프랑스	15,393
6	싱가포르	151,875	19	멕시코	10,042
7	인도네시아	136,129	20	뉴질랜드	9,406
8	한국	94,240	21	기니	6,444
9	케이만군도	82,743	22	마카오	1,660
10	독일	79,933	23	마다가스카르	,843
11	캐나다	79,516	24	수단	-169
12	러시아	78,462	25	남아공	-81,491
13	태국	47,860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엄격한 심사 기준 및 감독과 외환감독 등으로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이후 중국정부는 2001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 10차 5개년 계획(2001-2005)에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포함하면서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나섰다. 10.5계획에 담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는 보험, 외환, 재정과 세무, 인력, 법률 정보 서비스, 출입국 관리 등 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해외투자의 관리감독을 규범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해외투자는 과거 30여 년 간 중국경제가 수출중대, 외환보유고 확대, 환율 정책 및 그 심사기준 프로세스 완화, 그리고 대외투자전략의 시장지향성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중국의 해외투자는 독점 국유기업이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석유, 항공, 전력 등의 산업과 민영부문의 IT

및 가전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지역별로 볼 때 중국의 해외투자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및 호주 등의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촉진 정책동향을 보면 중국정부는 WTO 가입 전인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산업조정을 실시하고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 시작하였으며, 1999년부터는 아시아 금융위기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수출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하여 ‘기업의 해외 내료가공 업무의 장려에 대한 의견’(關於鼓勵企業環境外帶料加工裝配業務的意見簿, 1999. 2)을 공표하고 이에 관련된 조치를 실시해나갔다. 이는 중국기업의 ‘저우추취’(走出去)를 지원하는 초기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장려 정책은 <표 3-5>에서 보듯이 2002년 상무부에서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2002년 10월에는 저장, 장쑤, 상하이, 산둥, 광둥, 푸젠 등을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 시범지역을 지정하여 기업친화적으로 외환관리를 개편하였고, 2003년 중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를 장려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복잡했던 절차나 기업의 협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외경제 협력단지를 설치하며 장려하고 있다.

<표 3-5> 중국 정부의 기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

시기	조치	내용
2002~	해외직접투자 통계 집계 시작(상무부)	
2002.10	동부 6개 성/시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시범지역 지정(외환관리국)	-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된 외환관리를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개편 - 저장, 장쑤, 상하이, 산둥, 광둥, 푸젠
2003	해외진출 합작기업경영자격심의회에 관한 긴급통지(상무부)	- 중국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장려 - 노무합작관리 강화
2004.10	해외투자기업 프로젝트 심사에 관한 통지	-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심사기관 중복으로 복잡했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 - 해외직접투자 제한업종을 종래의 10개에서 5개로 축소 - 투자허가가 필요한 투자 대상국가나 지역의 숫자를 종래의 30개에서 9개로 축소
2006.2	국가개발은행과 중국수출신용보험공사(中國出口信用保險公司), 전면적 협력 협정체결	- 양대 대외투자 정책 금융기관이 체결한 최초 협의 - 양 기관이 자원 공유와 업무채널 확대 - 중장기 수출신용보험, 해외투자보험 등 업무영역의 협력 강화 계획(『中國企業報』 2006. 2. 13)
2006	해외경제협력단지(海外經濟協力區)설치 시작	- 해외경제협력단지 설치 허가, 장려
2009~	'서기동수(西氣東輸) ¹²⁾	- 카스피해유전 개발 및 파이프 라인 공사

자료: KITA,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2008. 2, p. 2.

2002년 중공 제 16대 및 2007년 중공 제 17대 회의를 통하여 '해외투자(走出去) 전략과 '투자유치'(引進來) 전략을 균형적으로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저우추취'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중국의 해외투자 촉진 정책은 아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4단계 과정을 거쳐 발전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12) 서기동수(西氣東輸): 서부지역의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동부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한 가스 수송관 건설사업

<표 3-6> 중국의 해외투자 촉진정책

구분		기간	주요내용
1 단계	농산물, 광물 위주 투자단계	1979~1988	-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은 해외직접투자의 초기단계를 겪음. - 1979년부터 1985년까지 중국기업은 1차 산업 위주의 소규모 형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해외투자도 농업 및 광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 투자의 70% 이상 차지 ※ 해외투자 중 '1차산업' 비중 : 79.3%(1984년)→ 26.8%(1988년)
2 단계	무역 및 공업 위주 투자단계	1989~1993	- 중국의 산업적 전환기를 거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분야도 '농산물, 광물, 위주'의 투자에서 수출입무역, 교통통신, 금융보험, 요식업, 여행업, 컨설팅, 의료 등 무역/서비스 투자 및 제조업, 자원개발 등의 해외투자도 진행됨. ※ 해외투자기업의 분야별 비중(1993년): 무역형(24%), 생산형(19%), 요식/여행업(18%), 건설(16%), 금융보험(12%), 자원개발(5%)
3 단계	해외투자 확대기반 마련 단계	1994~2000	- 199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인 국제화 정책에 따라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이 1997년 제 15차 중국인민대표회의 및 1998년 제 15차 중국인민대표회의 이중전회(二中全會)에서 초기적으로 표현됨. - 또한, 2000년 3월 제 9기 전인대에서 강택민 주석은 "중국이 국제경제경쟁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우추취(走出去)' 전략을 실행해야 하며, 인진라이(引進來) 전략과 긴밀히 연결하여 국내외 자원과 국내외 시장을 잘 이용할 것"을 언급 - 해외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배경으로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외투자 산업범위도 자원개발, 가공무역, 상업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
4 단계	해외투자 본격화 단계	2001~현재	- WTO 가입 이후, 중국의 '저우추취(走出去)' 정책의 본격적인 실시로 중국의 해외투자는 단기 조정 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도 US\$ 69억 달러에 불과하던 해외투자액이 527% 증가하여 2009년 US\$ 433억 달러에 달함. - 국내 산업구조의 현대화적 개편에 따라 해외투자 대상 산업도 다각화됨. - 광업 비중이 15% 이상으로 단일 산업분야로는 가장 비중이 높고, 상업 서비스, 금융, 도소매, 교통운수, 부동산 등 서비스업이 70% 이상 차지하며 서비스업 비중이 급증하는 추세

자료: KOTRA,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2010. 7. 12, pp. 32-33의 내용을 표로 작성.

중국은 자원개발, 기술습득, 브랜드 강화, 사업다각화 등을 위해 <표 3-7>과 같이 선진국가들에 투자하며,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 3-7> 투자목적별 중국의 해외투자 주요 사례

투자목적	투자가명	연수대상	프로젝트 내용
자원개발	중국석유화학(SINOPEC)	ADDAX (스위스)	- 투자규모 : 75억 달러(2009년) - Addax의 나이지리아, 가봉, 이라크 등 25개 원유 탐사개발구 25지구를 활용, 연간 1,000만톤 원유의 안정적 공급 가능해짐 - 중국의 자원분야 해외 M&A 중 역대 최대 규모
	중해유전복무(COSIL)	AWO (노르웨이)	- 투자규모 : 25억 달러(2008년) - M&A를 통해 유전탐사 기술력 제고, 기업순위가 세계 12위에서 8위로 상승 - 과거 접근이 어려웠던 북유럽 및 북해 등 새로운 시장 개척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 있음.
기술습득	베이징자동차(BAIC)	SAAB (스웨덴)	- 투자규모 : 2억 달러(2009년) - GM의 스웨덴 자회사 SAAB 특정자산 인수를 통한 기술 도입으로 기술개발 기간을 최소 5년 단축할 수 있게 됨
	지리그룹(GEELY)	VOLVO (스웨덴)	- 투자규모 : 18억 달러(2010년) - 중국의 해외 자동차 메이커 M&A 중 가장 큰 규모
브랜드 강화	안타스포츠(ANTA)	BELLE (이탈리아)	- 투자규모 : 7,800만 달러(2009년) - M&A를 통해 고급 스포츠웨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을 확보, FILA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 마카오 소재 10개 매장까지 소유, 마케팅 영역을 크게 확대
	하이얼(HAIER)	F&P (뉴질랜드)	- 투자규모 : 2,500만 달러(2009년) - 뉴질랜드 Fisher & Paykel 지분 20% 매입, 하이얼은 F&P 제품을 중국에 독점판매, F&P는 하이얼 제품을 뉴질랜드 및 호주에서 판매공급
사업다각화	주저오 난처스다이(CSR Times Electric)	DYNEX (영국)	- 투자규모 : 1억 위안(2008년) - 고속철 부품 및 솔루션 기업인 난처스다이는 M&A를 통해 반도체 R&D 및 생산 단가를 크게 줄임
	시페이 항공(XAC)	FACC (오스트리아)	- 투자규모: 1억 유로(2009년) - XAC는 홍콩 ATL과 함께 FACC 지분 91.2% 인수(중국 항공업계 사상 최초 해외 M&A) - M&A로 항공기 내·외장부품 생산영역 확대

자료: KOTRA,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중국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FDI

Theme Report 10-007, 2010. 7. 12, p. 2.

2. 중국의 對한국 해외투자 현황

1) 중국의 對한국 해외투자 주요 동기 및 기대효과

FDI 기업의 투자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FDI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산업연구원(2005)의 전국 FDI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FDI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한국 시장 진출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기업의 한국투자 동기는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한국 내 판매가 주요 목적이었고 한국 내 제품 생산이나 기술 습득 등의 요인은 그다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다.(최의현·장나, 2011) 이는 한국에 투자 진출한 중국기업들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기업들이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한국 시장에 판매하거나 중국으로 재수출하기보다는 중국본사를 대표하는 업무지원 성격이 크다.

중국기업의 대한국 해외투자 목적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내 완제품 생산에 따른 “Made in Korea”효과로 원활한 제3국 진출 가능, 둘째, 운송비(물류비) 절감, 한국에서 미국 내 주요 지역으로 논스톱항공 가능, 셋째, 선진 기술 습득, 넷째, 선진적 환경에서의 인력 훈련, 다섯째, 미래 성장시장 중 하나인 한국의 내수시장 진출, 여섯째, 한국을 주요 제품의 테스트 베드(test bed)로 활용 등이다.(한국무역협회, 2008)

2) 중국의 한국 투자 현황

중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 이후에 본격화되었으며, 누계기준으로는 1995년에 이르러서야 1천만 달러를 넘어섰다.(부산발전연구원, 2012)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 신고건수 및 신고금액은 <표 3-8>과 같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특히 1998년 IMF사태 이후 한국 해외투자 관련 개방정책과 맞물려 급격히 증가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기업들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중국 정부의 본격적인 저우추취 전략과 맞물리면서 중국의 對한국 투

자가 증가하였다. 2006년 이후 해외진출을 강조하는 중국정부의 해외진출 정책지향 속에서 중국의 한국으로의 직접투자 역시 2007년 이후 안정적인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8> 중국의 한국 직접투자액(1989~2013)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1989	1	2,800
1990	1	100
1991	3	690
1992	6	1,056
1993	29	6,864
1994	33	6,145
1995	51	10,892
1996	63	5,578
1997	76	6,518
1998	97	8,381
1999	323	26,585
2000	1,165	76,288
2001	810	69,739
2002	442	249,380
2003	522	50,206
2004	596	1,164,760
2005	672	68,414
2006	332	37,887
2007	363	384,131
2008	389	335,601
2009	537	159,607
2010	616	414,178
2011	405	650,853
2012	512	726,952
2013	402	481,186
합계	8,446	4,944,791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중국의 對韓 투자는 10년 간(2003~2013년) 연평균 22.6%씩 늘었으나, 중국의 총 해외투자 중 對韓 투자 비중은 동기간 5.4%에서 1.1%로 오히려 축소되었다. 중국대한투자는 2003-2013년 1.5억 달러에서 9.4억 달러로 총 6.3배 늘어난 반면 중국의 총 해외투자 대비 대한투자 비중은 5.4%로 하락하였다. 한국이 중국의 4대 수출국이자 2대 수입국, 중국이 한국의 최대 투자처이자 한국이 중국의 4대 외국

인투자자(65억 달러)임을 감안하면 초라한 성적이다.(전국경제인연합회, 2014)

중국 대기업이 2005-2013년 해외에서 1억 달러 이상의 한국에의 대형투자는 금액 기준 36위(0.6%)에 불과하여 중국의 對韓 대형투자가 저조하며, 투자부문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 중국자본의 對韓 대형투자 5건 중 3건이 부동산투자로 에너지, 기술이 각각 1건씩으로 부동산 외의 투자는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국 경제매체 차이징왕(財經網)에 따르면, 투자규모는 2014년 6억 3,100만 달러(약 7,100억 원)로, 1억 3,300만 달러를 기록했던 2013년 대비 37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투자규모가 급증한 이유는 한·중 FTA체결 이후 양국 투자교류가 활성화되면 한국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것에 미리 대비해 중국 기업 등이 선제적으로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라 분석했다. 중국 안방(安邦) 보험사가 동양생명의 지분 63%를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5년까지 투자액은 2014년과 비교해서 거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13년 이후 건수와 규모 모두 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중국 자본의 대한투자는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중국자본에게 있어, 매력적인 투자 대상국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유치 전망도 낙관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근거해서 중국기업 리스트를 분석했을 때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중국기업은 총 2,526개이다. 이는 전체 외국기업 16,423개 중 15.3%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홍콩기업이 619개, 싱가포르 기업이 598개, 대만기업이 168개 순이다.

중국 기업의 주요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가장 높은 1,211개이며, 경기 519개, 인천 299개, 제주 123개, 부산 58개 등의 순으로, 중국기업의 주요 지역별 분포는 서울이 가장 큰 47.9%를 차지하며 경기(20.5%)·인천(11.8%)·제주(4.8%)·부산(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까지 중국기업의 對 한국 투자총액은 15.4억 달러로 대부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집중되어 있다.(박용명, 2012) 투자 분야는 제조업부터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무역관련 유통·물류 및 부동산·요식업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투자금액이 크지 않다.

2000년 초반 중국업체에 의한 쌍용자동차, 하이닉스 TFT-LCD 사업부(하이디스) 등 국내제조업체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한시적으로 집중된 적이 있다.

<표 3-9>에서 한국으로의 중국 직접투자를 산업 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의 경우 2007년 이후 지속적인 투자 상승세에 있으며, 2008년 5만 달러에 불과했던 부동산 임대업 관련 중국 투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만, 2004년 쌍용차 투자를 제외하고는 2010년 반등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 있다.

<표 3-9> 중국의 對 한국 산업별 투자액 추이(2000~2013)

(단위: 천 달러)

연도	농·축·수산·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전기·가스· 수도·건설
2000	141	8,373	67,400	210	374
2001	440	14,239	54,177	96	1,283
2002	375	218,549	24,493	5,043	963
2003	2,989	6,227	40,706	398	282
2004	140	1,129,062	35,179	119	380
2005	300	28,293	39,572	190	250
2006	1,614	10,638	25,323	149	312
2007	164	33,426	350,314	45	227
2008	383	4,397	330,170	50	651
2009	745	17,164	139,979	404,544	1,719
2010	1,763	310,414	101,145	4,749	855
2011	54,193	132,619	463,062	289,069	980
2012	4,004	167,680	553,033	283,111	2,335
2013	577	45,211	432,902	214,792	2,49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3) 중국의 對한국 투자 시사점

지금까지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 사례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거나 경영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부정적 투자처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황후이·단잉화(2009)는 한국의 쌍용자동차에 투자한 상하이자동차 사례를 통해 해외투자 시 사전점검이 필요하고 대응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와 제조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 내부에서도 상하이자동차의 저비용 생산원가와

쌍용자동차의 브랜드 가치, 기술력이 결합하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의 기술력·생산관리 능력은 예상보다 높지 않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원활한 의사소통 인력도 부족했다. 게다가 판매량의 감소로 구조조정과 비효율적인 비용구조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했으나 강성노조로 인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와 기술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해외투자에 대한 목적도 잘못되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동차업체들은 혁신과 창조로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온 것이지 이를 다른 곳에서 어느 순간에 인수한 것은 아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합병보다는 독자적인 운영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와 기술을 공유하려고 하지 않는다.(황후이·단잉화, 2009) 한편, 한국 투자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인 시각은 <표 3-10>의 대외투자 지침서¹³⁾에도 잘 나타나 있다. 중국 상무부가 주한 중국대사관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표면적으로 외국인 투자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은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外國人投資促進法)”을 반포하고, 2010년 개정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투자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세금과 토지가격 우대는 첨단산업에 한정되어 있고, 수출가공지역·경제자유구역에 제한되어 있다.

13) 중국 상무부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과 투자촉진사무국 및 각 주재국 대사관 공동으로 “국가별 대외투자합작 지침서 對外投資合作國別(地別)指南.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지침서에는 각 국가별로 정치·사회·문화를 비롯하여 투자환경, 정책지원, 시장분석 등이 담겨져 있음

<표 3-10> 중국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시 주의사항

투자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1998년 이후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공포, 2010년 개정하였음 - 투자지역이 보세구, 경제자유구 등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음 - 단독 투자일 경우 투자 금액이 최소 3천만 달러 이상, 고용인원 최소 300명 이상 유지 조건 -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어 있음
무역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상호 보완적 기능 역할 - 한국 정부는 자국 내 시장보호를 위해 무역장벽 설치
공사도급방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시장이 개방되어 있으나 자격 심사가 까다롭고, 한중간 정부 구매협회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국가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한국의 은행은 외국 건설사에 대출을 진행하지 않아 용자에 어려움 있음
노무협력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간 <한중고용허가제 양해각서>에 따라 중국 노동자는 한국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제조업, 어업, 농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음
기타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노동조합 시스템과 역할에 대한 이해 필요 - 한국인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투자분야를 한국인이 할 수 없는 분야로 하는 것이 유리

자료: 2012對外投資合作國別(地別)指南(한국편), 상무부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 pp.67~70

이러한 중국의 對한국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점차 對 韓國 투자는 증가하고 부정적 인식도 줄어들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평가에서 한국은 전년보다 3계단 상승하여 중국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 6위가 되었다.¹⁴⁾ 또한 2015년 중국의 對 한국 투자가 19억 7,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0.6%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부동산·임대 분야의 투자 비중은 과거 2011년 62.4%에서 2014년 79.8%로 17.4%포인트 높아졌다.¹⁵⁾

14) “한국, 중국 기업 투자하기 좋은 나라 6위” (한국경제신문. 2016.01.02.)

15) “‘차이나머니’가 물려온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 200억달러 돌파” (아주경제. 2015.12.23.)

제 2절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1.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정책

1)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의 개념과 유형

세계은행은 ‘지리적으로 구분된 구역 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관세 등 조세를 면제하거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된 지역’을 ‘경제특구’로 규정하고 있다.(FIAS, 2008:9)

이상준은 경제특구는 국가가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외국기업에게 개방하고 각종 우대조치와 혜택을 제공하여 그들의 자본과 선진적인 기술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특수한 경제구역이라고 한다.(이상준 외, 2005:122~123)

경제특구란 일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정한 경제활동 등의 부문에서 규제완화와 조세감면 등 예외적이고 특별한 대우와 혜택을 허용해 주는 지역으로, 보편적으로 물리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타의 지역과는 구분되며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특정지역이다.

권오혁(2006)은 경제특구의 개념을 ‘협회의 경제특구’와 ‘광의의 경제특구’로 구분하여, ‘협회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촉진지역’의 개념으로, ‘광의의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촉진지역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지대와 투자진흥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국내의 경제특구는 외국과의 교역 촉진 및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하여 각종 특혜가 제공되는 지역으로 외국인투자지역(Foreign Investment Zone),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투자진흥지역(Investment Promotion Zone)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표 3-11>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유형 및 근거

구분	근거 법률	제정시기
투자진흥지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¹⁶⁾	2006.2 (2002.4)
자유무역지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¹⁷⁾	2004.3 (1970.1)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2.12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촉진법	1998.9

자료: 김동욱(2009),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리

2) 경제특구의 종류

(1) 자유무역지역

① 개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의 면세뿐만 아니라 복잡한 통관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지역 내에서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이 허용되기 때문에 급변하는 시장경기에 적응하여 상품공급에 탄력성을 갖고, 중계무역 및 재수출을 촉진하는 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자유무역지역 내에서는 해당국가의 각종 규제가 완화되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그리고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즉 자유무역지역은 한 국가 내에서 교역, 생산,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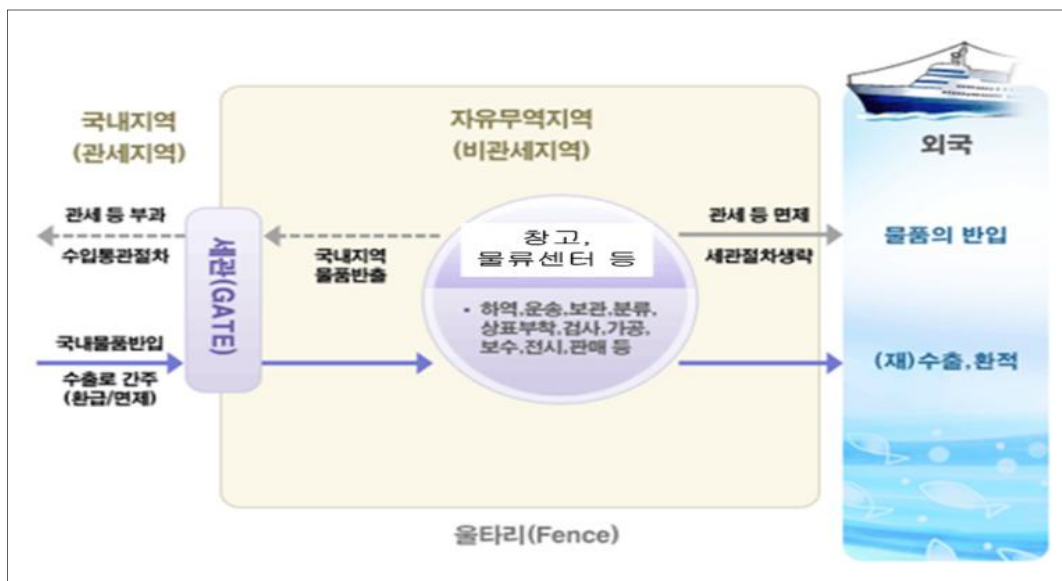
16)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2002.4)은 2006년 2월에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으로 개정됨

17) '수출자유지역설치법'(1970.1)이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2000.1)로 개정되었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4.3)'로 개정됨

관세, 수량 제한, 각종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지리적 특정지역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 또는 관세법 등의 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해 투자기업의 무역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원종학 외, 2008:7~9)한다.

규모면에서는 개별공장이나 면세점 같은 소규모에서 산업단지, 항만 또는 공항 및 배후지, 도시 전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산업연구원, 2007:3)

<그림 3-2> 자유무역지역 개념도



자료: 여수지방해양항만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② 지정요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른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자유

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필요성 및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요건은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배후지로서 화물처리능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리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으며, 물품의 반입·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허용활동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크게 제조업, 도매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사업, 물류업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물품의 하역·운송·보관·전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과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 등이다. 그러나 제조업과 도매업의 경우에는 입주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업이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 입주가 가능하며, 관리권자가 국제물류의 원활화와 지역개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이전한 경우에는 국내기업도 입주가 가능하다. 자유무역지역에서는 관세자유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물류활동에 필요한 보관, 분류, 혼합, 라벨링, 분배, 점검, 세정, 해체·절단, 전시, 판매(도매), 재포장, 파기, 수리 및 이와 유사한 행위와 제조, 가공, 조립 등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의 통합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고, 2004년 6월 23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어 현재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자유

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은 입지적 특성과 운영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 이를 생산중심형 및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자유무역지역을 의미하며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으로서 항만, 공항 및 그 배후지를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한 이후, 2000년 1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으며, 제조업 생산에 국한된 수출자유지역에 대해 생산, 교역, 물류, 유통, 서비스 등이 복합된 자유무역지역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수출중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의 조세감면, 저렴한 공장용지 임대, 전력·용수 등 인프라 시설의 구비, 관리기관에 의한 수출입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각종 인허가 처리 등이 제공된다. 수출촉진을 위한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집중 유치하기 때문에 대부분 화물수송이 용이한 주요 항구의 인근지역에 산업단지 형태로 지정되어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운영된다.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기존 관세자유지역)은 1999년 12월 28일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출범하였다.

2002년 1월 1일 부산항과 광양항의 일부지역이 국내 최초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다. 2003년 인천항 일부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관세자유지역은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되었다.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은 항만, 공항 및 그 주변지역을 하역, 운송, 전시, 판매, 가공, 조립 등 종합적 물류공간으로 조성하고, 국제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 등 세금을 면제(감면)한다.

또한, 통관 검사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지역으로 물품의 반출입 등에 대하여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산업연구원, 2007:17~18) 이를 정리하면 <표 3-12>와 같다.

<표 3-12>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비교

구분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법적근거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지정목적	국제물류 유치	외자유치, 수출촉진, 지역개발
대상지역	- 공항·항만 및 배후지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 산업단지 - 공항·항만 주변지역
지정요건	① 일정면적 이상 * 항만(100만㎡), 공항(50만㎡) ② 일정규모 이상 화물처리능력 * 항만(연 1천만톤), 공항(연 50만톤) ③ 연계교통시설 및 통제시설 구비	- 부지·도로 등 충분한 SOC시설 확보 - 관세자유지역과 중복 방지
지원업종	물류업	제조업, 물류업, 수출입목적 도매업
자격제한	제한없음	외국인투자에 한정
관세면제물품	- 해외로부터 반입: 무관세 - 식음료품·담배·유류·주류 등 소비재와 후생복지용품, 사무용 컴퓨터를 제외한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 등을 제외한 모든 물품(Negative방식으로 규정)	- 해외로부터 반입: 관세 유보 - 기계·기구·설비 및 장비와 부품, 원재료·운할유·사무용 컴퓨터 및 건축자재 등(positive방식으로 규정)

자료 :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보도자료(2003.11),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 통합(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⑤ 자유무역지역의 혜택

i) 법인세 등 조세감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에서의 법인세 등 조세감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에 외국인 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ii) 관세 등의 부과 및 감면

입주기업에게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외국물품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으며, 반입 신고한 기계·기구·설비 등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하고, 부가가치세

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 또는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면제범위를 규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유무역지역은 Positive방식을, 관세자유지역은 Negativ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¹⁸⁾

iii) 국공유지 또는 공장 등의 임대 또는 매각

입주기업은 국유 및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임대기간은 50년의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50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이 가능하다.

iv) 임대료 감면

관리권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외국인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고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한 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면 외에 추가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v) 물품의 반입·반출 및 관리

통상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과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물품은 관세법상의 수출입 절차가 적용되고 관세가 부과된다. 자유무역지역 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자유무역지역에 의한 반출입절차가 적용된다.

※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vi) 역외가공신고

일반적으로 입주기업체가 가공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외국물품 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공·보수작업의 범위, 반출기간, 대상물품, 반출장소 등을 정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지만, 역외가공은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생산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여러 단계의 생산 공정 중 일부 공정을 자

18) Positive 방식은 정부가 허용품목과 금지품목을 모두 지정해 놓고 지정된 목록(list)에 따라 면제하는 방식이며, Negative 방식은 금지 또는 규제해야 할 사항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즉 제한적으로 설정한 금지 또는 규제대상을 적시한 목록(list)에 있지 않은 품목은 면제하는 방식이다.

유무역지역 밖의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3-13>와 같다.

<표 3-13> 자유무역지역의 근거 및 혜택

법적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입주자격		내·외국인
지원 요건	개발사업자	해당 없음
	제조업	1천만불 이상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조세 지원 수준	관세	자본재 100% 면제
	소득세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취득세 재산세	3년 100%, 2년 50% 15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간 및 비율 상향조정 가능
토지	입지	- 국가·지자체 일괄 매입 임대 - 50년 임대(갱신가능)
	임대자금	- 산업단지형은 감면: 75%(일반제조업) ~ 100%(고도기술) - 공항·항만·물류형은 100% 감면
현금지원		- 지원대상: 신증설 공장시설(1천만 달러이상 투자), 연구시설 (5백만 달러 이상 투자, 연구원 20인 이상 고용) - 지원절차: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은 외국인투자자와 재정기획부장 관과 협의 후 결정

자료: 김군수 외(2011), 경기도 온라인 투자유치활동 개선방안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내용 재정리

(2) 경제자유구역

① 개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와 제2조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특구를 의미한다.

다양한 세제 혜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 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교육기관 및 병원의 설립과 운영,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방송 등의 허용,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10: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시행령 제4조는 지정요건을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외국인 정주(定住)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用水), 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민간자본 유치방안 등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교통·통신 기반시설 및 생활여건 등에서 산업유치계획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할 것,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전담기구를 갖추고 있을 것,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부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산중심형, 물류

와 무역 중심의 국제교역중심형,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의 지식창조형, 그리고 교역과 생산, 서비스 분야 모두를 다루는 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경제자유구역 백서, 2008)

<표 3-14>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구분	내용	사례
생산중심형	저렴한 생산비용, 세제혜택 등을 이점으로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치하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역 • 멕시코의 마길라도라 • 아일랜드의 경제특구
국제교역 중심형	지리적인 이점과 물류 인프라 등의 강점을 이용한 물류거점 또는 무역거점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자유무역지역 • 홍콩의 경제특구 • 네덜란드의 경제특구
지식창조형	생산과 교역기능의 제공 이외에 서비스기능과 연구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술개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의 경제 특구 •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인천)
복합형	교역, 생산, 금융 등이 결합된 형태로 제조업 등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비즈니스 중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콩, 싱가포르, 중국 푸둥신구, 두바이

자료: 경제자유구역 백서, 2008

② 경제자유구역 추진 및 지정 현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2003년 8월에 인천(송도, 영종, 청라)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10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여수, 순천, 광양, 하동), 2008년 5월에는 대구·경북, 황해(평택, 당진),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었으며, 2013년 2월에 동해안권과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우리나라에는 2014년 5월 현재 총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다¹⁹⁾

19)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6일 지정되었으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중 고군산군도(古群山群島) 지역은 2014년 8월 5일 지정 해제되었음

<표 3-15>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명칭	지정일	위치	개발완료시기	면적	중점유치업종
인천	'03. 8	인천	'03년~'22년	132.9km ²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부산 진해	'03. 10	부산, 경남	'03년~'20년	83.1km ²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휴양 등
광양만권	'03. 10	전남, 경남	'04년~'20년	77.68km ²	항만물류, 철강연관산업, 석유화학소재 등
황해	'08. 5	경기	'08년~'20년	4.39km ²	IT관련부품소재, 자동차부품, 철강
대구·경북	'08. 5	대구, 경북	'08년~'22년	19.72km ²	IT융복합, 첨단수송부품, 첨단메디컬
새만금·군산	'08. 5	군산, 부안	'08년~'20년	18.70km ²	자동차기계부품, 관광,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
동해안	'13. 2	강원 동해안	'13년~'24년	8.95km ²	금속, 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충북	'13. 2	충북	'13년~'20년	9.08km ²	바이오, NEW IT, 수송부품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http://www.fez.go.kr>)

③ 혜택

i) 투자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및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각종 지원혜택이 이루어지며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의 교육기관 및 병원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며, 외국어서비스, 외국화폐·방송 등이 허용된다.

ii) 조세감면

외국인투자지역 제도와 동일하게 투자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7년까지 조세를 감면한다.

구체적 조세 감면 내용은 제조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5백만불 이상), 관광업(1천만불 이상), R&D(1백만불 이상), 의료기관(5백만불 이상), 개발사업자(3천만불 이상)인 경우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하고, 제조업(3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R&D(2백만불 이상)인 경우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감면한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는 관세를 최대 5년 100%,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조례로 최장 15년간 감면이 가능하다.

iii) 경영환경 및 정주환경

외국인투자기업에 노동, 경영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 배제, 장애인 및 유공자 의무고용 배제, 파견근로자 기간 및 대상 업무규제 배제, 무급휴가 허용하며, 외국인 친화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특례 부여로 외국교육(초·중·고, 대학) 및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용, 입주 외국교육·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건축비 및 초기운영비 지원 등이 있으며,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 분양, 임대주택 공급 및 무신고 외환거래(1만불), 카지노 설립허용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개발사업의 경우 국내·외 개발사업자에게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기반시설(진입도로, 간선도로, 공동구)등의 사업비 지원(국비와 지방비 각 50%)과 견폐율·용적률 완화(최대 150%) 적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7개 부담금 감면한다.

iv) 국내기업지원 혜택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 3-16>과 같다.

<표 3-16>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현황

구분	지원내용				
	감면조건		구분		내용
세금 감면	입주 기업	- 1천만 달러 이상	국세	관세 등	5년간 100%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개발 사업 시행자	- 3천만 달러 이상 - 외투비율 50% 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달러 이상	국세	취득세/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관세 등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시행자에 농지조성비 등 부담금 감면 -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100%까지 가능) -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국고지원 - 국·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매각 - 의료·교육·연구시설·주택 등 외국인투자 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경영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 배제 - 외국인투자기업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 외국인투자기업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기간 확대 - 입주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 배제 				
생활 환경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초·중·고·대학) - 외국병원 설립 허용(내국인 진료 가능) - 개발사업 총주택공급 세대수의 최대 10% 규모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카지노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관광분야 투자) 투자금액 5억 달러 이상의 경우 카지노업 허가 승인 				
인·허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계획 승인으로 38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처리 - 개발사업의 시행 시 토지수용 권한 부여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0),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리

<표 3-17> 기타 법령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인센티브 현황

감면내용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공유재산관리조례 	
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에 대해 50년간 이내 임대 가능 - 임대료는 토지가액에 10/1000 이상 요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 적용(관리청 결정) 	
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금액 2천만불 이상 - 1일평균 고용인원 300명 이상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100%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100% 수출사업 	전액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2천만불 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 200명 이상 ~ 3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75% 이상 ~ 100%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75% 이상 ~ 100%미만 수출사업 	75%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비율 5백만불 이상 ~ 1천만불 미만 - 1일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 ~ 200명 미만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수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50% 이상 ~ 75% 미만 조달사업 - 전체생산량의 50% 이상 ~ 75% 미만 수출사업 	50% 감면
매각	(국·공유재산) 조성원가의 매각, 수의계약으로 가능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1년 범위에서 연기/20년 범위에서 분할납부 · 공유재산: 20년 범위에서 3% 이자로 분할납부 - 산업입지보조금: 임대료 분양가 차액에 대한 지원 (정상가액의 50%내) * 현금지급과 중복불가 - 현금지급: 기업당 50억원 한도내 투자금액 5% 지원 (1천만달러 이상) - 고용보조금: 신규채용 20인 초과 1인당 월 50만원 (6월내 / 5억한도) - 교육훈련보조금: 신규채용 1인당 월 10 ~ 50만원 (6월내 / 5억한도) 	

자료: 한국개발연구원(2010),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리

④ 투자 기간 및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

경제자유구역은 업종별 투자기간과 규모에 따라 ‘5년형 인센티브’와 ‘7년형 인센티브’로 구분할 수 있다.

5년형 투자금액은 주로 1천만불 이상이며, 7년형은 주로 2천만불 또는 3천만불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총 5년형 인센티브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3년간 100% 면제와 2년간 50% 감면이 되지만, 총 7년형 인센티브는 5년간 100% 면제와 2년간 50% 감면된다.

<표 3-18> 업종별 투자기간과 규모에 따른 분류

분류	5년형 인센티브	7년형 인센티브
법적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입주자격	국내기업 또는 100%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또는 합작기업으로 외국인 지분이 10%이상	
지원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 감면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휴양업: 1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1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 R&D: 1백만불 이상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 개발사업시행자: 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 투자 비율 50%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휴양업: 2천만불 이상 - 국제회의시설: 2천만불 이상 - 청소년수련시설: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SOC: 1천만불 이상 - 공동사업: 3천만불 이상 - R&D: 2백만불 이상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인 이상 고용할 것)
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5년간 면제(수입자본제)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면제 - 다음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특소세, 부가세 5년간 면제 - 법인세, 소득세 5년간 100% 면제 - 다음 2년간 50% 감면
지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재산세 15년간 100% 면제 ※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간 및 범위 확대가능	

자료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http://www.feز.go.kr/kr>)

(3) 외국인투자지역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특화된 지역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이란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행정규제의 적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하여 유치 협상을 통해 지정하는 사후적 개념의 지역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형과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은 시·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989년 이후 국내 투자환경의 악화로 외국인투자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첨단 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1994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도입되어, 국가 또는 일반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정구획을 미리 임대 또는 분양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인데, 현실적으로 임대목적 부지로 운용된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은 시·도지사가 외국투자자의 투자 희망 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 희망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목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1998년에 도입되었다. 대형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가의 기호에 맞추어 투자자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장 단위로 지정한다.

연구개발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은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식산업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4호)은 금융, 지식, 산업지원, 문화산업, 관광사업(카지노 제외)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표 3-19> 단지형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구분	단지형	개별형
개요	중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사전에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입주	대규모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에 따라 지정
위치	산업단지	제한없음(희망지역)
지정 (입주) 요건	외국인투자 지분 30% 이상 등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 (제조업 3천만불, 관광업 2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등)
입지 지원	부지매입 후 입주기업 임대 - 국비 수도권 40%, 기타 75%	부지매입비 지원(요청시) - 국비 수도권 40%, 기타 75%
조세 감면	1. 감면요건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2. 감면기간 - 국세 5년(3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1. 별도 감면요건 없음 - 제조업 3천만불,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위의 지정요건과 동일 2. 감면기간 - 국세 7년(5년 100%, 2년 50%) - 지방세 15년 이내
임대료 감면	75 ~ 100% 감면 ※ 필요시 중앙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100% 감면

자료: Kotra(2013), 외국인투자가이드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기준

i)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상태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명시적 입

주수요(MOU 이상)가 제시된 상태에서 신규로 지정한다.

기존에 있던 외국인투자지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정 면적의 3/4 이상이 입주계약 체결되었거나, 확장대상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시적 입주수요(MOU)가 제시된 상태에서 지정한다.

<표 3-20>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투자규모별 투자업종

투자규모	투자업종	투자행위
3천만불 이상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공장 신규설치
2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산업지원서비스업(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제외)	시설 신규설치
1천만불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운영, 항만시설운영사업, 배후단지내 물류산업, 공항시설운영사업, 공항구역내 물류산업,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한 사회간접시설 조성사업(귀속사업에 한함)	시설 신규설치
2백만불 이상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석사이상의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10인 이상 상시고용	시설 신규·증 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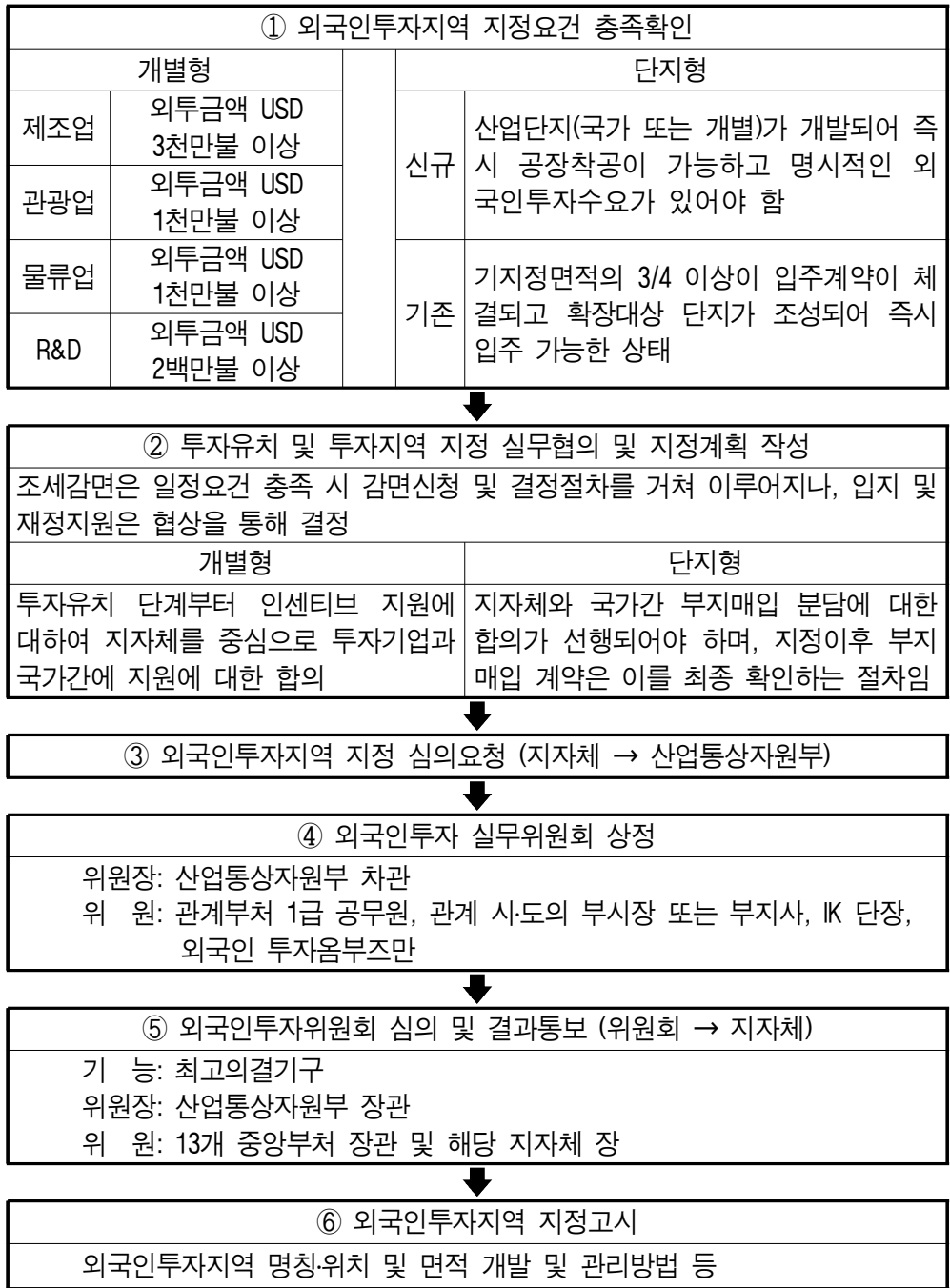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지원 매뉴얼

<표 3-21>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종별 지정기준

업종기준	지정기준
제조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 산업지원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지역 신규 개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5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으로 신규상시고용규모가 1,000명 이상인 경우 ○ 기 개발된 산업단지내 지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p>※ 다만 외국인투자지역 신청시, 투자금액은 5년 이내 납입을 완료하여야 함</p>
관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금액이 3천만불 이상 경우인 2003.12.31 까지 신고한 외국인 투자로서 미화 2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 (다만, 2005.12.31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12.31 까지 신규로 신고한 외국인투자로서 제주도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 투자하는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다만, 2005.12.31까지 출자목적물의 납입이 완료되는 것까지 인정)
물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단지운영 및 항만시설운영사업

자료: 인베스트코리아 홈페이지(<http://www.investkorea.org>)

③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절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지원 매뉴얼

④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

i) 조세감면

국세 및 지방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을 적용하는데, 국세(법인세·소득세)는 5년간 100%, 그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등)는 8~15년간 감면하며, 관세는 초기 3년 이내 도입 자본재에 대해서 면제한다.

<표 3-22>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조세감면대상	조세감면방법		
	대상과목	감면기간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년 감면 - 5년간 100% -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형 외투자지역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R&D: 2백만불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 경제자유구역 - 자유무역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 재산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년 감면 - 3년간 100% -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R&D: 1백만불 이상

자료: Kotra(2013), 외국인투자가이드

ii) 입지지원

입지지원은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공장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표 3-23>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임대용지 지원 - 용지매입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매입을 통한 임대용지 제공 ○ 매입비 분담 - 수도권: 국가 40%, 지자체 60% - 비수도권: 국가 75%, 지자체 25%		
임대료 감면 - 국유재산	감면대상	감면내용	
	개별형 외투자지역	100%	
	고도기술수반사업 & 1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	100%
		산업단지	50%
	일반제조업 & 5백만불 이상	단지형 외투자지역	75%
산업단지		50%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은 조례로 정함 ※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 갱신가능			
분양가 차액 보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간이 소유한 토지 등의 조성원가 이하 분양 시 차액 보조(지자체마다 조례에 따라 차등)		

자료: Kotra(2013), 외국인투자가이드

iii) 재정지원

외국투자자에게 투자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정지원한다.

<표 3-24> 외국인투자지역의 재정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현금지원	1천만불 이상 고도기술 등 투자자에게 투자비의 일부를 공장건축, 시설구입 등에 활용하도록 현금으로 지원
교육훈련 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급하는 금액만큼 지원
고용보조금	20명 이상 신규고용 시 초과 1인당 월 10만원~50만원까지 6월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만큼 지원

자료: Kotra(2013), 외국인투자가이드 재작성

iv) 기타 인센티브

국가유공자 등 의무고용 면제 및 외국인투자지역내 시설물 등의 건축에 관한 교통유발금 면제 등이 있다.

(4)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① 개요

제주투자진흥지구는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217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투자 자본에 대해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내국인에게도 국세와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임대 및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제도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측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특구 등과 비교해 볼 때, 지리적 여건과 산업구조 등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구현에 필요한 핵심 산업 육성 및 신규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로는 홍콩, 상해, 싱가포르 등과 국내에서는 인천(송도, 영종, 청라), 부산·진해, 광양만권(여수·순천·광양·하동), 황해(평택·당진), 대구·경북, 동해안, 충북권 7곳의 경제자유구역과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미화 5백만불 이상을 투자하는 국외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까지도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각종 부담금 감면 및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의 특례가 제공된다.

② 연혁

2002년 1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신설로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사업비 및 대상 업종에 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27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9개 업종 미화 2천만불(또는 1천만불) 이상 투자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천만불 이상 투자사업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국제회의시설업 등 4개 업종이, 1천만불 이상 투자사업: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등 5개 업종이 있다.

2004년 7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제27조를 개정하여 사업비는 1천

만불 이상으로 통일하였고, 대상업종도 5개 업종(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대체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9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되었다.

2006년 6월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를 개정하여 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 통일되었고, 대상 업종도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등 6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20종으로 확대되었다.

2007년 8월 「제주특별법」 제217조를 개정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심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국무총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제주도지사)로 변경하였다.

2007년 11월 대상 업종에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이 추가되어 총 21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 7월에는 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식·음료제조업 3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24개 업종으로 확대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표 3-25>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의 연혁

시행일	사업비 및 대상 업종
'02. 4. 1	○ 사업비: 2천만불 이상 ○ 대상업종: 9종(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등)
'04. 7. 30	○ 사업비 변경: 2천만불 이상 ⇒ 1천만불 이상 ○ 업종 추가: 5종(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
'06. 7. 1	○ 사업비 변경: 1천만불 이상 ⇒ 5백만불 이상 ○ 업종 추가: 6종(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의료기관 등) 총20종
'07. 8. 3	○ 투자진흥지구 심의 권한 이양 (국무총리,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 제주도지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07. 11. 2	○ 업종 추가: 1종(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총 21종
'09. 7. 1	○ 업종 추가: 3종(관광식당업, 국제학교, 식료품·음료제조업) 총24종

③ 지정 대상 및 절차

i) 대상지역 및 사업비

첫째, 개별지정형의 경우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이다.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개별법령에 의해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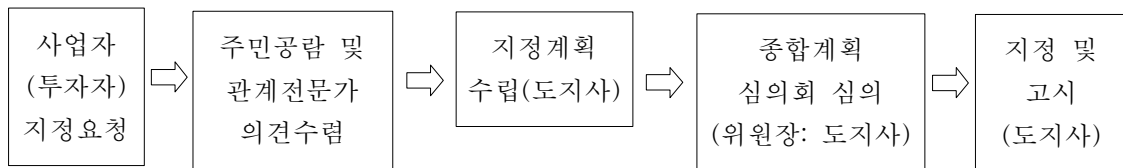
둘째,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는 지역으로,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이 해당지역의 토지 3분의 2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대상 사업비는 내국인 및 외국인의 총 투자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 규모여야 하며, 총 투자사업비의 범위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ii) 지정절차

지정절차



지정계획수립시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투자자의 상호, 명칭, 국적,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투자내역, 고용규모 및 계획,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의 기대효과, 재원조달 계획,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iii) 지정대상 업종

<표 3-28>에서 보는 것처럼 지정대상 업종에는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골프장업 제외)·전문휴양업(골프장업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및 관광식당업 등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영화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산업, 방송영상물산업, 문화재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 등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등 문화산업 [문화

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이용시설(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 , <표 3-27>에서 보는 것처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제1~2호] 20)이 있다.

위에서 말하는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다.

20)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의 사업만을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3-26>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 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펄프,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에너지로 본다.

자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제2조 관련)

또한,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등 교육기관 [제주특별법 제182조, 제186조, 제187조, 제189조의 4],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을 제외한 외국인의 도내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내국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 [제주특별법 제192조, 의료법 제33조], 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하는 교육원 등 교육원(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나목], 「산업발전법」 제5조 및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확인을 받은 첨단기술·제품(전자·전기·정보·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 등을 포함하는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등 보건의료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다만, 「제주특별법」 제311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클러스터 내 설치 시설에 한함) 등 제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을 포함한다.

<표 3-27>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 대상업종

업종	관련 근거	내용
관광사업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 휴양업(골프장업은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문화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영화산업, 음반·비디오물·게임물산업,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산업, 방송영상물산업, 문화재산업,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 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 광고, 공연, 미술품,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사업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궤도사업	궤도운송법 제2조	궤도사업: 지상에 부설한 궤도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태양에너지,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 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학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해양 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 에너지 등
교육기관	제주특별법 제182조	외국교육기관
	제주특별법 제186조	자율학교
	제주특별법 제187조	국제고등학교
	제주특별법 제189조의 4	국제학교
의료기관	제주특별법 제192조 및 의료법 제 33조	내, 외국인의 도내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제외

교육원 (연수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원 (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첨단기술 활용산업	산업발전법 제5조	산업자원부장관이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기여 및 신규수요, 부가가치 창출 및 산업간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함 ※전자, 전기, 정보, 신물질 및 생명공학분야에 한함
보건 의료사업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조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 분석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물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먹는샘물, 기능성 음료, 청량음료, 주류 등의 제조 및 워터테마파크 조성 등 수자원 부존여건에 적합한 물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산업 클러스터내에 설치되는 시설

자료: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재인용

iv) 인센티브

인센티브로는 <표 3-29>에서 보는 것처럼,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는 입주기업에게는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하고, 개발사업 시행자에게는 3년간 50%면제, 2년간 25% 감면하며, 국세인 관세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한다.

지방세는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취득세), 과세기준일부 30일 이내(재산세)에 감면신청을 하면, 취득세는 면제하여 주고, 재산세는 10년간 면제하여 준다.

「제주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50년 범위 내에서 국·공유재산의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임대료는 75%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등 각종 부담금은 면제해 주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50% 감면한다.

<표 3-28>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인센티브

조세 감면	국세	관세: 초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에 대하여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각종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50% 감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하수도원 인자부담금		
국·공유재산 임대	근거법령: 제주특별법 제220조	
	임대기간: 50년 범위 내 임대(갱신가능) 및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하여 75%범위 내 감면	

자료: 제주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조례

3) 투자유인 제도간의 비교

(1) 유사제도간의 비교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목적이며, 비관세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은 규모가 크고 주거, 의료, 교육, 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수행하는데 반해 자유무역지역은 기업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설치 목적을 보면 자유무역지역은 무관세 등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의 보장을 통하여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각종 규제 완화, 외국인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기반으로 경제자유구역의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입주자격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지원 서비스업이며,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만 허용하며,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기업 모두에게 허용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지역과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로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특화된 지역으로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제조업 생산에 국한된 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하여 오다 물류 중심형 관세자유지역을 추가 도입하였으며, 2004년부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일원화되었다.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공장부지 임대제 공 등에 있어서 동일하나, 후자는 무역진흥 목적으로 도입되어 비관세지역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일정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로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2000년 이전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저렴한 노동력, 값싼 지가 등의 유인요소로 유치하였다면,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전략과는 달리 각종 규제완화를 통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자체 행정권한을 관리청에 위임하여 자체적인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학교 및 병원설치의 특례를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정주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외국인투자지역과 구분된다.

(2)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유사제도의 비교

설치목적 측면에서 공통점은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자유무역지역은 무관세 등 자유로운 제조 및 무역활동의 보장을 통하여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 거점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 대해 국가가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술이전, 고용증대 등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정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새로운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내에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

국민에게도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유일한 제도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리적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등은 지리적으로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과의 접근성 측면에서 뛰어난 반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는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낮아 투자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입주자격(대상업종) 측면에서 자유무역지역은 제조·물류·지원 서비스업이 허용되며, 제조업의 경우는 외국인투자기업만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은 국내·외 기업 모두에게 허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에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의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까지도 투자가 가능하며, 호텔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골프장 제외), 관광식당업 등 관광사업,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청소년이용·수련시설 운영사업, 대체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첨단산업, 식료품제조업·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 등 총 24개의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기업에 대한 산업별 감면요건을 타 경제특구 제도와 비교하면, 관광산업의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대상 사업비는 2천만 불로 경제자유구역 1천만 불, 외국인투자지역 2천만 불과 같거나 비교 열위를 보이고 있다.

물류업의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경제자유구역(5년형)이 5백만 불로 외국인투자지역의 1천만 불에 비하여 비교 우위로 보이고 있다.

의료산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제주투자진흥지구와 경제자유구역(5년형)이 5백만 불로 동일하다.

연구시설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이 1백만 불로 경제자유구역(5년형)이 제주투자진흥지구 5백만 불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의 5백만 불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3-29> 유사제도 간 감면요건 비교

구분		감면요건(대상업종)	
제주투자진흥지구		- 관광산업: 2천만불 이상 - 문화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등 24개 업종 -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경제자유구역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연구시설: 1백만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외국인 투자 지역	단지형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연구시설: 5백만불 이상	
	개별형	- 물류업: 1천만불 이상 - 제조업: 3천만불 이상 - 관광업: 2천만불 이상 - 연구시설: 2백만불 이상	
자유무역지역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z.go.kr) 재인용

<표 3-30>에서 보는 것처럼,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이 5년간 100% 면제, 그 이후 2년간 50%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관세(자본재)에 있어서도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혜택은 경제자유구역이 재산세가 15년 100% 면제, 그 이후 3년간 50%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세계 감면혜택 측면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혜택이 같기 때문에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유사 경제특구들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공유지의 사용 혜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세계 감면혜택 측면에서 유사 경제특구들에 비하여 비교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

<표 3-30> 유사제도간 세제혜택 비교

구분	국세		지방세	국공유지	
	소득세 법인세	관세 (자본재)	취득세 재산세		
제주투자진흥지구	3년 100% 2년 50%	관세 3년 면제	- 취득세: 면제 - 재산세: 10년 면제	50년 (갱신가능)	
경제자유구역	3년 100% 2년 50%	관세 3년 면제	- 재산세: 15년 100% 면제, 이후 3년 50%	50년 (유상공급)	
외국인 투자 지역	단지형	3년 100% 2년 50%	관세 5년 면제	- 재산세: 10년 100% 면제, 이후 3년 50%	50년 (갱신가능)
	개별형	5년 100% 2년 50%	관세 5년 면제	- 재산세: 10년 100% 면제, 이후 3년 50%	50년 (갱신가능)
자유무역지역	3년 100% 2년 50%	관세 면제 부가세영세율	- 3년 100%, 2년 50%	50년 (갱신가능)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z.go.kr) 재인용

주)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개발부담금과 공유수면 점·사용료 면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를 감면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은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 투자유치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그 접근성이 낮아 투자환경이 유사 경제특구 중에서 열악한 편임. 또한 유치가능 업종 측면에서도 관광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위의 <표 3-31>에서 보듯이 유사 제도를 비교하면, 제주투자진흥지구는 국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제도 측면에서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표 3-31> 투자지원 세제에 관한 내용

구분		입주기업 혜택	개발사업시행자 혜택
경제자유구역	세금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 관세 3년간 100% 면제 (수입자본제) - 재산세 등: 15년간 100% 면제, 이후 3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면제, 2년간 50% - 관세 3년간 100% 면제(수입자본제) - 재산세 등: 10년 100% 면제, 이후 3년 50%²¹⁾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관광업: 1천만불 이상 - 의료기관: 5백만불 이상 - R&D: 1백만불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불 이상 또는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개발사업비 5억불 이상
자유무역지역	세금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 - 지방세 3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무관세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1천만불 이상 - 물류업: 5백만불 이상 	
외국인투자지역	세금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 관세: 3년간 100% 면제 - 재산세 등: 10년간 100% 면제, 이후 3년 50% 감면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업: 1천만불, 제조업: 3천만불 이상, 관광업: 2천만불 이상, 연구시설: 5백만불 이상 석사연구원 10인 이상 SOC 사업: 1천만불 이상 	
제주투자진흥지구	세금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면제, 2년간 50% 감면 (단, 내국인은 소득세·법인세: 3년간 50% 면제, 2년간 25% 감면) - 관세(수입자본제): 자본제 최초 수입일 3년 이내는 100% 면제 - 취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100% 면제 - 개발부담금, 공유수면 점용료 및사용료 면제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각종 부담금 50% 감면 - 국·공유지 임대: 50년 이내(갱신 가능), 임대료 75% 범위 내 감면 	
	감면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문화산업, 교육산업, 의료산업, 첨단산업 - 총사업비 5백만불 이상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www.fez.go.kr) 재인용

21)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에 의거, 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3) 시사점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적인 요소가 없고,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최대 10년간 면제 후 3년간 50%를 감면하고 있지만,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우에는 최대 15년간 면제가 가능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보다 세제혜택이 많다.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서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 혜택에서 차별적인 감면 혜택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세인 재산세의 경우에도 다른 경제특구와 같은 최소 15년간 면제가 가능하여야 유사 경제특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²²⁾

제주투자진흥지구 중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9개소(88.6%)로 특정산업이 편중되고 있음. 산업분야별로 균형적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일정요건 충족 시 지구지정을 허용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산업분야별로 인센티브 총량제를 도입하여 총량제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별로 지구지정에 탄력성을 갖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별 균형적인 유치를 위하여 고도기술 수반업종,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 그리고 지역특화산업 등을 중점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에 차별적인 세제감면과 기반시설(SOC) 확충 등의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3-32> 경제자유구역 지정현황

명칭	지정일	위치	개발완료시기	면적	중점유치업종
인천	'03. 8	인천	'03년~'22년	132.9km ²	항공물류,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
부산 진해	'03. 10	부산,경남	'03년~'20년	83.1km ²	복합물류, 첨단수송기계부품, 여가/휴양 등
광양만권	'03. 10	전남,경남	'04년~'20년	77.68km ²	항만물류, 철강연관산업, 석유화학소재 등
황해	'08. 5	경기	'08년~'20년	4.39km ²	IT관련부품소재, 자동차부품, 철강
대구·경북	'08. 5	대구,경북	'08년~'22년	19.72km ²	IT융복합, 첨단수송부품, 첨단메디컬
새만금·군산 ²³⁾	'08. 5	군산, 부안	'08년~'20년	18.70km ²	자동차기계부품, 관광, 신재생에너지, 해양레저
동해안	'13. 2	강원, 동해안	'13년~'24년	8.95km ²	금속, 신소재, 항만물류, 관광/레저
충북	'13. 2	충북	'13년~'20년	9.08km ²	바이오, NEW IT,수송부품

자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홈페이지(<http://www.fez.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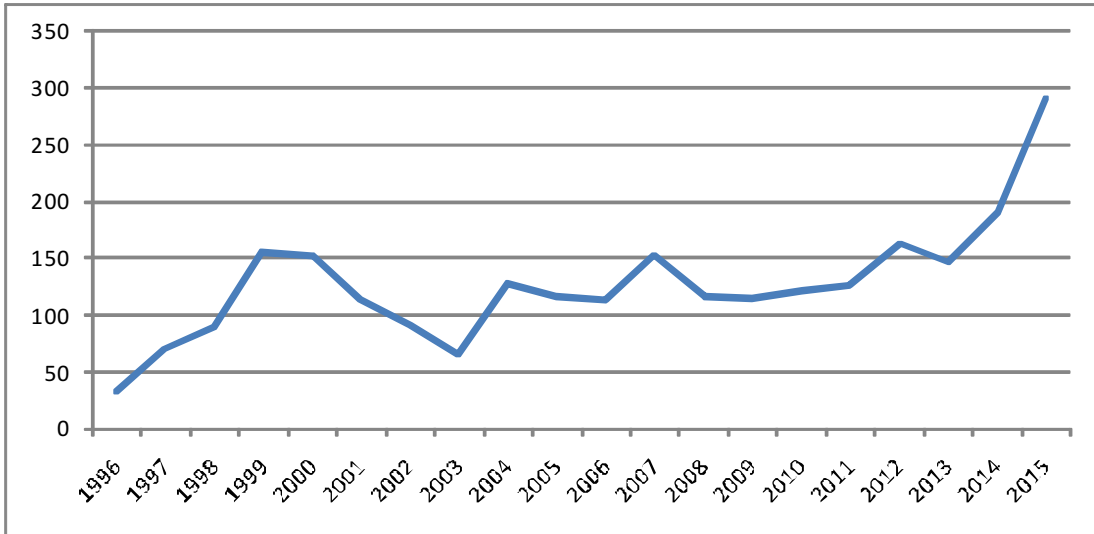
(5)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대한 평가(투자유입 잠재력과 실적)

산업통상자원부 기준 FDI 신고액은 <그림 3-3> FDI 신고액에서 보는 것처럼, 1996년 32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89억 달러, 155억 달러로 증가하여 2000년 153억 달러로 증가했다가, 2001년 113억 달러, 91억 달러, 65억 달러, 128억 달러, 116억 달러, 2006년 113억 달러로 조금 감소하였다가, 2007년 152억 달러로 다시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117억 달러, 115억 달러, 121억 달러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1년 127억 달러, 163억 달러, 146억 달러, 190억 달러로 증가하며, 2015년 291억 달러로 전체적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23)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6일 지정되었으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중 고군산군도 지역은 2014년 8월 5일 지정 해제되었음

<그림 3-3> 연도별 FDI 신고액

(단위: 억 달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http://www.motie.go.kr>)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은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기업 중심의 산업발전정책 추진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개방 및 자유화 확대, 1998년 9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투자유치기반 마련 정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실시된 금액 위주의 투자유치 정책은 대규모 외국인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환위기 이후 유치된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관련, 생산성은 전후방 모두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고, 고용은 긍정적인 전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조달 및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한국 중소기업의 발전 및 한국경제 혁신역량 강화에도 크게 기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4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익성은 매출액영업이익률 5.61%, 매출액순이익률 5.37%, 자기자본순이익률 9.48%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지표에서 국내기업 대비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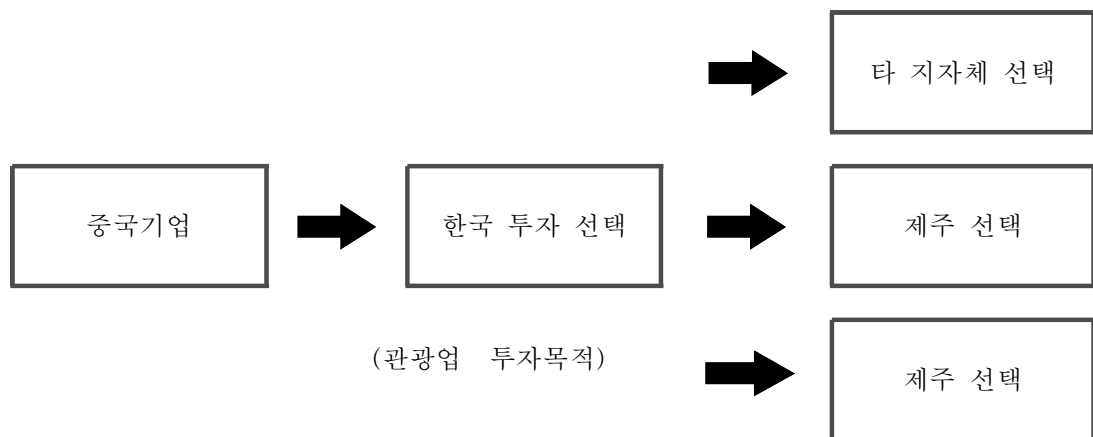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제조업 전체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부가가치 및 수출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 파급 및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고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및 문제점

1)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그림 3-4> 중국기업의 제주 직접투자 선택 과정



(1)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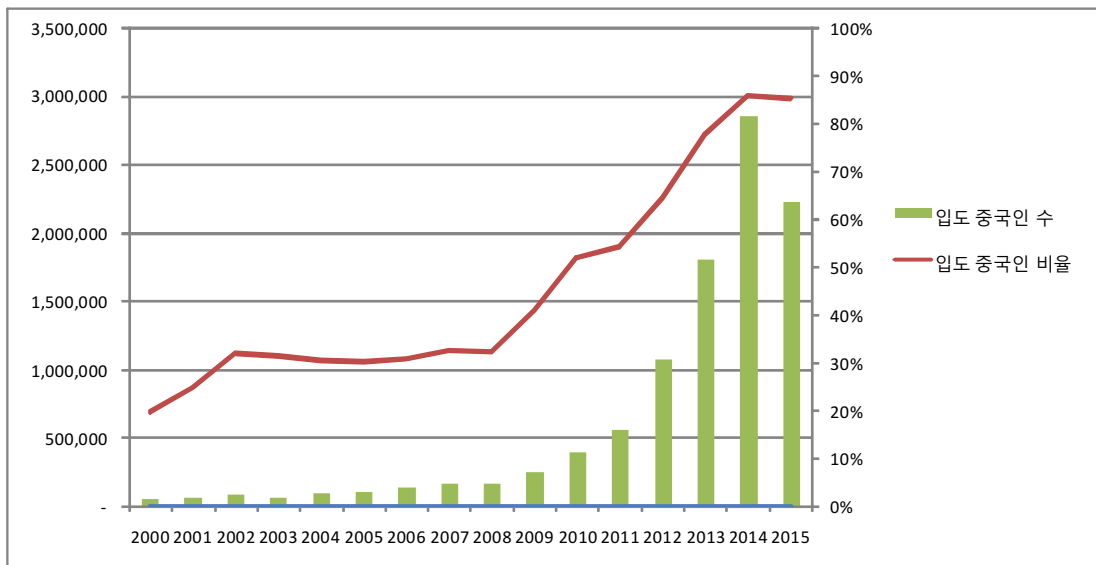
2013년 중국의 ‘환구시보’는 하와이·몰디브와 함께 제주를 해외 3대 섬 관광지로 꼽았다. 2014년에는 제주가 중국인이 뽑은 신희여행지 1위에 선정됐다.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인터넷판 ‘인민망’과 한국마케팅협회가 발표한 ‘중국인이 사랑하는 한국의 명품’ 중, 서비스 부문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포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UNESCO 3관왕,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무비자 입국 등 세계적인 관심지역으로 관광객 1,5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림 3-5> 연도별

입도 중국인 수와 입도 중국인 비율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57만 명이던 중국인 관광객은 2012년에는 2배가 넘게 증가한 108만 명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는 181만 명에서 2014년 286만 명, 2015년에는 224만 명으로 증가했다.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 외국인 중에서 중국인의 비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입도 중국인 수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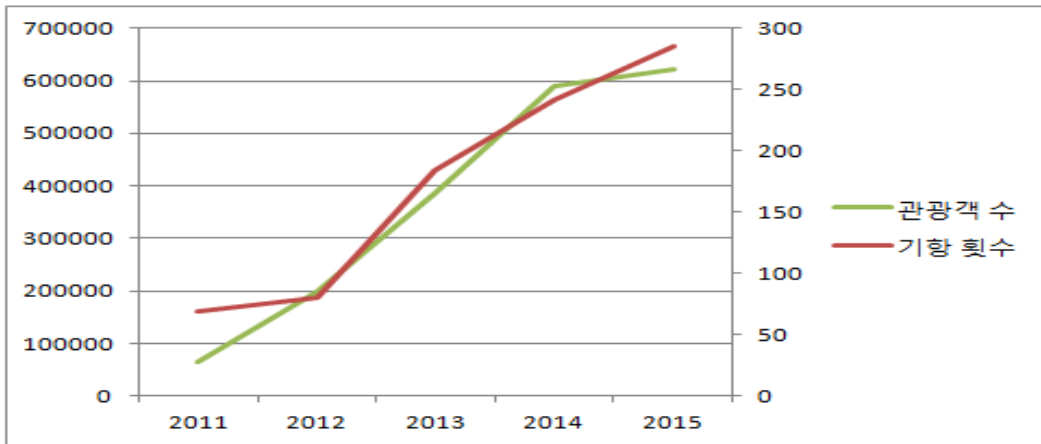
<그림 3-5> 연도별 입도 중국인 수와 입도 중국인 비율



자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http://www.visitjeju.or.kr>)

뿐만 아니라, <그림 3-6> 크루즈 관광객 수 및 기항 횟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주항의 국제크루즈 기항 횟수는 2011년 69회, 2012년 80회, 2013년 184회, 2014년 242회, 지난해 285회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크루즈 관광객 역시 2011년 6만4천995명, 2012년 19만9천441명, 2013년 38만6천139명, 2014년 242회 59만400명, 지난해 62만2천68명으로 점점 증가했는데, 전체 입도 외래 관광객 262만 명의 85%를 차지하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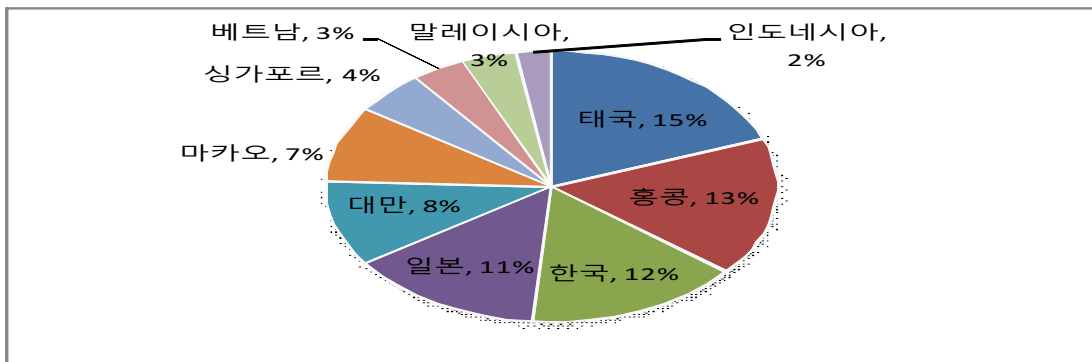
<그림 3-6> 크루즈 관광객 수 및 기항 횟수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http://www.jeju.go.kr>)

<그림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여유국(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의 2015년 4/4분기 중국인의 해외여행 국가 10대 목적지 국가 및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해외여행국가는 태국이 1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로 홍콩 13%, 그 다음이 12%인 한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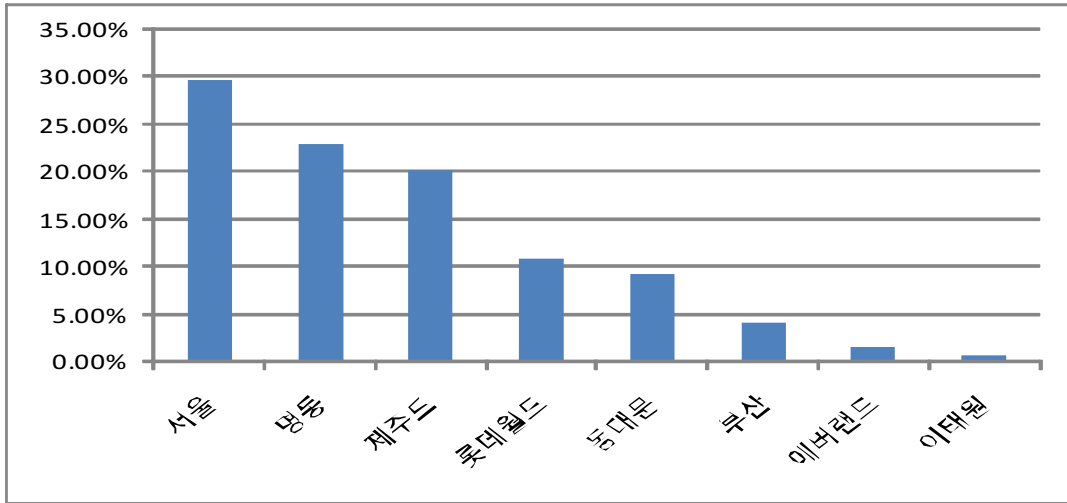
<그림 3-7> 2015년 4/4분기 중국인의 해외여행 국가 10대 목적지



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旅游局(<http://www.cnta.gov.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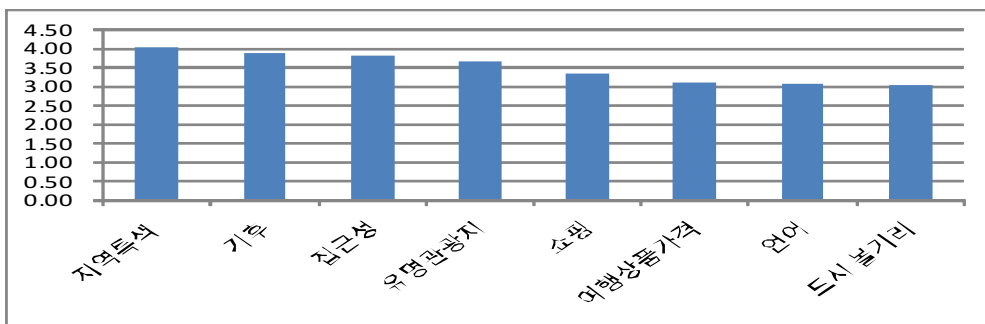
랴오닝성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관광동기와 관광지 선호를 조사한 결과에 서, <그림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인이 선호하는 한국 관광지는 첫 번째 가 서울, 두 번째가 명동, 세 번째가 제주도라고 밝혔다.(李擎, 2014)

<그림 3-8> 랴오닝성 중국인 관광객 한국 방문 장소 순위



해외여행지를 선택하는 조건을 조사한 결과, <그림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지역특색, 두 번째가 기후, 세 번째가 접근성, 네 번째가 유명관광지였는데, 이를 근거로 생각해볼 때, 제주도는 지역특색이 뚜렷하고 기후가 온화하며 중국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뛰어나고 동시에 UNESCO 3관왕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가 중에서는 한국을 세 번째로, 한국의 지역 중에서는 제주를 세 번째로 선호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李擎, 2014)

<그림 3-9> 랴오닝성 중국인 관광객의 해외여행지 선택 조건



(2) 제주특별자치도의 투자제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로 바뀌면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으로 교육·의료산업을 선도 프로젝트로 지정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수립했다. 이 법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법인세 감면기간 확대, 경쟁국 수준의 법인세율 인하, 출입국관리제도 개선 등이 포함되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과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며 해외자본 유치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2010년 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중국 자본의 투자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표 3-33>에서 보는 것처럼, 2002년 도입된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도입 초기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점차적으로 지정 요건을 완화하였다. 2002년 1월 지정금액이 미화 2천만 불에서 2004년 7월 미화 1천만 불로, 다시 2006년 6월 미화 5백만 불로 변경되었고, 지정대상 업종 누적 수 또한 2002년 1월 9개에서 2004년 7월 14개, 2006년 7월 20개에서 2007년 11월 21개에서 2009년 7월 24개로 증가하였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2005년 제주동물테마파크를 시작으로 2006년 1개가 건축되었고,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지정금액이 미화 5백만 불로 하향되고, 지정대상 업종은 20개로 확대된 후 2007년과 2008년 각각 3건씩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2009년부터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활성화되어 2009년 7건, 2010년 4건, 2011년 4건, 2012년 8건, 2013년 9건, 2014년 5월 4건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 3-33> 투자진흥지구 제도 연도별 변천 및 지정 현황

기 간		'02~'04.6	'04.7~'06.6	'06.7~'14.8									
지정금액		2천만불											
			1천만불										
				5백만불(≒50억원)									
지정대상업종 (단위: 누적 개수)										24('09.7)			
										21('07.11)			
										20('06.7)			
			14('04.7)										
		9											
지정현황	연도	'02~'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관광	휴양업		1	1	2	2	5	4	4	5	1	3
		관광호텔업				1		1			1	6	1
		관광식당 등						1					
	의료	의료 및 관광호텔										1	
		의료시설									1		
	교육연수	청소년수련시설										1	
		교육연수시설					1						
		국제학교									1		
	합계			1	1	3	3	7	4	4	8	9	4

자료: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제도 개선 방안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하지만, 제주도에 국내·외 투자가 증가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투자유치제도의 개선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2008년 이후의 내·외국인 관광객의 비약적인 증가에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투자유치제도 개선효과에 의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늘어났다면 제주도에 유입된 관광개발시설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등과 같은 분야의 투자에도 효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2014년 5월 기준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관광분야 이외에는 의료시설 2건, 청소년수련시설 1건, 교육연수시설 1건, 국제학교 1건이다.

게다가 의료시설 2건의 출자자는 모두 제주도내 의료법인으로 제주도민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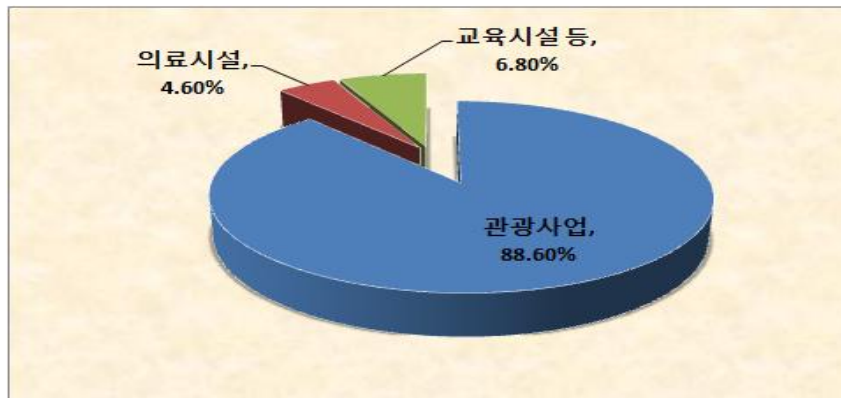
고객으로 하는 ‘중앙병원 신제주분원’(중앙의료재단)과 의료사업 및 관광호텔업의 ‘WE메디컬리조트’(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이다.

교육연수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도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과 ‘부영청소년수련원’이다. 교육시설 1건은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이다. 이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에 필수적인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세제혜택 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것이다.

<표 3-34> 제주투자진흥지구 산업구조(2014년 5월말)

업종	관광사업					의료시설		교육 및 연수시설			계
	휴양업			관광 호텔업	관광식당/ 공연장업	의료및 관광 호텔	의 료 시 설	청소년 수련 시설	교육 연수 시설	국제 학교	
	1종	2종	전문								
개소	2	8	18	10	1	1	1	1	1	1	44
비율 (%)	4.5	18.2	40.9	22.7	2.3	2.3	2.3	2.3	2.3	2.3	100.0
	88.6					4.6		6.8			

<그림 3-10> 제주투자진흥지구 산업구조



최근 관광분야의 직접투자를 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목적은 분석해보면, 이들 투자는 시장지향형 투자(Market-seeker investment)와 자원지향형 투자(Sources-seeker investment)라고 볼 수 있다(김철, 1998).

시장지향형 투자는 현지 시장 또는 지역 시장의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자원지향형 투자는 현지에 부존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이다.

현재 제주도의 투자기업은 제주도의 국내·외 관광객의 폭발적인 증가에 따라 제주도내 관광숙박 및 휴양업 등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을 예측하고 투자한 것이다.

2008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관광분야의 대규모 국내·외 투자의 요인은 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인센티브 제공 등)에 의한 유인이라기보다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제주도내 내수시장의 기대 수익에 근거한 투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text{투자액}_t = f(\text{관광객}_{t-1}, \text{인센티브}_{t-1})$$

* 여기서 t는 해당연도, t-1은 해당연도 전년도를 말함. 해당연도 전년도의 관광객 수와 인센티브 제도를 바탕으로 해당연도에 투자가 결정된다는 가정임

(3)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 규모

최근 중국인들의 제주 투자는 폭발적이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매입으로 제주도민들이 당황스러워할 정도다.(오창현, 2015) 제주도에 신규 등록한 외국기업은 2012년 16곳, 2013년 29곳, 2014년 58곳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 간 사업규모 100억 원 이상의 개발사업에 투자한 해외자본은 16곳에 이르며, 총사업비는 6조 2,7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중국자본은 13곳으로 사업비는 3조 5,000억 원 가량이다.

2015년 6월 기준 외국인 투자사업(투자규모 50억 원 이상의 그린필드형 사업) 중 중국자본 투자 사업은 <표 3-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건(37,965억원)에 이르며, 이는 외국인 투자사업 중 사업 수 기준으로는 66.7%,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44.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표3-35> 제주지역 내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그린필드형 사업)

구분	외국인투자사업				사업장별 FDI			
	사업 수(건)		총사업비(억원)		신고금액(천\$)		도착금액(천\$)	
중국	14	66.7%	37,965	44.9%	730,999	37.9%	333,189	40.4%
말련	1	4.8%	25,144	29.8%	343,651	17.8%	138,856	16.8%

싱가포르	1	4.8%	535	0.6%	6,500	0.3%	5,021	0.6%
홍콩	2	9.5%	18,511	21.9%	757,238	39.3%	333,783	40.4%
일본	1	4.8%	2,150	2.5%	87,642	4.5%	13,598	1.6%
호주	1	4.8%	161	0.2%	2,031	0.1%	1,061	0.1%
계	21	100.0%	84,466	100.0%	1,928,061	100.0%	825,508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정책과(<http://www.jeju.go.kr>)

2006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제주도내 중국기업의 투자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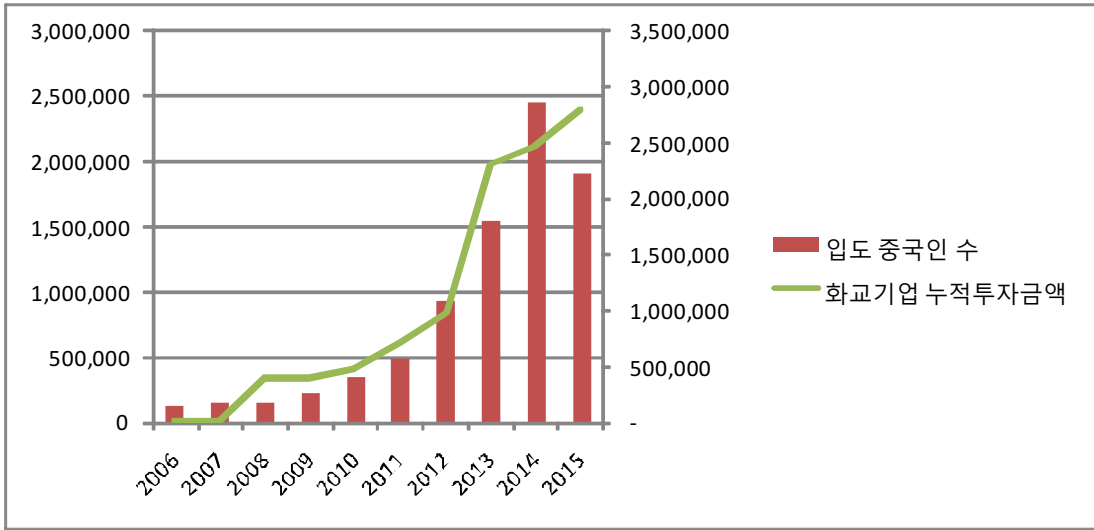
<표 3-36>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 사업 현황(그린필드형 사업)('15. 12월 기준)

투자 사업명		위치 (면적㎡)	직접투자액(천\$)		총사업규모 (억원)	
			FDI 신고	FDI 도착		
23개 사업		11,198,549	2,477,944	1,183,211	144,499	
싱가폴06)	폴로승마장	(204,564)	6,500	5,021	535	
말련('08)	예래휴양형주거단지	(696,638)	335,501	138,856	25,144	
중국 15개 사업	15개 사업	6,447,17	841,030	428,681	88,225	
	'10	제주분마이호랜드	(143,101)	65,449	59,892	4,212
	'11	제주백통신원리조트	(55,383)	174,441	25,248	2,432
	"	차이나비온드힐 관광단지	(893,989)	22,858	21,660	7,410
	'12	무수천유원지	(257,953)	29,000	21,510	2,537
	"	오션스타	(37,829)	21,405	21,700	1,100
	"	헬스케어타운	(65,748)	159,700	80,700	10,130
	"	토핑논어촌관광단지	(2,869)	7,066	7,868	155
	'13	덕림호텔	(9,998)	475	143	149
	"	열해당리조트	(218,609)	8,967	4,785	1,300
	"	상모유원지	(360,749)	90,833	25,537	4,327
	"	라헨느리조트	(116,328)	14,075	14,075	1,000
	'14	테디펠리스	(98,792)	112,860	33,565	2,373
	"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140,887)	22,114	16,170	600
	'15	후아다관광호텔	(4,622)	6,294	6,280	240
"	오라관광단지	(3,539,341)	105,493	89,548	50,260	
홍콩 3개 사업	3개사업	3,643,739	1,205,240	593,441	28,284	
	'06	보타메디		6,500	6,500	60
	'13	신화역사공원	(2,338,125)	1,033,049	507,617	18,451
'15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1,305,614)	165,691	79,324	9,773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ju.go.kr>)에서 재인용

주) 중국 자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림 3-11> 입도 중국인 수 대비 화교기업 누적투자금액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http://www.jeju.go.kr>)

산업통상자원부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에 따르면 제주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 192개소이며, 이 중 중국자본 투자기업은 총 123개소(64%)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자본 투자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 55개, 음식·숙박업 25개, 도·소매업 18개, 운수·창고업(물류) 10개, 비즈니스서비스업 6개, 문화·오락 3개, 공공기타서비스 2개, 건설업 1개, 실내건축업 1개, 농·축·임업 1개, 어업 1개 순이다.

<표 3-37> 중국 투자기업 업종별 현황

산업	중국투자기업	
	개소	비중 (%)
부동산 임대업	55	44.0%
음식·숙박업	25	20.0%
도·소매업	18	14.6%
운수창고업(물류):여행사	10	8.0%
비즈니스 서비스업	6	4.8%
문화오락서비스	3	1.8%
건축업 및 실내건축업	2	1.6%
농·축·임·어업	2	2.4%
공공기타서비스	2	1.6%
누계	123	1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http://www.motie.go.kr>)

이는 제주지역의 중국자본 투자가 부동산 임대업 및 음식 숙박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임대업은 건설업을 위한 부지를 마련하거나, 건설 전이나 후의 임대로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성격이다. 이와 같이 중국 자본 투자 사업이 부동산 기반 사업에 집중되면서 중국인의 제주 토지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중국인 소유 토지는 2009년 1만 9702㎡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2010년에는 4만 9,000㎡였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2011년에 141만 5,630㎡로 늘었다. 그리고 2012년 192만 9,000㎡, 2013년 3,150만 ㎡에서 2014년 3분기에는 799만 9,000㎡로 나타났다. 2014년의 증가분은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232만㎡와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 30만㎡ 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의 사업부지 매입 면적이 대부분이다.

제주지역 내 외국인 점유 토지 총 21,087,234㎡ 중, 중국인 점유 토지는 8,783,594㎡(41.7%)이며,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외국인 점유 토지(1,181,472백만원)의 67.7%(799,512백만원)에 해당한다.

<표 3-38> 제주지역 내 중국의 토지점유율(2015년 10월 말 기준)

구분	필지	면적		금액	
		㎡	비중(%)	백만 원	비중(%)
중국	7,225	8,783,594	41.7	799,512	67.7
미국	1,560	4,224,687	20.0	49,966	4.2
그 외 국가 (호주 등)	287	3,543,873	16.8	130,526	11.0
일본	476	2,382,560	11.3	48,987	4.1
기타 아시아(대만, 인도, 태국 등)	881	1,093,327	5.2	97,809	8.3
기타 미주	427	503,572	2.4	12,649	1.1
기타 유럽	123	410,379	1.9	14,730	1.2
영국, 프랑스, 독일	76	145,242	0.7	27,293	2.3
합계	11,055	21,087,234	100.0	1,181,472	100.0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건축지적과, 토지거래 및 외국인 토지 취득, 처분 현황
(<http://www.motie.go.kr>)

앞에서 제시한 중국자본 투자 현황을 토대로,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자본의 관광개발 투자로 인해 건설업 및 관련 산업(전기 가스 증기업) 등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0년~2013년 제주지역 건설업 및 전력 가스 증기업의 산출액은 각각 46.8%, 209.2% 증가하였다.

제주지역의 중국자본 투자유치 증가에 따라 2010년~2013년 제주지역 건설업 및 전력 가스 증기업에 대한 연평균 수요증가율은 각각 13.7%,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제주지역 건설업, 전력 가스 증기업 산출액 규모 변화(2010년~2013년)

(단위: 십억 원)

구분	2010(A)	2013(A')	증가분(B=A'-A)	증가율(B/A)
건설	2,061	3,026	965	46.8%
전력 가스 증기	305	943	637	209.2%

자료: 고태호.(2015).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황 및 시사점

3. 제주도의 중국기업 램정 사례 및 심층 면담

면담자: 램정제주개발 상무이사 윤정웅

일시: 2016년 5월 26일 19:00~20:30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Q1. 램정제주개발?

- 램정제주개발은 램딩국제발전유한공사와 쟈팅싱가포르유한공사의 합작회사이다. 램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그 자회사들의 주된 사업분야는 부동산 개발, 복합 리조트의 개발 및 운영, 카지노 사업권을 통한 카지노 운영 등이다. 램딩 국제발전유한회사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있으며 홍콩 항셱 지수의 구성 종목이다.

쟁팅싱가포르는 지난 30여 년간 호주, 바하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영국 등지에서 게임 및 복합 리조트 개발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해 왔다. 싱가포르

의 리조트월드 센토사는 동남아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 중 한 곳으로서, 겐팅싱가포르의 대표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겐팅싱가פור는 현재 제주에서 복합 리조트 리조트월드제주를 개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겐팅싱가פור는 싱가포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며 시가총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 미화 100억 달러(한화 약 10조 3천억원)로서 싱가포르 최대 상장회사 중 하나이다.

Q2. 리조트월드제주?

- 복합리조트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시작했고, 싱가포르의 리조트월드 싱가포르(센토사 섬)와 마리나베이샌드 리조트가 성공적이다. 그 성공을 보고, 마카오,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일본, 러시아 등의 나라가 정책적으로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센토사 섬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핵심 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사업 용지에 들어서는 ‘리조트월드 제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리조트로 투자비가 2조 원에 이르고 직접 고용 6,500명, 간접고용 26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매머드 사업이다.(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2016) 중국 란딩(藍鼎)그룹과 겐팅싱가פור가 공동 설립한 람정제주개발(주)이 지난해 2월 착공했다.

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주제로 한 7개의 테마존에 20여가지의 놀이기구를 갖춘 가족형 테마파크, 대규모 쇼핑 및 다이닝 시설 및, 2,0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호텔이 조성될 예정이다. 리조트월드제주의 호텔에는 국제회의나 전시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MICE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복합 리조트는 사업 면적이 250만m²로 숙박단지에는 최고급 빌라 및 6성급 호텔을 비롯해 카지노·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과 휴양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선다. 주요 시설이 집중될 A지구는 내년 하반기부터 호텔·테마파크·엔터테인먼트 시설 등이 단계적으로 개장 예정이다. 람정제주개발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 세계의 신화와 전설을 선보이는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은 국내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 (주)투바앤과 엔터테인먼트는 YG와, 쇼핑은 신세계와 협업하고 있다.

미화 18억 달러(한화 1조 9천억원)가 투자되는 리조트월드제주는 완공 시 국내외 모든 연령층의 방문객들에게 적합한 최고급 수준의 복합 리조트가 될 것이다.

Q3. 제주도에 투자를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카지노 유치 등 복합 리조트를 설치하기 위해 투자하였다. 카지노 성장률은 2010년 이전 5%에서 2010년 이후에는 10%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다.

- 카지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다. 싱가포르는 2009년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하자 자구책으로 카지노를 허용하였다. 싱가포르의 카지노는 내국인도 허용한다.

- 카지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전체 면적의 5% 이내로 카지노 면적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카지노 횟수를 제한하고, 카지노 감독기구를 만들고, 도박 중독 치료 센터를 만드는 등 관리한다면, 지방세수를 늘려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Q4. 제주도 이외 다른 국가나 지자체에 투자한 곳이 있습니까?

- 제주 하얏트 카지노는 별개의 법인으로, 제주신화역사공원 말고는 다른 국가나 지자체에는 투자하고 있지 않다.

Q5. 타 국가나 타 지자체가 아닌 제주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제주도는 중국 북부의 주요도시들로부터 2시간여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베이징, 상하이, 닝보, 선양, 다롄, 항저우, 톈진 등 중국 여러 도시에서 제주도까지 매주 70편 이상의 항공기가 운항되어 접근성이 높다.

- 작년 한 해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은 1,500만 명이며 이 중 약 20-25%가 외국인이다. 2014년 기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300만명을 넘어섰고, 앞으로도 수년간 이러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최대 30일까지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최대 72시간 동안 비자 없이 한국의 다른 지역을 관광할 수 있다

- 람정제주개발은 제주를 찾는 중국인 및 동남아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율이 높아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 신화역사공원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사업시행자인 JDC가 외자유치차원에서 홍콩랜딩을 유치했고, 그 후 쟈팅싱가포르가 지분 참여의 형식으로 참여했다.

Q6. 제주에 투자했는데, 他국가나 他지자체와 비교해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 요건이나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의 영향력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의 인센티브는 세제 측면에서 도움이 되기도 하고, 유인책도 되지만, 다른 법에 있는 인센티브와 비슷하다.

- 대부분의 경우 기업의 투자는 투자예정지의 시장 여건, 투자 시 행정의 One-Stop 서비스 가능 여부, 투자예정지 주민의 기업에 대한 이해도(호감이나 반감), 투자 후에도 공무원들의 호의적인 협조를 담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신뢰도가 세금 감면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다.

Q7. 투자유치에 대한 경제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 람정의 투자는 리조트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 생각한다.

- 6,500명 직접 고용은 65만 제주 인구의 1%에 해당하는 수로 도내에 100명 이상 채용하는 대기업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에서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거의 대부분의 도민이 람정과 관련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흔히 관광업이 임금이 적다고 하지만, 람정은 임금 수준도 서울과 비슷하게 갈 것이며, 제주도에 대기업 수준의 경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 리조트월드제주는 건설단계 및 개장 이후에 운송, 식음료 공급, 세탁 서비스 및 교육 기관 등의 물류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업체들과 긴밀하게 일할 것이며 장차 현지 농장과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제주 현지의 농수산물을 식품재료로 조달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간접 고용 효과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세탁공장의 경우에는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 또한, 리조트월드제주는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을 도와 제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약 6,500명의 직접 고용, 약 25,000명의 간접 고용 등 다양한 직종에서 고용 기회를 창출하여 제주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 전체 인력의 80% 이상을 도내 인력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램정제주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일자리를 위한 인재양성, 한국 주요기업과의 협업,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약 등 램정개발과 제주도의 상호 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다만, 도민의 80%를 채용해야 하는데, 영어나 중국어 중 하나는 기본적인 실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데, 도내 인력으로 공급이 가능할 지가 우려되긴 한다. 당장, 내년 상반기 2,500명 채용 예정인데 인력 공급문제가 우려된다.

Q8.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복합 리조트 조성 사업에 맞춰 맞춤형 지역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복합 리조트 취업 연계형 실무 양성 과정'을 시작해 현재 싱가포르에서 제주 지역 청년 57명을 대상으로 어학 및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과정을 수료하면 리조트월드 제주에 취업한다. 자비부담은 총 70만원 정도이며 관련 법상 청년(34세 미만)에게 영어 6개월 어학연수 후, 1년 반 동안 현지 채용하고, 그동안 중국어 연수도 시켜준다. 이후, 제주도로 돌아와서 대리로 채용된다. 아직 자세한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 제주 지역 5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무형 교육 과정인 '람정 트랙'도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3학기 동안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입사 지원시 가산점 혜택을 부여한다.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고교 대상 트랙도 시행 예정이다.

Q9. 관광업은 일반적으로 페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가?

- 서비스업이라 페이가 다른 업종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램정의 페이는 서울의 관광업 정도로 줄 예정이다. 정직원과 일용직 비율 등 구체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최고의 복지를 지향하며, 호텔, 테마파크 등 직종이 다양하다는 것이 램정의 장점이다. 고용도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Q10. 투자 유치시 애로점?

- 신화역사공원의 경우는 도지사의 의지와 사업자의 의지, 중앙정부의 의지 모두 강하여 모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94년 중앙정부가 외투기업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추진동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외자를 유치 할 때는 다 해줄 것처럼 하는데, 약속과 다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돈인데, 행정절차 이행을 one-stop으로 최대한 빨리해줘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 예를 들어 원래 범상 5억 이상 투자하면 카지노 라이선스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 유치 과정에서는 라이선스를 준다고 해 놓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니 안 된다고 하는 등이다.

Q11. 부동산 투기, 환경문제(곶자왈 지역) 등 비판적 시각에 대한 생각?

- 곶자왈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그냥 휴양지역이다. 자연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오히려 곶자왈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한다.

Q12. 언론 보도에 의하면, 콘도를 분양 받은 대부분이 한국인이라던데, 분양률은 어떤가?

- 콘도 분양이 이루어졌는데, 아직 공식적인 분양은 아니고, 한국에서만 이루어졌다. 콘도 분양의 80%가 중국인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공정률에 따라 분양이 승인되기 때문에 아직은 홍콩 분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Q13. 환매권을 JDC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해서, 언론에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 환매권의 경우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상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까지 공사 중간에 환매권을 해제해준 적은 없었지만, 행정절차를 끝내고 건축물이 올라가는 등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공정률 진행 상황을 보며 환매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14. 콘도 분양이 완료되면 철수한다는, 이른바 ‘먹튀 자본’ 논란 등 비판적 시각에 대한 생각은?

- 람정의 경우, 콘도만 분양하고 가 버릴 수 없다. 테마파크 등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콘도만 만드는 사업은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먹튀 자본은 미리 막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특별법이니까 공정거래법 하나만으로도 먹튀자본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또한, 단지 중 숙박시설의 면적을 예래처럼 30%로 정해야 한다. 숙박업에만 투자하면, 100% 분양이 끝나면 돈만 챙겨서, 돌아가면 끝이다.

Q15. 제주동물테마파크의 실패와 예래휴양단지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자금 조달과 투자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자기 자본보다 금융을 일으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람정제주개발의 경우 자기자본으로 자본을 투자하였지만, 기타 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래도 초창기에 자금조달이 잘 됐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출불가 등 자금조달이 문제다. 1심에서 JDC가 이겼으나, 최종판결 전 2심에서 재판부는 2억 몇천 만원에 합의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때, JDC가 합의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합의를 못 했던 이유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 합의하는 것은 감사 지적사항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의 소송은 돈으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소송으로 가면 미래 발전 수익금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한다.

Q16.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활용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제주의 신화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애초 계획보다 숙박시설을 3,000실 증가하고, 대규모 카지노 시설을 계획하는 등 수익창출에만 관심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숙박시설은 늘리지 않았다. 카지노의 경우, 신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도에서는 하얏트 카지노 권리를 이전해가라고 하는데 법인이

다르다. 현행법 상 이전이든 신규 허가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

- 우지사 때는 오픈 카지노 추진위로 마카오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외국인 카지노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카지노는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도정정책에 반대만 하고 대안 제시가 없는 주장은 제주발전에 도움이 안 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 J지구는 JDC가 투자하기로 하여 제주신화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일부러 하지 않았다. A지구는 세계 신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 건설업은 일시적 효과만 있다고 하는데, 건설단계와 운영단계를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고용 창출의 경제파급효과 등 운영 시 수익이 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Q17. 도민의 반감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지역상생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람정은 제주와 동반 성장하기 위해 '리조트월드제주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관광 및 서비스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하고 있으며, '리조트월드제주 사회공헌 펀드'를 발족하여 소외계층을 돕고 환경 보호 및 지역 예술 문화 촉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 리조트월드제주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제주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들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호 간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식장에 기존 부지 나무 300그루를 보호하고 있는데 리조트 완공 이후 옮겨 심을 예정이다.

Q18. 카지노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을 어떻게 보는가?

- 람정은 10,500㎡ 정도로 카지노를 할 예정이다. 카지노는 복합리조트에서 80%의 수입원으로, 복합리조트의 핵심시설이다. 람정은 100달러 이상의 VIP 손님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 카지노를 도박이라는 개념이 아닌 업무와 비즈니스 개념으로 봐야 한다. 중국인 및 중국계 동남아시아인에게 카지노는 일상의 문화이다.

- 일례로 신제주 그랜드 호텔에 카지노가 있지만, 그 곳에 카지노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람정 제주개발이 카지노를 늘린다고 해서 제주도 전체가

도박도시가 된다는 말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에도 카지노가 있지만, 싱가포르를 관광국가라고 하지 도박도시라고 부르지는 않지 않는가. 하지만,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싱가포르의 경우 2개의 카지노가 있고, 카지노 면적을 전체 면적의 5%로 상한선을 두는 등 규제가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10,500m² 정도의 상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제주도의 경우, 올해 재판이 끝난 후 카지노 추진위원회 등이 생겼는데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추진위원회와 규제 등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본다.
- 카지노를 하겠다는 모두에게 권리를 줄 수는 없고 카지노 7개, 면적 10,500 m²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Q19. 투자유치에는 어떤 게 필요한가?

- 내외 관광객 수요가 필요하다. 호텔이 포화상태라서 더 이상 호텔 수를 줄인다는 말이 있는데 호텔을 지으면 사업자가 알아서 관광객을 끌어올 것이다. 숙박업을 하면서 공실률이 많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다. 람정의 경우, 건설하려던 호텔이 줄어서 공사비인 투자비가 2조 5,000억에서 2조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제주도의 손해가 아니겠는가.

Q20. 부동산 임대업이나 음식 숙박업에만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관광업 외 다른 분야에 유치 노력을 안 한 것 아니겠는가. 관광업체 이외의 업체들이 제주도를 오겠는가. 제주도는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관광개발사업이 제주도의 경쟁력이고, 제주도정의 외자유치과정에서의 정책이었다고 생각한다.
- 균형발전이니, 2차 산업이 적으니 늘려야 한다느니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사업자도 이익이 나와 투자하지 않겠느냐. 인재를 쉽게 구하고 선순환구조를 만들면 좋겠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겠는가. 다음카카로나 이스트소프트 등 제주도의 국내기업도 명목상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주요 부문은 모두 육지로 이전한 것으로 안다.

Q21. 제주도내 지역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하는 신성장동력 산업(MICE, 의료 관광산업, IT·BT관련 첨단산업 육성 유치를 위해 제도 개선할 점?

- 제주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인데 난개발이 아니고서야 보전 지역 외에는 개발할 데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관광 아니면 어떻게 살겠는가. 관광을 특화시켜야지. 하지만, 관광업에도 철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삼다수 개발공사, 컨벤션센터, 관광복권 등 긍정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관광복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로또 분배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기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면담 후, 중국기업의 제주투자를 분석해본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중국기업이 제주에 투자를 결정하게 된 요인 중 가장 큰 요인은 시장규모와 경제발전 수준, 노동비용(임금수준), 교육수준 및 기술발전 수준, 인프라, 정부정책(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하면 중국기업이 제주에 투자하게 된 동기는 자원지향, 생산효율지향, 위험회피, 노동지향, 수출지향, 지식지향이 아닌 시장지향이다.

이론 중에서는 독점적 우위이론, 과점적 경쟁이론, 제품수명주기이론, 행동과학적 접근 이론- 기업행동이론 보다는 내부화이론, 거래비용 이론, Dunning의 절충이론이 중국기업의 제주 투자를 잘 설명해 준다.

람정제주개발의 신화역사공원은 직접고용 6,500명 및 간접고용 25,000명으로 고용에 큰 영향을 미쳐, 이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식음료 및 세탁 사업은 지역 경제에 승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복합리조트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전수받고, 도내 관광업의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중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등 경제적 유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정 one-stop service 및 금융 대출 보증 등 행·재정적 지원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경 훼손이나 먹튀 자본 논란 등 도민들의 반감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을 임대형식으로 빌려주는 등 도정과 도민, 기업 3자가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람정 뿐만 아니라 도내 외국인투자기업은 원희룡 도정 들어서 제주 투자가 힘 들어지고 있다고 불멘소리를 하고 있다. 24)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간담회에서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유원지 특례를 둔 제주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으며 토지 문제와 인허가 문제, 조례 등이 남았는데 제주도에서 TF팀을 꾸려 신속하게 움직여야 버자야도 사업 지속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고, 람정제주개발은 신화역사공원이 2018년 개장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인허가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이나 JDC가 투자 유치 당시 약속했던 부분들이 지사나 여건이 바뀌면서 약속을 저버리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별장형 고급주택 취득세나 중과세 문제도 당초 투자 유치에는 감면 조항이 있었는데 지난해 8월 갑자기 조례가 생기면서 삭제되어 앞으로 많은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외국 투자법인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며 2007년 9월 한중 국제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 한중일 북경협약을 통해 최초 허용된 투자 대우보다 불리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경우 숙박시설도 포함돼 있다가 2014년 4월 조례개정을 통해 공사를 착공한 후 6개월 후에 지정하도록 변경됐고, 2014년 8월 업무지침을 통해 숙박시설이나 박물관·미술관은 투자지구에서 제외하는 등 명백하게 국제협약을 소급 적용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는 빈땅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나무를 심을 때 정책하고, 심고 나서 정책이 바뀌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은 "관광숙박시설이 30% 넘어서 시행중인 곳은 최초 사업 승인대로 적용하게 된다"며 "다만 변경계획이 왔을 때 기존 숙박시설 범위를 넘어선 안된다"고 답변했다.

투자자 약속과기에 대해 양기철 국제통상국장은 "투자자 입장에선 약속된 사항을 파기한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지난해 1월 원희룡 지사께서 중국투자자들의 불만과 걱정에 대해 중국 현지에 가서 정책방향이 바뀌는 것의 불가피성을 설명드렸다시피, 제도가 한번 도입됐다고 해서 원형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환경이 되면 모든 법과 시행령, 정책 등 제도가 변경된다"며 "

24) "원희룡 도정 들어 외국인 투자 힘들어, 불멘소리" (제주의 소리, 2016.06.07.)

투자지구를 공사착공 6개월 후로 개정한 이유는 투자자가 약속했던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이행해야 하는데 세금감면이라는 투자지구를 지정받았음에도 착공조차 안된 사업장이 다수여서 의회나 언론, 전문가와 협의 끝에 착공 후 투자지구 지정을 하도록 변경했다"고 답변했다.

분양형 숙박시설과 미술관 등 투자지구 제외에 대해서도 양 국장은 "숙박시설이 과잉되고 있는 용역결과도 나온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많았다"며 "투자지구지정 대상사업 규모도 처음에는 2,000만불에서 500만불로 줄였다가 다시 2,000만불로 상향된 것으로 투자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호유원지 개발을 하는 제주분마이호랜드 박인수 본부장은 행정의 이중성에 대해 비판했다. "이호 주민들이 사업지구에 포함된 해수욕장을 제외해 달라고 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2007년 6월 해수욕장까지 포함해서 사업자를 지정받았고, 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2012년 이호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수욕장 공유수면과 국공유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해달라는 청원을 제주시가 기각했다"며 "하지만 2014년 다시 주민들이 소급해서 사업규모를 줄이라고 요청하자 제주시가 이를 받아들여 사업 축소를 요구했다. 사업부지가 12%나 줄어든다. 이 때문에 사업변경계획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남선 과장은 "해수욕장과 국공유지 4필지 4만 4,000㎡로 알고 있는데 마을주민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로 유원지 사업이 이관되면 국공유지 부분을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며 "분마측은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종료됐고, 사업을 1년 연장했는데 다른 사유지 매입이 안돼 사업 전체가 추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라"고 반박했다.

열해당 임택규 본부장은 "민선 6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개발사업자들은 힘든 과정을 거쳤다"며 "처음 사업계획과 대부분 변경되고, 전 사업체의 사업이 미뤄졌다"며 "열화당 사업도 1년 동안 늦어졌다"고 밝혔다.

임 본부장은 "제주도는 개발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변경이 없다면 협의를 잘 봐주시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점

(1) FDI 지방세 지원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지자체들은 선진기술 도입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 내지 지방산업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률을 제고할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들이 당초 유치목적과 다르게 각종 혜택만 누리고 지역경제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 지원혜택을 제공했던 지자체들은 세수손실만 입게 되는 부작용마저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지자체 간 연계 고리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감면 및 추정요건과 감면관리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면, 지방세 감면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2에 의거하여 산업지원서비스업, 국내에서 개발수준이 낮거나 개발되지 않은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새만금사업지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 입주하여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적용된다. 이들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이 감면된다. 감면대상 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이 설정되어 있으며, 감면율은 기간에 따라 전액감면과 50% 감면으로 차등화되어 있다. 감면된 지방세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추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의 5는 외국투자 비율이 감면 당시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경우, 폐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5년 이내에 출자목적물의 납입 및 장기차관의 도입 또는 고용인원이 조세감면기준(R&D 분야 석사고용 기준, 장애인 고용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세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감면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추정요건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정요건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된 산업단지나 개발촉진기구에 대한 감면과

는 달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추정사유가 되는 등록말소의 요건에 외국인투자기업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으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의 규정과 달리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지역과의 관련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시정명령에 따른 추정조항이 없으며, 국세 법인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추정사유로서 감면기준의 충족이 있으나 재산세·취득세의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감면요건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바, 감면한도 적용 시 고용창출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면관리의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감면의 외국인투자 유치효과 자체도 미흡하다는 것이 정책당국이나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절실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조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존치되어 있어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감면 관리 체제에 제대로 포착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면결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해 이루어져 지방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도 지방세라는 이유로 중앙정부의 감면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감면특례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무조건적인 전액감면이 이루어지며, 동법에서 감면신청 시 요구하는 감면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감면신청서가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조세감면신청서를 요구하는 데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사후적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지방세감면 책임을 지고 있는 지자체의 관심영역에서도 벗어나 있다.

(2) 부동산 중심 투자

중화권 투자유치 확대전략(2015)에 따르면, 2000년~2013년(신고금액 기준) 한국 내 중국자본 투자는 서비스업(54.7%) 뿐만 아니라 제조업(43.7%)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는 부동산 임대업,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80.7%)에 치중되고 있으며,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림 3-12>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현황



(3) 숙박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 제주지역 숙박 수요를 흡수

제주방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숙박시설의 공급이 과열됨에 따라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13년도 기준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산업의 사업체당 산출액은 2010년 대비 11.6% 감소하였으며,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⁵⁾

중국자본의 관광개발 투자는 전후방 연계효과가 높은 건설업 및 관광산업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나, 효과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기존 관련 사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자본 투자 방향을 기존 산업과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사업 분야가 아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자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주지역의 입장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의 이윤에 대해서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15년 6월 제주지역에서 5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14건(3조7965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외국인 투자사업 중 사업 수 기준으로 66.7%, 총 사업비 기준으로는 44.9%에 해당한다.

25) “부동산-숙박업 위주 중국자본, 제주경제 효과 ‘미미’” (제주의소리. 2016.01.21)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사업 중 가장 큰 규모 휴양콘도, 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랍정제주개발의 신화역사공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 8,451억원이다. 그 다음은 영리병원을 조성하는 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으로, 총 사업비는 1조130억원이다. 이어 차이나비온드힐 관광단지(홍유개발) 7410억원, 송악산유원지(신해원) 4327억원, 제주분마이호랜드 4212억원, 무수천유원지(제주중국성개발) 2537억원, 제주백통신원리조트(백통신원) 2432억원, 테디펠리스(차이나테디) 2373억원 순이다. 중국자본 투자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임대업이 절반에 가까운 43.0%, 숙박업(22.8%), 도소매업(14.9%)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가 부동산 임대업과 숙박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결국 중국자본 투자가 부동산에 집중되면서 중국인의 제주 토지 점유율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4)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2002년 무사증 제도 시행, 2006년부터 확대된 중국 여권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도(入島)정책 이후 꾸준히 늘어난 중국 관광객들은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를 계기로 제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중국 관광객의 증가는 표면적으로는 제주도 내 업체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을 넘어 아예 제주도 부동산을 소유하는 중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부동산 중심, 숙박업 중심의 투자로 제주지역의 숙박업 수요를 흡수하는 등과 같은 이유와 함께 투자에 대한 이익배분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들어 중국 투자에 대해 편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중국인들의 개별 부동산투자와 숙박업, 임대업투자에 있어 건물 매입 시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건물 매매가와 임대료 상승, 단체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여행사에 수수료 납부,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결국 중국 여행사와 중국인 건물주만 배 불리는 셈이라는 것이다.²⁶⁾

또한 투자액 대부분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용되기보다는 다시 중국으로 돌

26) “[중국 제주 투자 그들만의 리그] 늘어나는 유커가 투자자로… 관광서 쓴 돈 다시 中주머니에” (서울경제, 2014.08.28)

아가는 돈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에 포함된 분양형 콘도미니엄이 대표적인 경우다. 콘도는 단기 분양이익을 노린 '먹튀 자본투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1년에 한두 번 가량 콘도 소유자들의 방문 이외에는 리조트가 내내 비어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 활성화와도 관계가 없고, 미래산업과는 연관이 없는 투자가 이뤄지다 보니 창출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청소나 판매 등 단순노무직에 그치는 데다 이마저도 임금이 더 낮은 중국인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헬스케어타운과 차이나비온드힐관광단지 등 13개 개발사업으로 1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지만 그중 61개는 중국인들 몫이었다.

(5) 건설효과 중심 중국자본 투자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시적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건설 수요 증대 등의 영향으로 제주지역 경제규모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건설업에 대한 수요는 특성상 1회성 효과 창출에 그치며,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건설업은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 중 하나로 건설 기간 동안은 지역 경제파급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건설 종료 이후에는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유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건설업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3년 기준 제주지역 건설업 관련 종사자 수는 16,065명으로 2010년(16,694명) 대비 약 3.8% 감소한 수준이다.

<표 3-40> 제주지역 건설업 관련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2010 년도	2011 년도	2012 년도	2013 년도
사업체수	1,302	1,393	1,516	1,767
종사자수	16,694	14,117	14,829	16,065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http://www.kostat.go.kr>)

(6)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문제점

지구지정에 따른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해당부지를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4년 5월까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4개소 중 39개소가 휴양 및 호텔 등의 관광사업 분야이며, 연수원, 1개소, 청소년수련시설, 1개소, 외국교육기관 및 국제학교가 1개소, 의료시설이 2개소이다. 박물관 등의 전문휴양업 및 관광호텔업이 증가하면서, 일부 박물관 등의 시설 비중을 낮추고, 숙박업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제도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① 세제혜택제도의 경직성과 사후관리제도 미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후에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 당초 계획을 변경하거나 당초의 사업기간과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각종 부담금 등의 세제혜택 등은 그대로 지정업체에 제공되고 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서 계획대비 적은 금액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더라도 부여된 세제 혜택에 대한 환원 또는 추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중심으로 편제되어 사업자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후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지정된 지역의 일부만 개발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나머지 토지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 분을 사업자로부터 일부 추징을 하였으나, 토지매각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 또 다른 악용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는 사업계획 등의 불이행 및 기간 연장 등에 따른 벌칙 규정 등의 부재로 세금 추징 또는 지구지정 해제 등의 제재와 관련한 사후관리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은 지구 지정 후 상당기간 사업진척 부진 시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지구지정 해제 시 면제 또는 감면 받았던 세금 등의 추징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② 금액의 획일성

관광산업을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국제회의시설업, 종합유원시설업, 관광식당업 등 10개 업종²⁷⁾을 제외한 14개 업종(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27)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일률적으로 미화 500만 달러로 지정되어 있던 제주투

제도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고등학교, 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 및 음료제조업(물산업클러스터 내)) 모두 확일적으로 최소 50억 원(미화 500만 달러)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각 산업분야에 따라 투자 금액의 현실성에 적합한 금액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

③ 제주도내 지역 및 산업 특성의 미고려

제주도내의 산업 발전 정도는 한라산 북쪽(산북, 제주시 지역)과 남쪽(산남, 서귀포시 지역)의 불균형 개발이 심하다. 그리고 제주도내 산업 중 성숙도가 높은 분야(관광 등)와 낮은 분야(의료·교육·IT·BT 등)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진흥지구 금액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④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주체의 이원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해제는 「제주특별법」 제217조와 제218조에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기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과 지정 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구 지정 후 관리운영은 「제주특별법」 제217조 제3항에 의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지구지정 업무와 사후 관리주체의 이원화로 인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곤란하며, 더욱이 행정적인 제재 권한이 없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자이면서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가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²⁸⁾ 현재 JDC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신화역사공원, 제주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등의 사업 시행 주체이다.

⑤ 유사경제특구 대비 차별성 부족

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이 업종별 특성이나 지역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관련 사업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엔 미화 2000만 달러(한화 약 242억 400만 원) 이상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8) 「제주특별법」 제217조 제3항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1조를 근거로 투자진흥지구 사업 중단 또는 미이행시 종합계획심의회를 통하여 지정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하지만 지정해제는 2014년 5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었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입지와 비교하면, 경제자유구역은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반면에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접근성 열악, 관련된 산업 간의 연계성 부족, 세제 감면 혜택의 차별성 부족, 지역특화사업 혜택 부족 등 투자환경이 경제자유구역에 비하여 떨어지며, 유치가능 업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차별성이 부족하다.

4.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개선방안

21세기는 어느 나라도 혼자서만 생존, 번영해 나갈 수는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제수지 개선, 경제효율성 제고 등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다.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제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더욱이 제조업기반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여 1차 산업 중심인 제주의 발전에 있어 더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최근 중국 관광객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시키고 부동산투자이민제도²⁹⁾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사회질서 문제와 투자이민제도 시행에 따른 토지잡식 우려, 중산간 지역의 훼손·난개발 우려, 부동산 투기 및 편법에 의한 자금유출 등 제주지역 사회의 부정적 시각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최근 제주도의 여론에 떠밀린 투자유치 정책들의 대폭 수정으로 다소 위축되어 소강상태에 이른 외국인 투자를 더욱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9) 제주도의 투자이민제도: 제주도의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229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한 지역 내의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별장, 관광펜션에 50만 달러(5억원) 이상 투자자에 대한 조건부 동반 신청자는 영주권 부여를 하고 있다. 또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외국자본의 추가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체류형 휴양관광지 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FDI 지방세 지원제도 개선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4항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가하여 이들 세목에 대해서도 감면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 감면한도 수준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대안으로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감면 특례제한 조항을 준용토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감면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 검토단계에서 지자체에 의한 타당성 평가가 엄밀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타당성 평가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관련 통계가 개별 지자체의 지방세지출보고서에 잡히고 있는 만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감면 건의 시 요구되는 수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토록 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이 최소 10년이므로 꾸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감면적용으로 지방의 세수손실이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감면 건의 시 제공된 투자계획 및 기대효과 등을 토대로 정기적인 현황 점검이 필요하다. 현황 점검은 해당 지자체장의 소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방세 지출보고서 작성 시 지역 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황과 유치 이후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검토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외 기타 개선사항으로 현재 전액감면 구조의 지원제도를 투자규모나 경제적 기대효과에 비례하여 감면율이나 감면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국세감면과 같이 지방제도 사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하거나 조례위임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지원 쇼핑'을 막기 위하여 동일 기업에 대하여 여러 지자체가 지원을 제공하는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방편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이력제도를 시행하여 지자체 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김필현·김민경, 2015)

(2) 중국자본 제주 투자를 '지속적인 신수요 창출사업'으로 유도

현재 숙박업 등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산업에 국한된 투자 분야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분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제주지역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는 숙박업 등 전통적인 관광산업에 집중됨에 따라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체당 매출액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 업종을 기존 수요를 흡수하는 사업보다는 테마파크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 중국 간 협력 가능한 수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입장에서는 중국 수출이라는 신 수요를 창출하고, 중국기업 입장에서는 유통 마진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 차원에서 중국기업 CEO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기업 팸투어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의 산업 정책 방향으로 산업연관관계를 강화하고 신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육성을 지향하고 있는 바, 대규모 투자사업 또한 이러한 틀 안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제주지역 산업 정책 방향은 크게 MICE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관광산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IT·BT 관련 첨단산업 육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 내 제조업은 전 후방 연계효과가 높아 핵심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 및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성장과 투자의 한계가 분명한 바, MICE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관광산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IT·BT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IT, BT관련 아일랜드의 마이크로소프트 유치와 싱가포르의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영리병원) 설립 지원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투자 지원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투자유치 마케팅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자본 투자와 고용효과의 연계 강화

현재 중국자본의 관광개발 투자로 관광산업의 성장과 함께 고용창출효과도 발생하고 있으나, 관광산업의 특성상 종사자 근로여건이 열악하여 도민들이 기대하

는 수준의 고용효과를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관광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으며, 정규직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 등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의 양적·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 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투자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야 한다.(고태호, 2015)

(4) 외국인 직접투자 인센티브³⁰⁾ 제공

개도국의 인프라, 노동, 재산권, 정책의 신뢰성, 경제적 안정성 등의 미비점은 세금 등을 활용한 재정적 부담의 경감으로 보상될 수 있다. 각국의 정부는 조세 혜택을 통하여 투자자의 자본수익률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FDI를 자국으로 유치하고자 노력한다. 다양한 세율체계와 조세인센티브에 다국적기업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중대한 관심사이다(Gresik, 2001).

국가와 국가, 지방 단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투자유치 경쟁이라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성봉, 2012) 또한, 외환위기 이후 확대된 인센티브를 통하여 양적인 측면에서 對한국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전반적으로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로는 조세감면, 현금지원, 재정지원(임지지원과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등이 있다. 조세감면은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 및 배당과 관련한 법인세 및 소득세 등 국세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및 투자목적의 자산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및 관세, 부가가치세 및 출자용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해 적용하는 특별소비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다.(김준동 외, 2009)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인센티브는 시장규모, 원자재 확보성, 경쟁적인 노동력 등 1차 결정 요인이 아닌 2차 결정요인으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수출 지향적 투자나 단기간 투자(Short term incentive in footloose

30) 해외직접투자 인센티브란 해외투자 유치국에서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법적인 조치를 말한다.

industries)에는 인센티브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으며, 유사한 해외투자 유인 요인을 가진 국가들 간의 인센티브 공여는 해외투자 결정요인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인센티브 정책을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인세 감면이나 Tax Holiday 같은 세금감면 인센티브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제공하고 있는데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이용한 해외직접투자 유치로 국내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센티브 경쟁이 심한 산업 분야는 자동차 산업분야이다. (UNCTAD, 2004)

제주도처럼 부존자원이 부족한 싱가포르는 현재 직접투자유치의 기본이 되는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경제성장을 위한 인센티브법)을 기본으로 국외로부터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조세 감면제도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경제특구 외국인투자에 최장 10년 조세감면, 대만은 2010년 25%→17%, 싱가포르 2008년(20%→18%), 2010년(18%→17%)임에 비해 한국은 2009년 24.2%(법인세 22%, 지방세 2.2%) 이하 이후 변함이 없다.

(5) 앵커형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도입

앵커형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7년형), 현금지원, 입지지원 및 R&D 자금지원 등을 조합한 최고 수준의 패키지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앵커형 투자는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이고 특정 기술 분야에 있어 강한 흡수력(absorptive capacity)을 지닌 규모가 글로벌기업으로 현지국의 특정 지역 및 산업의 발전과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Agrawal & Cockburn 2003). 앵커형 외국인투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투자금액 기준 등도 적용하지 않는다. Giblin(2008)은 해외 앵커기업의 유치를 통해 클러스터화가 더욱 촉진되고, 지역으로의 지식 이전이 활발해진다고 주장했다.

신성장동력산업의 발전 및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 인재양성 등 국가발전 전략적 관점에서 평가하여 인센티브 수혜여부를 결정하며, 인센티브 패키지 내용은 투자자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한다. 패키지형 인센티브의 내용은 투자자와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증대를 유도한다.

싱가포르의 경우, 앵커형 투자에 대해 최대 15년 법인세 100% 면제하고, ‘선도 기업 인센티브³¹⁾를 주는데, 이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모두 적용되며, 세부업종, 투자금액, 고용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기준은 없으며 투자유치협상을 통해서 동 지위를 부여한다. 앵커형 투자에 대한 패키지형 인센티브의 결정은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소속 투자평가소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말레이시아는 IT분야에서 MSC지위³²⁾, BT분야에서 BioNexus지위(BT분야의 글로벌 투자에 대해서 지위를 부여)를 부여하여 10년간 법인세 100% 면제한다.

미국은 전기자동차 분야의 산업육성을 위해서 핵심분야인 자동차용 배터리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LG화학을 유치하면서 파격적인 패키지형 인센티브³³⁾를 제공했다.

(6) 창업형 외국인투자에 창업자금, 컨설팅지원, 공동연구지원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유인 요소들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차별성 있는 투자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처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 전문가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하다. 일찍부터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실시한 미국 달라스시의 경우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만들어 이를 통한 간접투자를 허용했다.³⁴⁾ 달라스시는 리저널 센터의 운영을 전문 금융회사인 시비타스 캐피털 그룹에 맡김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유인하는데 집중했다. 시비타스는 이에 투자자를 유치할 부동산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선정했으며 투자자 유치, 펀드 관리 등의 역할에도 적극 참여했다.

31) Pioneer Status Incentive: Projects that are very strategic and result in the creation of desirable industries in Singapore,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는 고도기술 및 고부가가치로 투자 또는 기존 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투자로 고급인력의 배양, 신기술 도입 등 싱가포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인 투자

32) Multimedia Super Corridor,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서 조성한 투자지역으로 동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수혜자격을 부여

33) LG화학이 미시간주에 3억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용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자, 미 연방정부는 1억 5,000만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 미시간 주정부는 1억 3,000만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 제공함

34) “부동산 투자이민제 성공 열쇠는 안전”, (아시아경제, 2013.06.03.)

투자기금 조성으로 투자자(기업)를 발굴하고, 한중기업들 간의 합작지원, 정착지원 등을 하는 적극적 실천도 필요하다. 중국투자자에게 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과 보조재원이 있다는 신뢰감을 심어주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우리는 과거 쌍용자동차 사건과 무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 실패로 중국자본으로부터 우호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욱 크다.

(7) 중국자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방안

최근 인천의 복합리조트 개발 착수는 지역사회가 중국자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최대 카지노 업체인 파라다이스 그룹은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국제업무단지에 1조 9,000억 원을 들여 복합 리조트 ‘파라다이스시티’를 2017년에 개장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하여 호텔, 쇼핑몰, 전시장 등이 24만여 평에 조성된다. 인천에서는 파라다이스 그룹 외에 외국계인 유니버설 엔터테인먼트 등도 카지노 사업 허가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⁵⁾ 중국 자본 유치에 위한 선제적 환경조성과 열린 국제도시로써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장정재·김윤경, 2014)

제주도 당국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강력히 희망하면서도, 중국자본에 의한 제주도 부동산 투자 급증 및 토지잠식 현상, 이로 인한 지가 및 임대료 상승과 더불어 골자왈 파괴와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한 지하수 오염 등에 관한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도 당국의 정책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최근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부동산 투기 현상과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어 부동산 거래 질서가 문란해짐에 따라 제주지역에 대한 중국자본가의 토지잠식 현상에 대하여 제주사회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해 부동산시장의 과열, 부동산의 편법활용 등으로 인하여 자금 유출 등의 문제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거주자(F-2)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시스템(A/S)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뉴질랜드에서와 같이 연차적으로 제주도 전체면적 대비 혹은 인구대비 일정비율만

35) 리포&시저스도 카지노를 추진했지만, 최근 ‘포기’기사 나옴

인정하는 총량제를 실시하고, 낙후된 지역에 한정하는 ‘투자제한지역’을 설정해 동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횟수’를 제한하며,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의료관광 등)와 병행하여 시행하되 투자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보전 가치가 높은 중산간 지역과 꽃자왈지역이나 절·상대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이 1~3등급인 경우에는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완, 개선된 정책 등을 막연히 외국투자자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함으로써 개선 가능한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잠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정책적 개선, 홍보와 더불어,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에 진출하는 외국투자기업의 노력 또한 요구된다. 단순한 현금보상만이 아닌 주민의 고용을 돕는 교육 지원, 교육 및 생활 환경 개선 등 주민친화적 기업환경 조성하여 현지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김상명, 2015)

(8)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선방안

① 법 규정 형식의 유연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인 투자금액과 사업대상이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 개정의 유연성과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자치입법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투자금액 요건 규정의 유연성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투자금액은 관광업의 경우 미합중국화폐 2천만 불 이상, 기타 업종의 경우 5백만 불 이상(「제주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인데, 경제자유구역의 조세인센티브처럼 투자금액에 따라 조세인센티브를 5년형과 7년형으로 구분하고, 업종에 따라 투자금액을 달리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미화 5백만불 이하의 투자로도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다수 있다. 예를 들면,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사업, 청소년수련시설, 퀘도사업, 외국교육기관, 자율학교, 국제학교, 의료기관, 교육원,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

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식료품제조업 및 음료제조업 등 투자진흥지구 지정 금액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 투자금액을 '1백만불'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 문화 분야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③ 지역발전 정도에 따른 투자금액 차등 적용

제주도내 지역 발전이 제주시(산북)와 서귀포시(산남), 구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같은 불균형 발전은 매년 악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동일한 주(州, State)내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간 지역발전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자, 「Economic Development Incentives」(경제개발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연방·주·지방정부의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에는 '산업개발수익채권', '공공요금감면', '도로 등 인프라 건설 비용 지원', '조세감면인센티브', '공공용지 및 건물 무상제공', '규제자유화', '현금 보조금지급', '비금전적 행정 및 직업훈련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제주에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발전이 필요한 산남지역이나 읍면지역, 구도심지역에 대한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제주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미이행 시 지정 철회

투자진흥지구 사업 진척률 제고 및 감면된 지방세를 처리하기 위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행정행위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자(투자자)의 신청에 의해 신청자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受益的 行政行爲)이다.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자가 제시한 기간 내에 사업계획인 진행될 것을 전제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 같은 사업계획이 당초 제시한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정된 투자진흥지구가 투자자의 사업계획 불이행 등과 같은 새로운 사정으로 인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행정청(제주도)은 장래의 투자진흥지구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지구지정의 철회를 할 수 있다.

⑤ 투자진흥지구의 사업 진척률 제고 및 미이행 지구의 지방세 처리 방안

향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부관(附款)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이행을 촉진하고 미이행을 사전에 방지하면 된다. 부관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명시한다.

투자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 중 주된 사항(사업목적, 연차별 투자계획, 자원조달계획, 고용계획)을 계획된 기간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제218조에 의거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부 행정행위 처분을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제시된 목표 중 최소 70%(또는 80%) 이상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해제를 연기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삽입 여부도 검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2(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항에 「제주특별법」 제 218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 중 사업계획 불이행이 나타난 사업지구의 지방세 추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9조(자료제출의무), 제10조(투자실행여부 점검), 제 11조(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통보) 등에 따라 지정해제 절차(제14조)에 착수한다.

투자진흥지구의 행정행위는 투자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겠다는 청약(請約)이라는 신청행위와 행정청인 제주도의 승낙(承諾)을 바탕으로 일정한 혜택(인센티브)이 주어지 이루어지는 계약과 같은 행정행위이다.

이 행정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업종의 적합성, 금액의 충족성, 사업계획 이행의 적시성에 있다. 이러한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사업계획이 당초 투자자가 제출하여 도민에게 공람이 이루어진 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계약의 중요요소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행위의 철회 요건을 충족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14조(지정해제 절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12에 의거 감면된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및 관세를 추징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 매각 시 환매(還賣)제도 활용 강화

「제주특별법」 제220조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자(사업시행예정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주도는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공유재산 매각시 환매특약 기간(최대 5년)을 설정하여 매각한다. 그러나 사업시행 예정자는 5년 경과 후 사업 목적에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주도로부터 수의 계약하여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익을 얻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환매는 공유지를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매각함에 있어 매매계약과 동시에 목적물을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고, 일정기간 내에 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도한 공유지를 다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³⁶⁾

환매권은 환매권자(제주도)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매의무자로 하여금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환매대금과 상환하여 환매권자에게 이전할 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할 때, 공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각 후 5년 이내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행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환매권을 말소해 준다. 만약, 사업시행 예정자가 당초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9) 투자환경 개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중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제도로써 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중국 자본에 대한 투자수요별로 맞춤형 투자인센티브제도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높은 생산비용, 고물가 등 비용경쟁력이 낮은 편으로 투자환경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중국자본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정청의 인·허가 등 제도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시장진출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중국자본가 중 투자 실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투

36)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최고 5년을 넘지 못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환매기간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최장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민법」 제591조 제1항)

자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사관계, 고용·임금 경직성 등을 포함하여 노동시장 효율성은 148개국 중 78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한국의 노동시장은 효율성은 떨어지고 노동조합이 강경해 인력관리 등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의 노사관계문화가 투쟁에서 타협으로 변해야 한다.

(10) 중국 지방 국유기업 대상 마케팅 추진

중국의 해외투자가 여전히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지방 국유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겨냥하여, 투자유치 해외마케팅의 일환으로 중국 지방국유기업 경영진 및 고급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제주기업과 중국 지방국유기업 간의 비즈니스 연계 기회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11) 국제화 인재 육성과 투자 전담부서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무원, 학계 및 산업계 중국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의 외국직접투자를 잘 활용해야 한다. 이른바 차이나머니로 불리는 중국자본을 적극 활용하되 무분별한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투자유치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 중국자본이 제주에 유입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무분별한 제주 부동산 판매는 깨끗한 우리 제주의 국부를 유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최근 중국 자본은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지분투자를 통한 배당금 취득 목적의 Hands-off형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잠재력은 있으나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제주기업과 중국자본을 매칭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형성된다면 제주와 중국 자본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투자 전담부서 또는 지원부서 확대·설치도 고려해볼 만하다.

(김형근, 2015)

(12) 재투자유치 개선방안

외국인직접투자를 발굴하고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막고 투자확대 및 재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신규 외국인투자정책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재투자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소홀한 경향이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유치 이후 이들 기업의 투자확대와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으로 재정서비스 제공, 정치적 환경 개선 및 무역장벽 완화 정책이 핵심적 요인들로 나타났다. 그 시사점으로서 이들 영향요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외국인 직접재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정원식·김석용, 2011)

외국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지속적인 국내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외국인 학교 설립, 호텔 등 정주여건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외자유치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정책을 펴는 동시에 외국기업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 국내기업의 역차별 불만 등에 대하여 외국기업도 한국기업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한국기업이라는 인식전환으로 창조경제 달성을 통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불 시대로 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IV. 결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의 및 현황, 이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투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국의 해외투자 및 대한국투자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他지역과는 다른 제주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후,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섬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1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4위의 외국인 직접투자 지역이다. UNESCO 3관왕을 차지한 천혜의 자연환경과 더불어 무비자 입국제도와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의 시행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노력이 제주도에 폭발적인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를 이끌어 냈으며, 이는 중국인의 제주 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의 중국인 직접투자는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중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FDI 지방세 지원제도의 문제로 현행 감면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선 추정요건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정요건에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규정된 산업단지나 개발촉진기구에 대한 감면과는 달리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시정명령에 따른 추정조항이 없으며, 국세 법인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추정사유로서 감면기준의 충족이 있으나 재산세·취득세의 추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감면요건의 측면에서는 취득세, 재산세에 대하여 감면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감면관리의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의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감면의 외국인투자 유치효과 자체도 미흡하다.

두 번째, 제주지역 내 중국자본 투자는 부동산, 임대업,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의 서비스업(80.7%)에 치중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도내 토지 및, 건물 매매가

와 임대료가 상승하고 제주지역의 숙박업 수요를 흡수함으로써 기존 관련 사업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와 함께 고용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기대어 도내 주민들은 중국자본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서 세제혜택제도의 경직성과 사후관리제도 미비 사업계획 등의 불이행 및 기간 연장 등에 따른 벌칙 규정 등의 부재로 세금 추징 또는 지구지정 해제 등의 제재와 관련한 사후관리에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고 제주도내 지역 및 산업 특성의 미고려,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관리 주체의 이원화, 유사경제특구 대비 차별성 부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문제점의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 번째, FDI 지방세 지원제도 관련 감면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 투자 유치 검토단계에서 지자체에 의한 타당성 평가가 엄밀히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기간이 최소 10년이므로 꾸준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액감면 구조의 지원제도를 투자규모나 경제적 기대효과에 비례하여 감면율이나 감면기간을 보다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세감면과 같이 지방세도 사후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으로 이관하거나 조례위임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중복지원 금지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방편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이력제도를 시행하여 지자체 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중국자본 제주 투자를 '지속적인 신수요 창출사업'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는 MICE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관광산업 연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IT·BT 관련 첨단산업 육성에 보다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세 번째, 관광산업의 성장에 따른 고용의 양적·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관광개발 사업 등에 대하여 고용의 질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투자 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해야 한다.

네 번째, 중국자본투자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한 개선책으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원인인 기존 부동산 투기 현상과 부동산 가격이 과열되어 부동산 거래 질서 문란 및 제주지역에 대한 중국자본가의 토지잠식 현상으로 인한 자금 유출 등의 문제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거주자(F-2)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시스템(A/S)의 구축, 연차적 총량제를 실시, 투자제한지역을 설정해 동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횡수’를 제한, 공익사업투자이민제도(의료관광 등)와 병행하여 시행하되 투자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보전 가치가 높은 중산간 지역과 곶자왈 지역이나 절·상대 보전지역, 그리고 관리보전지역인 지하수·생태계·경관 등급이 1~3등급인 경우에는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인 투자금액과 사업대상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 개정의 유연성과 자기결정권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조세인센티브처럼 투자금액에 따라 조세인센티브를 5년형과 7년형으로 구분하고, 업종에 따라 투자금액을 달리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주의 지역 간 불균형발전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전이 필요한 산남지역이나 읍면지역, 구도심지역에 대한 투자에는 인센티브를 주어 제주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자자의 사업계획 이행을 촉진하고 미이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시 투자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 중 주된 사항(사업목적, 연차별 투자계획, 자원조달계획, 고용계획)을 계획된 기간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법」 제218조에 의거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건부 행정행위 처분을 한도와 같은 부관(附款)을 활용해야한다. 이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 중 사업계획 불이행이 나타난 사업지구의 지방세 추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9조(자료제출의무), 제10조(투자실행여부 점검), 제 11조(지정기준 위반여부 등 통보) 등에 따라 지정해제 절차(제14조)에 착수한다.

또한 사업시행 예정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할 때, 공유지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

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매각 후 5년 이내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행이 충족되었을 경우에 환매권을 말소해 주고 만약, 사업시행 예정자가 당초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업시행 예정자가 5년경과 후 사업 목적에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제주도로부터 수의 계약하여 매입한 부지의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익을 얻는 문제를 예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도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며, 제주로의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직접투자에 대해서만 연구하여 타 시·도에 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밝혀둔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철.(2001). 해외투자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박기안·김찬경.(2002). 국제경영론. 서울: 무역경영사
최백렬.(2004). 해외투자론. 서울: 도서출판 대경

2. 학위논문

- 강정웅.(2015).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 개선방안: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석사학위논문
경아함.(2015).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시 진입방식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국제경영 전공 석사논문 p.22
성주석.(2013). 신흥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결정요인 분석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무역이론전공 박사학위 논문
소리리.(2011). 외국기업의 해남도 직접투자 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양범.(2011).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석사학위 논문
오승철.(2015). 중국기업의 효율적 한국 부동산 투자 유치 방안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대학원 주택기획디자인학과 공학석사학위논문
장소영.(2013).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중국 경제, 고용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31개 성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국제통상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유동.(2011). 중국 동서부 지역 해외직접투자 수치비교 연구. 동아대학교 동북아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성환.(2001). 한국서비스기업의 중국진출형태에 관한 결정요인 분석. 경희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장승아.(2011).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정책과 투자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시남.(2013).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입지요건과 지역별 유치전략.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 주건.(2012). 중국 동서부지역 투자환경비교에 관한 연구 : 산동성과 산서성의 비교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학위 논문
- 주미화.(2014).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분석. 한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 지칭.(2014).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동기와 관광지 선호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논문
- 호우정치.(2015).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결정요인 분석.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석사학위 논문

3. 연구보고서

- 강원택.(2006). 지방자치단체와 글로벌 투자유치전략: 아일랜드 해외자본 투자유치 정책. 한국국제정치학회, <기타 단행본> 2006권 1호. 2006 pp.173-198
-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2016).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고용영향평가연구
- 고태호.(2015).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중국자본 투자현황 및 시사점
- 고태호·강정미·임정현.(2011). 「제주지역 관광산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주발전연구원·한국은행제주본부.
- 김대호.(2013). 중국인의 제주관광 수요증가에 따른 지역경제파급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동욱.(2009).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의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 제11권 제1호: 109-126
- 김상명.(2015).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중국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적 제언
- 김은경.(2007). 경기개발연구원. 정책연구 2007-32.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및 투자유치 확대 방안-경기도를 중심으로

김재훈.(2015). 국제통상연구 제20권 제1호. 2015년 3월 pp.93~121. 외국인투자기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제감면제도 개선 방안

김준동 외.(2009).국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대
 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9-04.

김채원·민기(2016). 제주특별자치도 직접투자유치 정책 개선 방안. 제주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7권 제1호

김필현·김민경.(2015). 외국인투자 유치 관련 지방세 지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
 안.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2015권 3호. 2015
 pp.1-71

김현철·김동욱.(2014).제주도연구 제41집. 2014.2 pp.61~92. 제주투자진흥지구 실적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김형근.(2015). 제주발전연구원. 키워드로 본 중국통상과 제주경제

미래전략센터 중국팀. 인천발전연구원.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 및 시사점

민기.(2002).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145-166.

박문서·김미정.(2012). 통상정보연구 제14권 제1호. 중국의 해외투자 정책과 중국
 자본 유치의 전제조건

박용명(2012). “중국대한투자적현장, 특점급미래발전건의”, 한중경제합작연구회
 제10회 KIEP-AMR 연구토론회 자료

박추환.(2007). 싱가포르의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정책현황과 시사점.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산경연구」, 제15집: 81-100.

부산발전연구원(2012), 부산의 차이나 드라이브 전략 p.145

백권호.(2016).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과 이슈

산업통상자원부. 2015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산업통상자원부(2015). 해외직접투자동향

산업연구원.(2001).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율화 방안

서창배. 중국투자유치 확대하려면 유망산업 선택과 집중해야

신호윤.(2007). 중국의 외자유치 및 해외투자 정책과 시사점“, 『금융연구』, 2007.3, pp. 15-17

- 심재희·백형엽.(2011).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1호: 145-175.
- 양동근.(2010). 제주관광활성화 정책. 「한국관광정책」, Summer NO.40: 60-64.
- 오준석.(2010). 제주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 「조세학술논문집」, 제28집 제1호.
- 오창현(2015). 포스코경영연구원(구 포스코 경영연구소), CHINDIA Plus 103권 0호 2015 pp.44-59. 진시황 전설 공유 문화적 친밀성 부동산 과잉 투자에 제주민 당황
- 윤지영.(2014). BDI포커스. 싱가포르의 변신 노력과 경쟁력의 원천
- 이성봉.(2012). KIEP 전문가풀 발표자료. 한국의 외국인투자 정책 현황과 과제
- 이영석·박인철·이덕훈.(2014).한국기업경영학회.[기업경영연구] 제21권 제6호. 외국인직접투자(FDI)기업의 투자의사결정 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충청남도 외국인투자기업을 중심으로
- 이영웅.(2015). 제주특별자치도와 글로벌 투기자본. 문화과학 통권 제 81호(2015년 봄) pp. 156-172 1228-0267
- 이창호·나주몽.(2011). 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종합학술대회: 190-207.
- 임호열 외.(2015). 중국리스크와 한국의 대응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 2015년 9월 11일 Vol. 15 No. 23. ISSN 1976-0515.
- 장선미·오보수.(2011).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2011년 10월(pp.3187~3209).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아일랜드사례와 비교연구
- 장정재·김윤경(2014). 부산발전연구원. 중국의 해외투자 동향과 투자유치 확대 방안.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전국경제인연합회.(2014). 중국의 對韓투자 매력과 시사점 FIP-2014-0002(통권 제 201호, 2014. 07.01). 한국경제연구원
- 전태영·변용환.(2010).세무학연구 제27권 제4호 2010년 12월 pp.115~136. 한국세무학회. 외국인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삼현·함택동.(2010). 싱가포르의 외국인 투자정책과 법제에 대한 연구. 숭실대

- 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4집: 331-360.
- 윤대혁·조강철.(2013).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한국은행 제주본부.
- 정수연.(2013).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유치제도의 발전방향.
- 정원식·김석용.(2011). 「지방정부연구」 제 15권 제4호(2011겨울) : 109~126. 외국인투자기업의 재투자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남도 외국인기업을 중심으로
 업의 한국 내 입지 결정요인 분석
- 정진섭.(2015).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성공·실패 사례의 시사점과 정책제언. 정책연구 2015-18.
- 제주관광통계. 제주관광공사 경쟁력강화처
- 제주관광공사. 2015년 제4호 제주관광통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2015 제주특별자치도 방문관광객 실태조사
- 지만수.(2002).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정책연구].02-14
- 최의현.(2012). 제주발전포럼 제41호 봄호.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성향과 제주도에의 시사점
- 최의현·장나(2011), 중국기업의 대한국 투자 특징과 애로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중국과 중국학 제 13호, p.46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C.H.I.N.A.로 중국을 공략하라: 한중 FTA 계기 유망품목 100선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08).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변화: 해외경제협력단지 확대”, 2008. 2, p.11
- 한병섭·권종욱, “FDI기업의 투자입지 선호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대중투자 제조업인 다회사를 중심으로.” [국제통상연구]. 2005. 제 10권 제1호. p.94
- 황후이·단잉화(2009), “쌍용사건의 경시”, 기업관리 5月pp38~40

4. 외국문헌

Broadman, H. and X. Sun(1997), The distribu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The World Economy. 20(3). 339-361.

C. P. Kindleberger.(1969). American Business Abroad, 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p.13.

Chen.(1997). The Location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Developing countries. Chinese Economy Research Unit Working Paper. No.97/12. University of Adelaide

K.L. Tuomi.(2009). Fundamentals, Tax Incentives and FDI p17,18

Robert.(200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World Institute for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Head. K. and J. Ries(1996). Inter City Competition for Foreign Investment: Static and Dynamic Effects of China's Incentive Areas. Journal of Urban Economics. 40(1). 38-6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2001). Annual World Investment Report, UK: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2004). Survey of 158 IPA

_____.(2015).World Investment Report2015

5. 인터넷

경제자유구역기획단 <http://www.fez.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http://www.visitjeju.or.kr>

중국국가여유국 <http://www.cnta.gov.cn>

중국 상무부 <http://www.mofcom.gov.cn>

InvestKorea <http://www.investkorea.org>

KOTRA <http://www.kotra.or.kr>

UNCTAD <http://www.unctad.org>

【중문 초록】

中国企业直接投资流入的改善方案研究

- 以济州特别行政自治道案列为中心 -

本研究是为分析济州特别行政自治区中国企业直接投资流入的重要原因及问题，并以此导出了改善方案。为了这个目的，首先通过文献定义了外国人直接投资的概念，并分析了动机与效果。外国人直接投资一般有利于本国的经济成长，比如，增加雇佣、知识转移等。所以，韩国从1998年IMF之后对海外直接投资保持开放政策。随之，也增加了外国人对韩国的直接投资。

之后，分析了中国的海外投资与对韩投资的现况。2008年世界金融危机之后，全世界陷入了经济萧条和长期不景气。在这种情况下，中国仍然保持良好的经济增长趋势。中国作为世界第一外汇保有国，以庞大的外汇保有量从世界工厂变貌为世界第二海外投资国家。中国自从1978年促进改革开放以来，为资源开发、技术引进、品牌强化、事业多样化等目的扩大海外投资。

中国的对韩投资也是每年都在增长，但相比之下，对韩投资额在中国的海外投资额中所占比重很小。而且，中国企业的对韩投资并不受太大欢迎。因为存在着吸引投资的成果和事后管理体系的不完善，还有当地居民的反感等问题。

为了解决这个问题，关于FDI支援制度，济州特别行政自治区和居民，中国企业等3方要协力，通过强化事后管理体系、引进新成长动力事业的FDI、奖励投资等方式摸索共赢的战略。特别是济州特别行政自治区要改善外国人投资引进政策，以此来促进中国企业投资，并终究为增加济州岛民的利益而从多方面努力。